

제418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 11월 26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6)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0)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4)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9)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8)
- 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9)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7)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1)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5)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7)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6)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5)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2)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1)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5)
-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2)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6)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6)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2)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4)

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1)
 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1)
 23.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0)
 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2)
 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5)
 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9)
 2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6)
 28.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4)
 2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163)
 3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599)
 3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172)
 3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9)
 3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418)
 3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214)
 35.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142)
 3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1)
 37.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3)
 38.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5)
 3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027)
 4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16)
 4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981)
 4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7)
 4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4)
 44.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03)
 45.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9)
-

상정된 안건

1.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6)	4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0)	4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4)	4
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9)	4
5.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8)	5
6. 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9)	5
7.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7)	5
8.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1)	5
9.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5)	5
1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7)	5
1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6)	5
1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5)	5
1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2)	5
1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1)	5
1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5)	5
16.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2)	5
17.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6)	5
18.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6)	5
19.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2)	5
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4)	5
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1)	5
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1)	5
23.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0)	5
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2)	5
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5)	5
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9)	5
2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6)	5
28.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4)	5
2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5)	5

번호 2200163)	5
3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599)	5
3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172)	5
3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9)	5
3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418)	5
3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214)	6
35.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142)	6
3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1)	6
37.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3)	6
38.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5)	6
3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027)	6
4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16)	6
4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981)	6
4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7)	6
4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4)	6
44.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03)	6
45.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9)	6

(10시09분 개의)

○ 소위원장 문정복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956)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0)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4)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9)

5.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8)
6. 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9)
7.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7)
8.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1)
9.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5)
1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7)
1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6)
1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5)
1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2)
1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1)
1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5)
16.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2)
17.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6)
18.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6)
19.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2)
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4)
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1)
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1)
23.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0)
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2)
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5)
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9)
2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6)
28.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4)
2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163)
3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599)
3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172)
3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9)
3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8)

-
- 3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4)
 - 35.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2)
 - 3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1)
 - 37.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3)
 - 38.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5)
 - 3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7)
 - 4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6)
 - 4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1)
 - 4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7)
 - 4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4)
 - 44.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3)
 - 45.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9)

○**소위원장 문정복** 의사일정 1항부터 45항까지 45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1항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과 대학교, 폐교를 포함하며 복합시설의 용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 확산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1. 학교복합시설 설치 대상 및 용도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부는 23년 3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29개의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이 운영되도록 설치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5년간 매년 40개교씩, 총 200개교에 학교복합시설을 공모 및 선정할 계획이며 총 1조 8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유치원과 대학이 포함되어 있으나 학교복합시설법상 학교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유치원과 대학에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더라도 학교복합시설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경비를 보조받을 수 없는 등 학교

복합시설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유치원과 대학에서도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기대되는바 유치원과 대학도 학교복합시설법상 학교에 포함시켜 교육경비를 보조받는 등 동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쪽입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폐교가 포함되어 있으나 학교복합시설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폐교에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더라도 학교복합시설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경비를 보조받을 수 없는 등 학교복합시설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학교복합시설은 신도시, 구도심, 농산어촌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학교 신설·폐교 등 학교 생애주기를 고려한 학교복합시설 특화 방안을 마련하며 폐교 시설을 리모델링 및 증개축하여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과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으며 폐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은 시행령과 유사한 취지로 학교복합시설을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체육시설로서 지자체장과 감독기관장 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로 정의하였습니다.

현행법상 학교복합시설은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과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며 시행령에서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및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자체장과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사업과 늘봄학교를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프로그램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장소 및 학교복합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초·중·고등학교)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5쪽입니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시설의 설치·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시설 사업을 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7쪽부터는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10쪽입니다.

2. 학교의 ‘감독기관장등’ 용어 신설 및 용어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를 규율하는 법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장으로 규정한 자를 ‘감독기관장등’으로 정의하였으나 대학교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인 교육부장관을 감독기관장으로 정의하지 않고 학교의 설립 방식에 따라 총장, 지자체장, 이사장으로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학의 경우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볼 만한 조직과 예산을 갖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없습니다. 다만 공립대학의 경우 감독기관장등을 지자체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11쪽입니다.

감독기관장등의 역할은 지자체장의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업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공립대학의 경우 감독기관장등이 지자체장이므로 지자체장과 감독기관장등이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기초지자체장이 감독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립대학의 경우 감독기관장을 총장으로 수정하는 경우 기초지자체장과 공립대학 총장이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협의 등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바 공립대학의 '감독기관장등'을 해당 지자체의 장에서 총장으로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3쪽부터는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19쪽입니다.

3.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는바 23년부터 매년 40개교씩 학교복합시설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업 및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종합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 구축은 기존 학교복합시설 포털사이트 개편, 별도 시스템 구축,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활용한 기능개발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학교복합시설은 부처협업 강화가 필요한 사업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정보 제공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민체육센터, 여성가족부 소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및 가족센터 등 학교복합시설과 연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국토부 소관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학교와 연계하여 학교복합시설을 도시재생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에 위탁할 경우 동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제공 요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1쪽부터는 조문대비표 및 수정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4. 손해배상 책임 및 적극행정 시 면책조항 마련입니다.

현행 학교복합시설법 제6조제1항은 '학교복합시설은 제5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또는 지역 주민의 주된 사용 공간, 이용 빈도 및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지자체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법 문언에 명확히 기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는 경우 운영·관리하는 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교육부 또한 이와 같이 동 규정을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개정함으로써 동 개정안으로 법 문언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 학교복합시설법에서 '운영·관리하는 자'의 경우 모두 학교복합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동 개정안으로 입법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법상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민법이,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이 일반 법이므로 개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이 적용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내용 또는 절차에 관하여 민법이나 국가배상법과 달리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동 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학교복합시설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 실익은 적다고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현행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국가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법원감사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안전사고 등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등으로 학교에서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바 개정안은 적극행정 시 면책 관련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주민 개방으로 인한 학생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학교에서는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소극적인 입장이므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조항 신설로 학교의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7쪽부터는 조문대비표입니다.

31쪽입니다.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의 경우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써 학생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32쪽입니다.

학교복합시설 유형별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설치 대상구역, 시설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모든 학교복합시설에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하여 학생과 주민을 시간적·공간적으로 분리할 계획인바 이와 연계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학교복합시설을 위한 별도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구역, 시설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3쪽부터는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35쪽입니다.

6.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학교복합시설법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지정되어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사·분석, 연구·자문,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개발 등 교육과 관련한 연구개발이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교복합시설 기획·컨설팅 등 현장 지원 업무, 연구·자료 개발, 공모지원·자문단·실무협의체 운영, 교육·연수·홍보,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 업무는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조사·분석, 연구·자문과 별도로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교육감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을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바 각 지자체에 설립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 등에 동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개정안은 교육감은 지원센터가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지원,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관리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37쪽에는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40쪽입니다.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입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급되고 있는바 동 개정안으로 학교복합시설 설치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경우 설치와 달리 아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급에 대한 별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에 따라 학교복합시설 운영 과정에 발생하는 관리·운영비 부담이 사업 참여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관리·운영비 일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 개정안은 이와 같은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과 동일한 취지로 볼 수 있으며 법 개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완화되어 학교복합시설의 설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1쪽입니다.

다만 현행 법체계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에 지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대상에서 학교복합시설법상 학교 중 대학을 제외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법 집행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도 이와 같은 취지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2쪽에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에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수영장을 설치할 경우에 주차장의 경우에는 기재부 소관의 산업기반시설보증기금이 있으며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 소관의 국민체육기금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께서 상세하게 조문 정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심사 자료 12쪽입니다.

감독기관의 장에서 공립대학의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총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의견과 동일합니다.

41쪽입니다.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대상에 고등교육기관을 넣음으로써 고등교육기관에 재정지원이 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의견을 드린 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것으로 교육감 소속 유·초·중등학교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제외를 명시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그 문언은 42쪽에 있는 수정의견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위원님들 토론해 주실 건데요. 편의상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1번부터 함께 쭉 복기하면서 논의하면서 이의가 없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자료 2쪽, 학교복합시설 설치 대상 및 용도 확대와 관련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위원님.

○**고민정 위원** 지금 적용 대상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쭉 되어 있는데 재정 관련해서 대학은 제외한다는 거잖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의 부분은 대학까지 들어가 있고 뒤에

재정만 빠지는 거예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대학은 어떻게 재정을 지원하나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학교복합시설을 운영을 하게 되면 자체, 대학 그다음에 유·초·중·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학교복합시설의 사업 주체에 대학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과 관련돼 있는 영역은 주로 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그러면 대학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건데 대학을 이 법에 포함시켜서 얻는 실익이 뭘까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매우 큅니다. 대학의 시설들을 활용한 학교복합시설을 만들게 되면 대학 자체 내에서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있고요. 특히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대학의 시설을 활용을 할 때 학교복합시설에 우리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들이나 늘봄 활동들과 같은 또는 그 지역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대학에서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굉장히 큰 강점들이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런데 설치비는 교육재정교부금을 안 쓰는데 그러면 운영비는 대학에서도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대통령령으로 운영을 할 때 저희가 학생의 활동에 해당하는 부분만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하고 대학으로는 지원하지 않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통령령을 개정을 할 때 저희가 그렇게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잠시만요.

어떻게 되시냐면 강경숙 위원님, 정을호 위원님, 김준혁 위원님 이렇게 손드셨어요.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대학에 관한 적용 범위는 이제 좀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병설유치원은 초·중등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별도로 놓게 되면 범죄의 노출 우려가 있다는 내용들도 여기 뒤에 있었고 학부모 입장도 그렇다고 봐요. 맘카페나 커뮤니티에서는 상당히 반대가 많거든요. 유치원을 어떻게 따로 빼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만.....

○**교육부차관 오석환** 어떤 면에서 따로 빼는 건지.....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대상 범위에서.

○**교육부차관 오석환** 대상 범위에서 유치원을 포함한다는 것은 단설유치원이 대부분 포함될 거고요.

○**강경숙 위원** 너무 조그맣거든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늘어났을 때 하고 앞으로 유보통합이 이루어져서 영유아 학교가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규모도 좀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대상 범위에 넣어 놓고 실제 선정을 해 가지고 학교복합시설에 들어가는지 여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규모도 작고 또 특수성도 있어서.....

○**강경숙 위원** 아무튼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많이 경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런 우려들은, 학교복합시설을 저희가 첫 적용을 하면서 가장 큰 논의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학교시설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좋은 시설들을 공동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도 있고 또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관련돼 있는 협업도 필요한 영역들이라 저희가 기간을 두고서 꽤 오랫동안 점차적으로 늘리면서 안착해 오고 있는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정을호 위원님.

○**정을호 위원** 대학에 대한 복합시설 관련해서도요 지원 근거 조항을 명확하게 마련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행정적 지원이니까 저희로서는, 그 뒤에 있는 재정 지원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대학 지원만 제외한다고 돼 있는 거고요. 나머지 자체는, 마땅히 학교복합시설의 핵심 주체가 자체입니다.

○**정을호 위원** 근거 조항 그것 없어도 가능해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김준혁 위원님.

○**김준혁 위원** 이 법안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법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복합시설이 현장에서 운영되는 사례들을 볼 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초반에 만들었는데 학교장이 만들 때는 적극적으로 하고 수영장을 시민들이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체하고 저희들하고 약간의 논쟁 같은 게 좀 있었는데 이 법안을 제가 지금 들여다보니까 기초자치단체장과 감독기관장 그것이 학교장이든 총장이든 협의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장 혹은 총장이 잘 건립을 해서 너무 잘됐는데 그때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을 때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는 안이 지금 세밀하게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것과 관련돼서 만약에 공동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학교 입장만을 내세운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좀 더 보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위원님, 사실 협업의 아주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협업의 모델이다 보니까 각기 다른 역할을 하시던 분들이 조금씩은 불편을 감내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또 주민들을 위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는데 대부분 학교에서 문을 닫았던 가장 큰 이유는 안전 문제, 운영 문제 이런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관한 것들을 지금 저희가 실제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교장선생님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생기는 어려움들을 해소해 주는 측면이 가장 강합니다.

○**김준혁 위원** 추가로 또, 그것 충분히 이해가 돼서 우리 문정복 위원장님 계시지만 시홍이 가장 모범적으로……

○**소위원장 문정복** 예, 너나들이.

○**김준혁 위원**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체장이 그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형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학교장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형식이

됐고 저희도 지금 시흥을 모델로 해서 수원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면 지자체장이 안전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아까 CCTV 등 여러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뤄 주게 한다면 저는 굉장히 대한민국의 민관 협력 혹은 교육과 지자체, 시민들 간의 협력의 상징적인 내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래서 법률 차원에서 넣을 수 있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열개가 짜여졌다고 저희가 보고요. 그다음에 시행령하고 사실 매뉴얼 운영 단계에서 좋은 운영 사례들을 모아서 확산하면서 저희가 같이 공유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김민진 위원님.

○**김민진 위원** 저도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취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정말 멀티 유즈라고 하는 게 자원의 낭비를 막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안전이고 대학의 경우에는 사실 그런 걱정은 별로 없고요. 또 이미 일부 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마는 중학교, 특히 중·고등학교의 경우에 한때 담장 없는 학교 만들기가 굉장히 유행해서 시민들도 같이 교정을 이용하고 이리면서 담장 없는 학교 했다가 담장이 다시 다 복원되더라고요. 그게 학생 관리의 어려움 또 외부인에 의한 노출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담장이 복원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그런 면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학생의 연령이 낮을수록 더 걱정되는 게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고맙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학교복합시설을, 초기에 학교시설을 개방할 때 운동장부터 개방하는 그런 체계로 점점 더 해 왔었는데 그때 생겼던 문제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학교복합시설은 낮은 단계에서의 학교시설 개방을 넘어서 아예 학교복합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이용자의 동선들을 고려를 해 가지고 학생은 안전하게 지키도록 하고 그다음에 실제 운영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마련해 가는 그런 체계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복합시설의 새로운 체계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조정훈 위원님 그다음에 서지영 위원님.

○**조정훈 위원** 저도 취지에는 동감하는데 제가 사실 확인 몇 가지만 좀 할게요.

학교복합시설법이니까, 그런데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정의를 변경하셨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조정훈 위원** 이 법안이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빠진 것은 주차장이 빠지네요, 이번에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시설 대상에는 들어가지만 학교급에 넣었고……

○**조정훈 위원** 법안 8페이지에 보면 주차장은 삭제되고 그다음에 공공·문화체육시설도 삭제되고 평생교육시설도 삭제하고 그 대안으로 교육·문화·복지·체육시설로 이렇게

재정의하셨는데 그러면 해석을 함에 있어서 주차장은 빼는 게 맞습니까? 앞으로 주차장은 학교복합시설이 아닌 겁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여기 어디에 들어가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담당 과장이 그 위에 있는 문언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교육시설과장 배정의 교육시설과장 배정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이번 개정안은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열거법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 개별법에 따른 시설만 가능했고요.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교육·문화·복지·체육시설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조정훈 위원 등은 없어요.

○교육부교육시설과장 배정의 예?

○조정훈 위원 등은 없다고요.

○교육부교육시설과장 배정의 교육·문화·복지·체육시설에서 이런 부분들이 감독기관의 장과 협의가 된 경우에는 다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열려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에 주차장도 포함되고.

○교육부교육시설과장 배정의 예, 복지시설로 들어갑니다.

○조정훈 위원 주차장이 복지시설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의되는 걸로 이해하고.

수석전문위원님도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예.

○조정훈 위원 두 번째는 간단한 건데 지원을 함에 있어서 대학도 지원하는데 제가 꼼꼼히 못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사립대학은 제외하는 겁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아닙니다. 사립대학도 포함됩니다.

○조정훈 위원 사립대학에도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습니다. 사립대학의 사례가 제 기억에는 대구가톨릭대학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원을 하면, 마지막 항이기는 한데 당연히 교부금은 아닐 거고……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건 무슨 재원으로……

○교육부차관 오석환 지자체의 재원으로 들어갑니다.

○조정훈 위원 지자체 재원으로?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국비,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한 기재부와 문체부 기금은 대상이 아닙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수혜자가 어딘가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짜게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재원은 역시 지역 주민의

직접적인 재원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을 위한 투자를 하고……

○조정훈 위원 그건 알겠고 기재부와 문체부의 기금 지원이 가능하나.

○교육부차관 오석환 가능합니다.

○조정훈 위원 사립대학에 설치된 학교복합시설의 경우에도?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조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서지영 위원님.

○서지영 위원 아까 강경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랑 사실은 저도 동일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대학이 포함되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일인데 유치원은, 아까 설명을 조금 하셨지만 굳이 유치원을 포함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한 실익과 목적이 충분한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아까 설명을 좀 하셨는데 저는 사실 유치원 시설을 그렇게 학교복합시설로 이용을 하게 될 가능성 있는가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유아기 단계에 맞게 시설이 설계가 돼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과연 그 또래 학생이 아닌 이상 성인이나 청소년들이, 그런 타인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때 여러 가지 파손 문제라든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떤 목적과 취지로 그렇게 하셨는지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고맙습니다.

우선 유치원은 유치원 아이들을 중심으로 보면 이게 필요할까라고 보여지는데 거꾸로 보면 유치원 아이들을 돌보고 그다음에 그 활동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시설의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 어르신들이 남는 시간에 같이 놀아 주시든지 하는 관점에서 오히려 거기에 학교복합시설이 매우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치원을 독자적으로 딱 유치원의 독립 공간으로 그것만 한다고 그럴 때 그런데 건데 학교복합시설은 유치원을 포함한 다양한 어르신들의 활동 그다음에 주민 복지활동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애초에 지역 내에서 학교복합시설을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설계를 할 때 그냥 유치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활동함으로써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라고 할 때는 오히려 지자체의 역할들이 커지면서 재정 지원도 더 많아지고 거기에 따른 유치원 활동이 이루어지고 유치원 내에서의 교육과정 운영이나 유치원 내에서 인력을 통한, 앞으로는 유치원이 아니고 영유아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훨씬 더 많은 지원과 협력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열어 놓고 구체적인 모델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유치원을 지금 상태에서 빼면…… 이 학교복합시설을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많은 필요성 중에 하나가 큰 대학이나 폐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에 관한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답변을 좀 간결하게……

○서지영 위원 유치원 관계자들하고도 좀 소통을 해 보신 상황입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사실 이 논의는 많이 있었는데……

○교육부교육시설과장 배정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복합시설은 기본적으로 사용자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이 거부했을 때는 논의의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치원에서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시설 외에 체험이나 활동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 말씀대로 부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런 경우에 여지를 열어 놓는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소위원장 문정복** 1번은 넘어가고요.

다음 10페이지 2번, 학교의 감독기관장등 용어 신설 및 용어 정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쟁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정훈 위원** 몇 조지요?

○ **소위원장 문정복** 안 5조의2 신설하는 겁니다.

○ **조정훈 위원** 5조의2는 없습니다.

○ **소위원장 문정복** 이것도 그렇게 크게 쟁점이 있는 사항은 아닌 듯 싶어서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손해배상 책임 및 적극행정시 면책조항 마련. 안 6조입니다.

제1항에서부터 4항까지인데 이것은 논의할 내용이 있으실 것 같은데 토론하실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님.

○ **조정훈 위원** 아까 김준혁 위원님이신 것도 같고…… 지역에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립학교에서 솔직히 학교장들이 아주 골칫덩어리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 아시지요, 교육부도?

○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학교시설을 개방하면서 생기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 **조정훈 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시설 개선을 해 드리겠다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보수를 해야 된다고 보수 기간을 1년, 1년 반 이렇게 잡아 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안 쓰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손해배상 및 적극행정으로 인한 면책조항이 부족하다는 건데 그분들 얘기는 지금 손해배상도 있지만 종종 중대재해처벌법을 언급하시던데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서 수영하던 주민이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수영시설의 최고 책임자가 지금은 학교장이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교장선생님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라고 확실하게 믿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는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이 법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면책조항을 마련하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부터도 면책이 됩니까?

○ **교육부차관 오석환** 중대재해처벌법은 훨씬 더 큰 범위의 법률이기 때문에……

○ **조정훈 위원** 그래서 이거를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상 면책은 안 됩니까?

○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정훈 위원** 그러면 실익이 없네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러니까 아예 문을 안 열겠다라고 얘기하는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문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던 모든 교장선생님들의 또는 기관장들의 가장 큰 고민은 근본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 대상이라는 것은 분명해진 거니까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고려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과 주장은 사실입니까? 학교에서, 특히 체육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일반 시민들이 이용했을 때 사고가 나면 교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게 맞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혁 위원** 그 부분은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법안이고 학교와 관련된 법안에서는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정훈 위원** 아니요, 학교에도 적용됩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러니까 시민 재해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조정훈 위원** 체육시설 이런 건 모르겠는데 학교는 확실히 적용됩니다. 대학도 적용되고 예외조항은 없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명백한 고의과실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바로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되어서는 완전히 별도의 법률 체계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첫 적용했을 때 가장 큰 우려가 굉장히 중대한 정도 수준의 책임을 지운다는 것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적으로는 수용을 하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한다고 그래 가지고 모든 책임으로부터 다 완전히 면제시켜 놓고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상적인 활동을 향에 있어서의 책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저희가 규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정을호 위원님.

○**정을호 위원** 여기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이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교육부차관 오석환**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고 그럴 때 프로그램 운영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할 때……

○**정을호 위원** 그걸 명시를 하나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아닙니다. 이 적극행정에 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저희가 명시할 텐데 우선은 적극행정의 범위라고 하면 저희가 적극행정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범위가 적극행정이 되는지 일반적으로, 강학적으로는 저희가 논의가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언을 한번 보시면요. ‘운영자 및 관리자 등의 교직원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의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제재 책임’이라고 명시해서 이 정도 상황이면 해석의 대상이 됩니다.

○**정을호 위원** 자의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을까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이 조항과 관련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31쪽, 학생의 안전 확보와 관련한 제8조 3항부터 5항까지 신설하는 것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이것은 CCTV 설치하고 이러는 거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다음은 40쪽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과 관련한……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제가 학교복합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너무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치비뿐만 아니라 지금 운영비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건데 대학, 유치원, 폐교 시설까지 다 지원에 포함하면 초중등 학생들이 본래 받을 혜택이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 자료 보면 대구교육청에서 유·초·중·고 학생들이 사용해야 할 교육예산이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에 투입되어 장기적으로 교육재정 악화 우려되므로 삭제 요청이 이렇게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지금 소위 자료에는 지방교육청들은 어떤 입장인지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도 운영비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랑 학교랑 갈등이 심하거든요, 지금 있는 복합시설에서도. 그런데 운영비까지 교부금으로 한다? 이거 좀 문제가 많아 보이고요.

지금 정부가 23년도 3월에 발표한 활성화 방안 보면 매년 40개교씩 총 200개교에 1조 8000억 원 주겠다 했는데 이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말하는 거거든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런데 설치비뿐만 아니라 운영비까지, 이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부금법 보면 1조에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학교복합시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쓰는 문화센터, 스포츠센터, 수영장 이런 것들 운영비까지 아이들이 써야 될 교부금을 쓴다? 조금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이 복합시설 확대를 교부금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은 예전에 교육재정 악화되기 전에 수립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올해까지 교육재정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여기 계신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사용하는 거는 반대합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위원님, 지금 나온 게 저희가 제안드린 42쪽에 있는 10조의2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의 지원 대상에서 팔호 항목으로 저희 수정의견 드린 대로 ‘제2호제1항다 목의 학교에 설치하거나 설치된 학교복합시설은 제외한다’라고 할 때 이게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시설에 대해서는 원래 원안에는 포함돼 있었는데 안 들어갔습니다.

○**백승아 위원** 아니,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에 만든 것도 지금은 설치비만 교부금으로 할 수가 있는데 운영비까지 교부금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것도 저희가 시행령을 개정할 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행령을 개정할 때 학생의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의 경우에 운영비 지원하는 것에 국한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니까 지역 주민과 학생이 다 같이 쓰는 거잖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시설이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계시는 전문기관의 경우에 운영·관리자의 책임을 볼 때 전문적으로 하면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애초에 설치를 할 때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공간하고 학생이 운영하는 공간을 우선은 분리시켜 놓고, 같이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학생 중심의 공간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관리할 때도 그 양쪽 부분은 달리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운영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지금은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하나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실제는 규모 자체가 크지가 않으니까 어쨌든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로 지원을 하고 다른 쪽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학생 위주로 하는 학교복합시설의 운영비를 어떤 재원을 사용하고 있나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건 당연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학생 시설이라는 게 다양한 시설 아닙니까? 학교를 포함한 학교 부속시설과 다양한 교육 관련 시설들을 다 포함하는 거니까 이 학교복합시설의 핵심적인 요소는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더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 목표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차관님, 그렇지 않잖아요. 지방정부가 부담하잖아요. 운영비를 자자체가 부담하잖아요, 복합시설과 관련해서는.

○**백승아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래서 제가 복합시설에 대해서 협의를 할 때 학생과 관련된…… 지금 중투위할 때요, 공동중투위 하지 않습니까? 공동중투위에 학교복합시설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경우에는 자자체가 부담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확실하게 챙겨 가지고 자자체 부담분이 들어갔을 때 투자를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런 방식으로 자자체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학생과 관련된 부분은 학생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투자를 분담하는 것이지요.

○**백승아 위원** 지금 계속 같은 말인데 설치비는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운영비는 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제 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쓰일 때가 더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도 돈이 없는데.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거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교육시설과장 배정익** 현재 굉장히 다양한 모델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주차장, 수영장, 체육관이 같이 있는 데를 보면요 체육관은 학교가 전체 운영비를 부담을 하고 전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개방을 하는 구조고요. 주차장은 자자체가 전체 운영을 하고 운영비를 부담을 합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가 중간에 끼어 있는데, 현재는 규정에 정해져 있는 바는 아니고 대부분은 자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학교하고 사실 갈등이, 수영장이 계속 적자 시설이다 보니 학교에서 운영비를 내고 사용을 하는 구조가 있는 데도 있고 그냥 무료로 사용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운영비 지원이라 함은 그런 식으로 학교하고 자자체하고 주민하고

학생이 같이 사용하는 시설 중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큰 수영장이나 AI센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경비에 대한 운영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시행령에서 규정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니까 같은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학생을 위한……

○**백승아 위원** 학생들이 쓸 때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학생 운영과 관련된 건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책임과 또 요구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백승아 위원** 그리고 지금 이미 법적 근거 없어도 지자체와 대학 협업해서 학교복합시설 다 짓고 있잖아요. 지자체가 대학에 지금도 교육경비 보조할 수 있는데 굳이 이 법안을 만들어서 교부금을 쓸 곳을 더 늘린다는 게 저는 탐탁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불용 처리하고, 작년에만 10조 4000억 원 불용 처리하고 쓸 데가 너무 많은데 재원은 계속 줄고.

○**교육부차관 오석환**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연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실질적인 운영 과정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건 모르는 거지요. 어떻게든 다 계속 교부금 쓰려고 하시는데.

○**소위원장 문정복** 차관님!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소위원장 문정복** 이게 5년간 1조 8000억을 들여서 설치 플러스 운영비를 제공하겠다는 거잖아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화수분이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는 게 AIDT 그다음에 유보통합, 기타 등등 엄청나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쓰겠다는데 이것 조차도 5년간 1조 8000억 원을 쓰겠다고 하는 것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가져간다고 하면 이거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 거고요. 만약에 정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하시겠다라고 하면 보통교부금이 아닌 특별교부금에서 가져가셔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위원장님, 저희 재정구조 잘 아시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실 특별교부금이나 보통교부금이나 공히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재원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은 아닌 것이고요.

○**소위원장 문정복** 아니지요.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

○**교육부차관 오석환** 어쨌든 일부는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니까 보통교부금은 기본적으로 학교 운영비, 교사들의 급여 그 다음 학교 운영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건데 특별교부금은 장관이나 정부의 시책에 필요한 사안들에 임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국가시책 사업, 지역 현안, 재해 대책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건 국가시책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통교부금에서 가져가는 것보다 특별교부금으로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현재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것은 저희가 확대하도록 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법적 근거가 필요한 거잖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소위원장 문정복**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병기를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항을 내 주는 것 좋고요.

저는 이거 보통교부금으로 다 하시겠다라고 하면 이 조항은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위원장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운영과정에서 특교하고……

○**조정훈 위원** 보통인지 특별인지 나누지 않고 있어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특교하고 보통교부금 문제는……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교부금에서 5년간 1조 8000억을 빼간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 돈 없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연간 9400억 원을 못 대겠다라고 정부가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학교복합시설에 5년간 1조 8000억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무슨 셈법입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위원장님, 어디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아니, 가져가는 것이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결국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는 시설인 것이지요.

○**소위원장 문정복** 다 아이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게 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학교복합시설은 전부 지방자치단체가 댔어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러니까 그 개념이 이제 이러한 새로운 제도화 과정이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본인들이 손들고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돌리면서까지 복합시설을 넣겠다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복합시설의 근간은 일단은 지금까지는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시설 중에서 활용 가능한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복합시설로서의 전환을 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문정복**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이 교부금을 특별교부금으로 고치면 어떻겠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위원장님, 그러면 그 부분은 사실 국가시책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소위원장 문정복** 이거 국가시책 사업인 거예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국가시책 사업 또는 지역현안 사업 이런 걸 진행을 하면서 그 항목에 넣을 수 있는지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마는 그걸 본문에 넣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정훈 위원** 특별로 넣을 수는 없을 거 같은데요?

○**소위원장 문정복** 아니, 그렇지 않으면 보통교부금을 쓰겠다는 얘기인데 5년간 1조 8000억을 어떻게 갖다 쓰겠다는 거예요?

○조정훈 위원 아니, 5년간 1조 8000억은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소위원장 문정복 여기 나왔잖아요.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2027년까지 5년간 매년 40개교씩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사업 계획에 나와 있는 겁니다.

○조정훈 위원 사업 계획인 것이지.

○백승아 위원 계획대로 하는 거지요.

○조정훈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의견을 드리면 저는……

○소위원장 문정복 아니면 이렇게 하시지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안 제10조의2)은 다 삭제를 하고요. 이거는 실제 재원이 들어갈 때 개정하시지요, 필요할 경우에.

오늘 이 법안 넘겨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걸림돌이 되면 이거 못 넘깁니다.

○서지영 위원 위원장님, 의견 좀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문정복 예.

○서지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법의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하시고, 저희가 이렇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논쟁까지 가면 저도 드릴 말씀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차치하고.

지금 이 법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라고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경비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전체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일부라고 규정을 한 그 조문 속에 이미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금을 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자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는 것이고, 이 정도 대통령령의 재량권은 그냥 상임위에서 저희가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일일이 지금……

○소위원장 문정복 시행령에 이 설치와 운영에 대한……

○서지영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제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소위원장 문정복 아니, 분할이 돼 있어요?

○조정훈 위원 그런데 맞는데 법에서……

○서지영 위원 그래서 그 정도의 재량권은 드리는 게, 이러한 의견들이 폭넓게,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폭넓게 다 속기록에도 남아 있기 때문에 법령에 그 정도의 재량을 주는 게 저는 적절하지 않나.

그리고 교부금 논쟁은 여기서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숫자 지금 다 알고 있고 20년부터 28년까지 교부금이 20조나 늘어납니다, 재정 추계가. 그리고 24년 8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지역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예금 그다음에 기금만 합쳐도 18조예요. 그리고 연간 이자수익만 1조 7000억입니다. 그래서 교부금 얘기를 여기서 논쟁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 법령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또 충분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법령 속에 경비의 일부라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으니 이 정도로 하고 시행령으로 그 부분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으로 저는 마무리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제가 담보가 안 돼서 그래요.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지금 학교복합시설 사업 확대하려는 이유가 지역 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지역 주민과 학생을 공동으로 위하여 위한 노력입니다.

○**백승아 위원** 그런데 이렇게 교부금으로 운영비를 쓸 거면 학생들을 위한 게 아니게 되거든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교부금으로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지자체도 할 수 있는 거고……

○**소위원장 문정복** 말이 일부지 그 일부가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까지의 방향성을 보면 그래요.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AIDT 교부금으로 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처음에? 저는 국가시책 사업이니까 당연히 국고 쓸 줄 알았어요.

말이라는 게 그 일부를 가지고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부금으로 할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장에서 학부모랑 학생이랑 교사들이 학교복합시설 해 달라고 교육부에 막 요청하고, 요청이 빗발칩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전체적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보고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니까 저도 전체적인 방향은 공감을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에서 교부금을 끌어다 쓸 만큼, 교부금을 실질적으로 써야 된다는 사람들의 요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자구는 조금 수정을 하든지 이대로는 좀 어렵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정성국 위원님까지만 하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국 위원** 지금 서지영 위원님 지적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요 지금 정부의 수정의견을 보면 분명히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정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 해석의 여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으신데 ‘일부를’이라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교육부도 이 돈이 반드시 학생이 포함돼 있는 교육활동 부분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만약에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면 오늘 이거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게요.

○**정성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는데요.

○**소위원장 문정복** 차관님, 그러면 일부라고 하면 비율을 정하시는 건 어때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워낙 이건 개별 사업 아닙니까? 개별 사업인데 비율을 정하는 것은……

○**조정훈 위원** 이거는 제 생각에……

○**소위원장 문정복** 아니, 그러니까 차관님께서 교육부가 이것을 시행령으로 다시 수정하실 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비율, 설치하거나 운영할 때의 비율을 아예 명시적으로 정하시는 건 어때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고려를 해 가지고 방안을 만든 다음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 **소위원장 문정복** 시행령 저희한테 상의 안 하시잖아요.

○ **교육부차관 오석환** 시행령 상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린 건 상의드리겠습니다.

○ **정성국 위원** 그리하시지요.

○ **교육부차관 오석환** 이 부분은 실제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가 돼야 될 요소들이기 때문에……

○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면 이 지원 비율을 시행령에서 할 때 국회하고 반드시 상의해 주시는 조건으로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지요?

○ **조정훈 위원** 예.

○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러니까 지원 비율이 아니고 대통령령을 개정을 할 때 그 내용들을 상세히 담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상의드리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법안 체계·자구에 대해서 한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42쪽의 제10조의2(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원) 조항에 보면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헌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비가 아니고 지방 재원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장관이 이 돈을 어떻게 쓸 수 있는 재량권이 법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체계·자구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문정복**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그러면?

○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경비 지원 정도로는 가능합니다.

○ **소위원장 문정복** 경비 지원?

○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이게 교육부장관의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니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정도로……

○ **소위원장 문정복**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조정훈 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관할 부서가 교육부인데 교육부장관이 권한이 없다고요?

○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예.

○ **조정훈 위원**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시지요?

○ **소위원장 문정복** 그렇게 돼요.

○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이게 지방 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비율이 넘어가는 거지요. 특정액이 넘어가는 건 공식이 되어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아닙니까?

○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할지라도 이 모수가……

○ **조정훈 위원**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위헌입니까? 해석이 잘못된 것 같은 데요, 수석전문위원님?

○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아닙니다. 모수가……

○ **조정훈 위원** 잘못된 거예요.

○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교부금이기 때문에, 지방 재원인 교부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 **조정훈 위원** 아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이 얼마로 넘어가는 건 법률에 정해 있으니까

그건 맞지요. 하지만 그 안의 사용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 맞지요.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그런데 학교복합시설이라는 특정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해서 지방교육교부금, 지방 재원인 교부금을 교육부장관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면 체계·자구를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지요?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말을 빼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소위원장 문정복** 교육부장관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예, 일반적으로……

○**교육부차관 오석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는 데요 하나는 대통령령을 정하는 주체가 교육부장관인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재원의 부담에 있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의 지적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제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드릴게요, 위원장님.

이거는 교육부하고 수석전문위원하고 수정안을 만들어 오세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문언은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면 이 법안 오늘 못 넘겨요.

○**조정훈 위원** 아니, 이따 오후에 다시 여기에서 이것만 하고 통과시키자고요. 수정안을 좀 읽어봐야지. 저는 통과시키는 거 적극 지지하는데 오늘이 가기 전에 이 법률 조문을 다시 한번 만들어 오라는 것이지요.

○**고민정 위원** 그러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문언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문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면 이것 이 내용만 잠시 보류했다가 전문위원님과 차관께서 다시 의논한 다음에 정리하시도록 하지요, 이 내용만.

○**조정훈 위원** 예.

○**소위원장 문정복**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항부터 4항까지 백승아 의원, 정성국 의원, 김민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강대훈** 소위 자료 2쪽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조사권한을 명확화하려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만 전담조사관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표와 같습니다. 위촉 주체라든지 한 일곱 군데 정도에서 차이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실시하며 학교폭력 피·가해 사실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2건의 개정안은 이러한 조사에 대한 불복을 방지하고 전담조사관의 조사 권한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백승아 의원안은 학교전담경찰관의 협조를 받아 효율적인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실시하고, 과태료 규정을 통해 조사 권한의 실효적인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전담조

사관은 교육청 소속 직원이 아니라서 그 조항의 ‘관계 직원’은 전담조사관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성국 의원안은 전담조사관이 학생들과 밀접하게 활동한다는 점에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가중된 결격사유를 두었습니다.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보다 높고 교육공무원법보다 낮은 수준의 가중을 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촉 주체, 운영 관련 구체적 사항 규정 형식 관련해서는 교육감이 주체가 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면 비교적 통일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나 교육장이 주체가 되고 교육규칙 등 교육감이 정한다면 각 지역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한 위촉·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므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백승아 의원안에 대해서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의견, 일부 조항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정성국 의원안에 대해서도 일부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5쪽을 보시면 정부 수정의견에 대한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9쪽까지 두 개정안에 대한 조문별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김민전 의원님 안도 한꺼번에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강대훈** 내용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소위원장 문정복** 내용이 달라서?

○**전문위원 강대훈** 예, 이 부분 먼저 하고 김민전 의원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개정안에 대해서, 의원님 방과 저희가 긴밀하게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님이 주신 의견하고 반영을 해 가지고 자료는 정부 수정의견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이 개정안 취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법은 제가 서 이초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교권 보호를 위해 만든 여섯 가지 법안 중의 하나인데, 현장 의견 수렴을 한 거고요 지금 교사들이 학폭 업무 담당하면서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본연의 업무하는 과정에서 그런 두려움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작년에 대통령실과 교사들이 만나서 학폭을 경찰로 이관해 달라 이렇게 전폭적으로 요구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학폭을 경찰로 이관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학폭이 이관된 게 아니라 들어온 제도가 바로 이 전담조사관 제도거든요, 퇴직경찰 이런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데 법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다 보니 조사 권한, 조사할 때도 교사가 배석해라, 학생과 그 학부모랑 약속 잡을 때도 교사가 다 약속을 잡고, 조사관의 권한이 너무 적어요. 그런 문제의식에 의해서 이 법을 만든 건데……

관계직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용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사연은 있지만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또 과태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를 한 결과 정부안 수정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해서 출석·진술·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해서 과태료 조항도 1000만 원 이하로 두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걸 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제가 학교전담경찰관에 업무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그 문구를 넣었는데 교육부에서 받을 수 없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취지가 뭐냐 하면 경찰이 개입해서 수사하라는 게 아니고 학폭 조사가 민감하고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으니 자문이나 협조를 위해서 전문기관, 전문가 협조 요청 받고 싶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경찰이 개입되면 교육적이지 않다 이런 우려에서 받지 못하시는 건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혁적으로 잘 알지 않습니까. 스쿨폴리스 처음 들어올 때 굉장히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들어와서 진행을 해서 지금 안착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 더 나아가면 경찰관들의 역할을…… 인지하고 나면 바로 수사로 전환을 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적 전환 방식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속성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교전담경찰관들의 역할을 통해서 저희가 협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공식적인 절차보다는 이게 낫다고 봅니다.

○**백승아 위원** 경찰이 개입해서 수사하라는 게 아니고 협조 요청인데 그것도 어렵나요, 교사가 자문을 구하고 협조 요청인데?

○**교육부차관 오석환** 인지하고 나면 해야 됩니다, 경찰은 속성이.

○**백승아 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이 학폭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고민이나 지원 방안이 있나요? 교육부의 지원 방안이 있을까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사이에서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결국 경찰의 속성은 인지하고 나면 바로 수사로 전환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는 게 경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무 진행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협업을 통해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경찰에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느냐라고 보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제3항에 이 규정들이 있어서 계속 명시적으로 하나하나를 키워 놓는 것보다는 관련 조항들을 활용해 가지고 제도를 안착시키는 게 제가 이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심을 많이 한 입장에서는 교육적인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다른 위원님……

정성국 위원님.

○**정성국 위원** 제가 발의했으니까 한 말씀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백승아 위원이 다 말씀하셨어서 중복되는 건 생략하고요.

차관님, 지금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학교현장의 반응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정말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찰이 관장하는 거하고 우리가 그동안 했던 일들을 이렇게 조사해 가지고 실제로 학교를 지원하는 그 사이에서 절묘

한 제도를 저희가 짰다고 봅니다.

○**정성국 위원** 저도 학교폭력 업무 맡아 가지고 상담한 적 있어요, 학생의 부모까지 오시라 해 가지고. 제가 경찰인 것 같더라고요, 그때.

○**교육부차관 오석환**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정성국 위원** 선생님이 경찰 역할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 제도는 저도 좋다고 생각하고.

또 여기 보면 범죄 경력 조회 같은 경우도……

○**교육부차관 오석환** 꼭 필요합니다.

○**정성국 위원** 이제는 학교 자체에서 하지 않고,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정성국 위원** 이게 불필요한 업무가 돼 버리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교육현장에서 굉장히 반길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습니다.

○**정성국 위원**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앞선 두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는데요.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뭐가 있나면 사실 지난 2월 20일 날 학교폭력, 교사들의 그런 과중한 업무를 경감하고 사안 처리 절차를 공정하게 한다 그래서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 의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행령이 통과된 거잖아요, 일단은.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장에 얼마나 안착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지. 이게 시행령으로 되고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현재 지금 이 상황이?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현장에 안착되고 있는지, 그것이 조금 더 시기를 좀 지난 다음에 상향해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고, 사실상 아까 정성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선생님이 전담조사관 할 때 정말 선생 같지 않은 조사관을 담당을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을 것이기 때문에 취지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그 절차나 시기나 이런 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정부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고요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된 거고.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에서 두 분 의원님들께서 이걸 법률로 상향 조정해 주심으로써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지위를,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상으로 저희가 안착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더 노력하는 것과 병행해서 꼭 필요한 상향 조정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교육부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 건가요, 현장에 안착하기 위한.

○**교육부차관 오석환** 대책은 저희가 참 많이 마련을 했습니다. 우선 이분들 모셔 가지고 교육하는 일들도 굉장히 체계적인 교육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조사하고 상담하고 하는

일들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퇴 선생님들이라든지 또는 퇴직 경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이 되고 있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국감 때도 저희가 상의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꼭 안착시켜 가지고 선생님들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김민전 위원님.

○**김민전 위원** 저도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또 이런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제가 아이를 키웠을 때의 경험을 생각해 봐도 굉장히 전문적이지 못하시기 때문에 특히 좀 젊은 선생님들의 경우에, 경험이 적은 선생님들의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동의하고요. 특히 정성국 의원안에서 위촉 시에 범죄 경력 등을 조회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조항은 굉장히 필요한 조항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 조사관 제도를 만들고 그들의 권한이 뭔지 이런 것을 규정한다라고 하면 책임이나 의무에 대한 조항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거는 정확하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어떤 책임이나 의무를 가져야 하는 것인지 혹은 그들의 활동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규정도 하나 있어야, 권한을 주면 그런 거에 대한 규정도 있어야 앞뒤가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제도화를 해 나가는데 1단계가 이 법률까지 못 만들었을 때 시행령을 통해서 이 제도를 창설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또 실제로 역할들도 부여하고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돼 있는 법체계로 보면 스쿨 로(school law)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학교법 체계 내에서는 하나는 법률 그다음에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한 법령 체계 그리고 실제로 더 구체적으로는 매뉴얼이나 지침을 통한 그러한 지원 체계까지 마련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충분히 질의가 되신 것 같아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넘어가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강대훈** 심사자료 2쪽입니다.

동 개정안은 교육감이 기본계획의 내용 등을 고려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법은 피해학생 지원과 기관 간 협력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교육부장관이 5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 법 전부개정 전에는 교육감이 시행계획을 수립했으나 이후 지역위원회가 매년 지역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은 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각 학교의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이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교육부, 시·도교육청, 그리고 지역위원회 간 유기적인 연계가 강화되어 학교폭력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쪽입니다.

교육부는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강원, 경북 등 교육청에서는 업무 중복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폭력 할 때 예방대책이라고 얘기하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었는데 실제로는 그것의 핵심 영역에서는 교육감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 활동을 구체화해 가지고 명시해 줬다는 의미에서 저희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위원님.

○**고민정 위원** 실태조사는 이미 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교육부차관 오석환** 다른 법령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민정 위원** 그런데 굳이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다 보고하게끔 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지금은 이러한 근거 규정이 없으니까 실태조사 결과를 형식상으로 보면 교육감님들이 발표하고 교육부는 보도자료로 내는 형태로, 보도 참고자료로 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바꾼다…….

○**고민정 위원** 업무상 유기적으로 서로 소통만 잘하면 될 일이지 이걸 법까지 만들어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다는 걸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 그래요, 이미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육부차관 오석환** 지금 말씀 주시는 것 중에 문제의식으로 가지고 계시는 거는 시행계획 부분입니까, 아니면……

○**고민정 위원** 추진실적. 추진실적은 이미 2쪽에 나와 있잖아요. 시행계획, 추진실적, 예방대책 이 세 가지 갈래 같은데 추진실적은 이미 실태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이게 실태조사를 규율하는 게 아니고요. 4쪽 개정안으로 보시면 교육감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내용에 들어갈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 내용들을 거기에다 포함시켜 가지고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시행계획 수립한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한다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별도로 실태조사만 따로 떼어 가지고 역할을 부여하거나 그런 법률은 아닙니다.

○**강경숙 위원** 고민정 위원님 말씀에 좀 덧붙이는 건데요, 저는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RISE 사업도 그렇고 어떤 교육의 지방자치 이거를 권한을 이양하는 거고 살려 주는 건데, 사실상 교육감 이야기를 안 듣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이제까지도.

그런데 그걸 굳이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적시를 해서 매년 기본…… 여기 6조 3·4항을 보시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실시계획도 수립할 의무가 되어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가 매년 수립한 그런 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면서 교육 가치에 맞지 않는 행정적 비효율성 이런 것들이 초래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그 지점을 지적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를 굉장히 중시한 정책들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왜 그렇게 거꾸로 가는지, 고민정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질문합니다.

○**김민전 위원** 이 법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동안에 지역위원회에서 시행계획의 내용을 포함한 예방대책을 수립하던 것을 교육감 쪽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학교폭력, 조사관 임명도 교육장 내지 교육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학교폭력 문제는 지역위원회 전체, 물론 지역사회 전체가 학생들을 돌보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교육감이 좀 더 전문성과 많은 정보가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교육감이 예방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행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김준혁 위원님.

○**김준혁 위원** 김민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문제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하도록 한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지방교육과 관련해서 교육감을 선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을 선출해서 그 교육감을 통해서 지역마다 교육정책이 만들어지고 비전이 수립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오히려 더 활발하게 강화되어 나가야 되는데 이걸 교육부장관한테 제출해서 교육부장관 통제하에 두게 한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수정할 필요가 있다. 나머지 안은 김민전 의원님 안이 정말 좋은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김민전 위원** 사실 저도 우려는 굉장히 이해가 되는 편이고요. 그러나 지역위원회 안에서 이미 지역위원회가 그동안에 보고를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크게 변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면 조정훈 위원님 발언하시고 고민정 위원님하시는 걸로.

○**조정훈 위원** 일단은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또 저는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물론 각 학교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교육부가 교육부처로서, 중앙부처로서 큰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서 뭐가 추가되는지 봤더니 두세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없으면 교육감은 발표는 합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지역 차원에서 일반적인 교육행정을 행하는 방식대로 합니다. 필요할 때는 보도자료 내고 또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정보 공유 차원입니다. 의무적으로 제출해 가지고 저희가 통제하는 권한은 추가적으로는 없습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 그러면 진짜 우리 몇몇 위원님들의 우려를 대응하는 방법으로 그냥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시행계획을 발표하여야 된다’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육부는 그거 그냥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조정훈 위원** ‘제출’이라는 단어는 쓰지 마시고 그냥 ‘발표하여야 된다’.

○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 면에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 **조정훈 위원** 그렇게 놓으면 어때요? 그것도 방법……

○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4항은 삭제하더라도……

○ **소위원장 문정복** 김민전 위원님, 그렇게 수정하시면 될까요?

○ **김민전 위원** 예.

○ **고민정 위원**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그런데 예방대책은 왜 교육감이 안 하고 그건 또 지역위원회가 하게……

○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방대책에 경찰청, 법원……

○ **고민정 위원**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 **교육부차관 오석환**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지자체까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교폭력은 온 마을이 나선다 그래서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에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여기의 핵심적인 주체가 교육감이지 않습니까?

○ **고민정 위원** 그러면 예방대책은 지역위원회가 수립할 수밖에 없는 구석이 있으니 예방대책은 지역위원회가 하되 그 내용을 교육청 쪽에 줘서 교육청이 아까 조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계획과 추진실적들을 발표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 **교육부차관 오석환** 실제로 현장이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가는 게 정상이고요. 왜냐하면 핵심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교육청의 시행계획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지역위원회의 예방계획에 반영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교육감이 이런 실질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들이 어떤 곳에는 있고 어떤 곳에는 없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걸 명시해 가지고, 실제 하고 있는 부분을 명시하는 제도화 영역이 있고요.

교육부에 제출하는 영역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저희는 정보 공유 차원에서 오는 것인니까 그런 뜻이라 한다고 그러면 4항은 삭제하셔도 됩니다.

○ **조정훈 위원** 6조 4항을 ‘교육감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이 정도로 하면 되지요.

○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저희로서는 그 문안으로 정리를……

○ **조정훈 위원** 교육부는 받으면 되는 거고.

○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 **소위원장 문정복** 그렇게 하시지요.

○ **전문위원 강대훈** 전문위원입니다.

그러면 6조 4항만 문구를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전문위원 강대훈** 또 10조 2항에 ‘제출하여야 한다’가 있기는 한데 6조 4항만 ‘발표하여야 한다’……

○ **조정훈 위원** 그것은 교육감이 아니라 지역위원회니까 그렇게 말한 거지요.

○ **전문위원 강대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문구 수정을 하고……

○ **고민정 위원** 지역위원회는 교육부장관한테 제출하는 게 맞나, 지역위원회에서?

○ **조정훈 위원** 지역위원회를 강제할 수 있는……

○ **고민정 위원** 지역위원회니까 그것도 내나 교육청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 **조정훈 위원** 지역위원회는 법정 단체가 아니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요. ‘교육청은

발표해야 된다' 하면 교육감이 해야 되니까.

○**소위원장 문정복** 어쨌든 대안 의결하도록……

○**고민정 위원** 아니, 어쨌든이 아니고 10조 2항인 건데 그러니까 이 법의 취지는 교육부장관님이 모든 걸 다 취합을 해서 파악을 하겠다는 의미인데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냥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면 이 지역위원회 예방대책 부분도 저는 교육청 쪽으로 가는 게 순리상 맞는 것 같은데요?

○**조정훈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역위원회에서 발표를 안 하면 책임을 어떻게 물을까요?

○**고민정 위원** 지역위원회가 안 하면?

○**조정훈 위원** 지역위원회, 만약에 교육감은……

○**고민정 위원** ‘제출하여야 한다’.

○**소위원장 문정복** 두 분 상호 토론하시는 거예요?

○**고민정 위원** 아니, 문구 수정 때문에 그래요. ‘지역위원회는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지역위원회는 매년 교육청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전문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조정훈 위원**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표해야 된다’……

○**소위원장 문정복** 잠깐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강대훈** 이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교육부차관 오석환** 위원님, 제가 정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잠깐만요. 서지영 위원님 의견 듣고요.

○**서지영 위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제가 충분히 이해를 다 할 수 있는 주장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가 중요한 걸 조금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교육적인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육자치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역 교육감님들께, 교육청에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법의 내용은 뭐냐 하면 학교폭력에 대한 겁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딥페이크 사건 같은 것도 전국적으로 학교에서 일어났는데 폭력의 양상이라는 게 지역적 특성이 있다거나 어떤 특별한 지역적인 교육감님의 가치를 실현한다거나 이런 교육의 자치와 관련돼 있다거나 하는 부분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에 관한 여러 가지 실태조사 결과라든지 학교폭력에 대해서 각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예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상 전국의 교육감들이 빠르게 공유하고 교육부에서도 빠르게 대처하고 교육부에서도 여러 가지 관계부처와 협의와 논의하여 교육청들이 신속하게 더 나은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사실상 함께 조정하고 공유하고 빠르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교육감의 자치권을 훼손하게 한다거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은 그럴 수 있으나 이게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법안이 이대로 가결이 되어도 무방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승아 위원** 정리 좀 할게요.

○**김준혁 위원** 제가 잠깐……

○**소위원장 문정복** 잠깐만요. 중요한 얘기인 거지요?

○**김준혁 위원** 예.

○**소위원장 문정복** 백승아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준혁 위원님.

○**백승아 위원** 지금 4쪽의 6조 3항 보시면 교육감이 실태조사 어찌고저찌고 해서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5쪽의 10조 2항에 보시면 지역 위원회도 또 예방대책을, 1항에도 보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게 중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정리하자면 10조 2·3항은 빼고 교육감이 시행계획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역위원회는 이러한 의견들을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걸로, 그러면 교육감에게 지역위원회가 제출하면 교육감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발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제가 체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교육감님이 모든 책임을 다 지시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역 사회와 협력해서 이 문제를 대응하고자 하는 지역위원회 체계가 다시 거꾸로 가서 학교 교육만으로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됩니다.

그리고 절차적으로는 보면 지금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걸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지역위원회가 있고요. 지역위원회에서 교육감의 시행계획에 준하는 사항들까지 포함을 해서 예방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체가 책임을 지고 다양한 관계기관들과의 논의를 거쳐서 예방대책을 수립하니까 굉장히 좋은 예방대책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인 교육부에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10조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체계로 놔두는 게 아까 계속 말씀 주셨듯이 학교폭력에 대한 중앙정부 단위에서의 책무성과 그리고 역할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다만 교육감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우려가 있으시다고 그러면 그건 저희가 정보 공유를 하는 거니까 아까 제안하신 걸로 하시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김준혁 위원님.

○**김준혁 위원** 지금 차관님 말씀 좀 들어보니까 긍정적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아까 서지영 위원님 말씀에도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실질적으로 2020년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지역 교육청으로 이관이 됐고 그 과정에서 자체, 경찰 다 통합해서 지역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됐는데 이 자체가 지금 교육감이 좀 더 구체적으로 시행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한 건데, 저는 이 부분이 교육부에 제출을 통해서 교육부가 통제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건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 차관님 말씀대로 듣다 보면 나름 합리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문구는 조금 더 조정하면 좋은 법안으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예, 알겠습니다.

정성국 위원님까지만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국 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서지영 위원님 말씀 맞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 그다음에 저는 김민전 의원님이 이 안을 냈을 때의 취지는 국가 책임의 방향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교육감과 지역위원회의 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교육부가 좀 더 확고한 통합적 체계를 구축해서 학교폭력이 학교현장에서 사라지게 하는 데 있어서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진보교육감이다, 보수교육감이다 우리 사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기는 해요. 야당 위원님들이나 여당 위원님들의 논쟁도 있을 수 있고 서로 주장이 팽팽하게 대치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그런 걸 다 떠나서 학생만을 바라보고 학부모만을 바라보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교육부장관의 어떤 권한이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그래도 살려 두는 것이 좀 맞지 않겠나.

○소위원장 문정복 알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10조는 그냥 두고 6조 수정.

○소위원장 문정복 예, 그러지요. 제6조의 4항 '제출하여야 한다'를 '발표한다'라고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부터 4항까지 3건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5항부터 9항까지 문정복 의원, 서지영 의원, 김대식 의원, 정성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심사자료 3쪽입니다.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서면으로 대체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사립대학 구조개선심의위원회(사립대학위기대응위원회)의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나 학생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교육위 검토의견에 더불어 행정직원 등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는 비리와 학내 분쟁으로 이미 혼란에 빠진 사립대학일 가능성 이 큰바 필요한 경우 임시이사가 재산 처분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14조(재산 처분의 특례) 취지에 공감함.

제17조(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관련 서지영 의원안은 해산장려금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학교 재산이 사유 재산인지 공적 재산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큰 만큼 이를 법률에서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쪽에는 법안 간 비교가 있습니다.

7쪽입니다.

1. 목적 및 정의 조항입니다.

제정안은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라는 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학교법인, 경영위기대학 등 이 법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8쪽부터는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14쪽입니다.

2.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사립대학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 위원회를 전담기관에 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구성 관련 국회 외에도 사법부, 주무부처인 교육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이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15쪽 하단의 정부 및 관련 단체 의견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교육부장관의 구조개선명령, 폐교나 학교법인 해산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위원회의 성격이 구조개선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임을 고려할 때 위원회를 교육부장관으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이 중대한 것이므로 전담기관(공법인)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아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함이 바람직하며 자진 폐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고, 사립대학의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사학법인연합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사립대학 경영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자로 위원회의 구성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한양사이버대학교는 법률안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사립대학에 원격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5조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립대학위기대응위원회에 원격대학을 대표하는 인사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7쪽에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25쪽입니다.

3.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현재 폐교대학 청산 지원 용자 사업, 폐교 대학 종합관리사업 등 이미 구조개선 및 경영효율화와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바 전담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보입니다.

문정복·김대식·정성국 의원안은 교육부장관의 권한인 구조개선 명령 및 시정명령 외에도 경영위기대학 지정 등 처분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전담기관의 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바 이에 대한 법체계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정복·서지영·김대식·정성국 의원안 등은 동 기관의 임직원 등에게 비밀누설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6쪽부터는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29쪽입니다.

4. 재정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그 사립대학의 재정 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감안한 규정입니다. 다만 재정진단을 매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재정진단 이후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재정진단이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 대략적인 내용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서지영·정성국 의원안은 실태조사의 수행 조건을 재정진단 결과 사립대학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시설·교직원·학생 등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곤란한 상태라고 의심되는 경우와 그 밖에 재정진단 결과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강경숙·서지영·김대식·정성국 의원안은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와 관련, 전담기관의 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관련단체 의견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경영위기대학 지정에 중요한 영향을 갖는 재정진단 실시 권한을 전담기관에 두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를 교육부장관에 두고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정진단을 매년 실시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력 낭비를 가져올 수 있어 2년 주기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진단 외에 별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고 과도한 행정력 낭비를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는, 모든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재정진단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불필요하다, 3년 주기로 예외를 인정하면서 재정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별도의 실태조사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31쪽에 조문대비표와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34쪽입니다.

5.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되는 것은 그 대학 구조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지정 자체가 대학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습니다.

제정안은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불복절차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지영 의원안은 지정에 대한 불복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정복·김대식·정성국 의원안은 경영위기대학 지정 업무를 전담기관의 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위기대학 지정 행위는 그 지정으로써 여러 특례를 인정받게 되는 한편 구조개선 조치 등의 대상이 되는바 지원·육성 대상의 선정을 위한 지정과 규제 대상 선정을 위한 지정의 성질을 복합적으로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규제 대상 선정을 위한 지정은 일종의 행정명령과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지므로 이를 행정청이 아닌 전담기관의 장이 수

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및 관련단체 의견입니다.

35쪽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입니다. 경영위기대학 지정은 처분성이 있는바 교육부장관의 권한으로 실시하는 것이 법체계적 측면에서 타당하다. 지정이 학교법인과 대학에 주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대학법인협의회·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경영위기대학 지정 권한은 관할청(교육부)이 가져야 한다, 경영위기대학 지정 시 혜택·지원도 있지만 의무가 수반되므로 당사자에게 그 지정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6쪽부터는 조문대비표와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40쪽입니다.

6. 구조개선 조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그 구조개선 필요성이 크고 효율적인 구조개선을 위한 여러 특례조항을 적용받으며 해산·청산의 지원,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의 지원을 받게 됨. 이러한 지원하에서 효율적인 구조개선을 위해 교육부가 경영위기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부터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립·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립·제출 요구 주체와 관련하여 이를 문정복·서지영·김대식 의원안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강경숙·정성국 의원안은 교육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획의 수립·제출 요구의 법적 성질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정안의 구조개선명령은 학생 모집 정지, 학교법인 폐지 등 경영위기대학의 학교법인에 대해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바 정당한 사유 여부를 구조개선명령의 판단기준으로 추가하는 부분도 검토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강경숙·서지영 의원안은 구조개선명령 사유에 정당한 사유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관련단체 의견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입니다. 구조개선 조치 권한은 처분성이 있는 법적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교육부장관의 권한으로 실시하는 것이 법체계적 측면에서 타당하다. 제9조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 시정조치 불이행만으로도 강력한 구조개선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어 삭제가 필요하다. 교육기관의 고유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구조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구조개선 조치의 이행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연간 2회 이상 보고는 학교법인과 대학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연 1회 보고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한국대학법인연합회·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는,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요구하는 것은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에 사실상 특정 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 사학 운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권유 등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 시정조치 불이행만으로도 강력한 구조개선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규제입법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제5항의 경우 세법·장려금·해산 시 재산 처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구조개선 조치의 이행

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연 2회 이상 보고는 학교법인과 대학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연 1회 보고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43쪽부터는 조문대비표와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53쪽입니다.

7. 자율(재정)개선 권고 및 경영자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영위기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전담기관의 자문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한 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로 인하여 경영자문이 사실상 사립학교 운영에 대한 개입으로 비춰질 우려도 있으나 해당 의무 규정이 사립대학 재정 위기라는 급박한 위기 속에서 경영위기대학의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한다는 본 제정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정성국 의원안은 경영자문의 제공·지원 주체를 교육부장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자문은 일종의 행정지도로서 비사실적 권력행위로 보이는바 이는 전담기관의 장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및 관련단체 의견입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한국대학법인협의회·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는, 전담기관 자문이 개별 대학의 재정 상황을 개선시키는 것인지 장담하기 어려우므로 ‘충실히 반영하여’라는 말은 법 규정 체계상 맞지 않으며 자문 결과의 반영 여부는 자발적인 것에 맡겨야 하므로 ‘변경하여야 한다’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55쪽 조문대비표와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58쪽입니다.

8. 구조개선을 위한 각종 특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헌법 제23조에 의해 보장된 재산권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여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그러한 제한에 대한 특례를 둠으로써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잔여재산 귀속 특례는 학교 구조개선에서 학교법인에게 중요한 출연재산 귀속 문제에 대해 기준보다 완화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학교법인이 학교 구조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사립학교법 제35조의2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고등학교 이하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정부 및 관련단체 의견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입니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시이사가 재산 처분 및 사업 일부 양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대법원 판례도 임시이사의 권한은 민법상 임시이사와 달리 제한적 권한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므로 입법 과정에서 학교법인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행령 등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안 제17조와 관련해서 학교법인이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외에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 평생교육시설, 교육연수시설, 장학재단 등 다양한 퇴로를 제시하는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대학법인협의회·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제14조제1항 내용 중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라는 말이 모호하고 교육용 기본재산 매도나 담보를 허용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며 학교법인이 임용하지 않은 임시이사가 재산 처분 및 사업의 일부 양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학교법인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적이므로 제2항·제3항은 삭제가 필요합니다.

문경대학교입니다. 재정개선 권고조치를 받은 대학도 적립금을 구조개선 이행계획 수행 목적으로 변경 사용을 허가하여 재정건전 대학으로 경영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60쪽입니다.

8-1.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입니다.

잔여재산귀속 특례는 학교 구조개선에서 학교법인에게 중요한 출연재산 귀속 문제에 대해 기준보다 완화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학교법인이 학교 구조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정복·서지영·김대식 의원안은 잔여재산을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잔여재산을 동 계정으로 귀속시키는 경영위기대학의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해산장려금(정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35조의2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문정복·김대식 의원안은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산장려금(정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제정안은 해산장려금(정리금)을 귀속재산의 일부로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산장려금에 대한 기준의 논의에서 학교 재산이 사유재산인지 공적 재산인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던 것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해산장려금의 지급은 학교법인의 해산 등 개선조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는 인센티브라는 점은 명확해 보입니다. 사립학교법이 학교법인 재산의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매도 등에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현법재판소도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공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립대학의 재정위기와 학생의 교육권 보장 등 공공의 가치와의 비교형량을 통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정안은 해산장려금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해산장려금은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 따라 동일 금액을 가정하였을 경우 실질적으로 더 많은 장려금이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62쪽입니다.

정부 및 관련단체 의견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문정복·김대식 의원안 제17조제4항과 관련하여서 세법 외에 개별법에 해산장려금에 대한 세제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 취지에 배치됩니다. 학교법인의 해산 후 잔여재산이 사학진흥기금 등에 귀속된 경우 학교법인의 설립자 등에게 해산지원금 지급 시 증여세 면제 여부는 조세회피 가능성,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제16조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에게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으로의 퇴로 외에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평생교육시설, 교육연수시설, 장학재단 등 다양한 퇴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합니다. 학교법인의 원활한 해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전환 또는 매각 시 조세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한국전공대학협의회·백석대학교는, 학교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교직원 실직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폐지 대학 교직원을 고용하는 다른 학교법인에게도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을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여 대학의 구조개선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한국대학법인협의회·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한국사학법인연합회, 잔여재산의 귀속 범위를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 외에 장학재단, 교육연수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세분화가 필요합니다. 폐지 대학 교직원을 승계 임용하는 다른 학교법인에도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활한 학교법인의 해산을 위하여 잔여재산 처분계획서가 정한 자에게 귀속재산의 100분의 30 이내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64쪽부터 조문대비표 및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71쪽입니다.

폐교·해산의 절차입니다.

기존의 폐교 및 학교법인의 해산은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사립학교법 제34조에 의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개정안은 원활한 구조개선을 위하여 기존 규정 외에도 폐교 및 해산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정부 및 관련단체 의견입니다.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사학법인연합회입니다. 학교의 경영 위기가 학교법인의 귀책이 아니라 사회적·정책적 환경에서 비롯되는 경우 소유권·경영권 상실의 책임을 재산출연자 등 학교법인이 지는 것은 가혹하므로 특별한 보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72쪽부터는 조문대비표와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78쪽, 10. 학생 및 교직원 보호입니다.

현재 법률로 폐교되는 학교의 학생의 학습권을 명시·보호하고 있지는 않아 동 조항과 같이 국가의 폐교되는 사립대학 소속 학생의 학습권 보호 의무를 규정하여 학습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 법령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하나의 법률에 정리하는 것은 폐교되는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의 법률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및 관련 단체의견입니다.

기획재정부입니다. 현재 교육부·사학진흥재단은 폐교 대학 소속 재학생의 편입학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 중이므로 재정적 지원에 대한 의무조항을 별도 규정하는 것은 실익이 낮습니다.

한국대학법인협의회·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학교법인에 일차적 책임이 없다면 잔여재산 일부는 설립자 측 또는 학교법인에 우선적 보전조치가 필요한바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의 지급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경영위기 원인에 따라 그 처리가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80쪽부터는 조문대비표와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84쪽입니다.

11. 청산인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원에 청산인 선임을 신청하는 등 별도의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청산 등의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이 조문들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담기관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2000년 이후 폐교대학 19개교 중 청산을 완료한 법인이 1개뿐인 현실을 고려할 때 원활하고 신속한 청산 절차 이행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및 관련단체 의견입니다.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사학법인연합회입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달리 이사를 청산인으로 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려워 학교법인 이사가 청산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전담기관 임직원이 청산인 업무에 더 전문성과 능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85쪽부터는 조문대비표와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87쪽입니다.

12. 폐교대학 특별지원지역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대학의 폐교는 그 지역인재의 타 지역 유출 및 지역경제 침체 등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지원을 하는 것은 폐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및 관련단체 의견입니다.

기획재정부입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근로자에 대해 타 법률에서 위기 발생, 재정 악화 시에 개별적으로 지원 중이므로 별도의 지역을 지정해서 지원을 추가할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입니다.

88쪽부터는 조문대비표와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92쪽입니다.

13.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학의 구조개선에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93쪽부터는 조문대비표와 수정의견입니다.

95쪽입니다.

14. 과태료 및 벌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태료 규정은 제정안에 따른 구조개선 조치 등에 대해 대상 대학이나 학교법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에 의한 위반도 있을 수 있는바 과태료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전담기관 임직원이 일으킬 수 있는 비밀누설 등 직무위반행위 및 위법적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의 필요성은 없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 및 관련단체 의견입니다.

96쪽입니다.

법무부, 별칙 조항 관련입니다. 구조개선 명령 중 '4. 그 밖에 경영위기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의 범위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구조개선 명령의 유형을 추가로 명시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며, 제정안 제24조는 수범자를 제9조에 따른 구조개선명령에 불응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안에서 구조개선명령에 관한 규정은 제9조제4항뿐이므로 이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일반적으로 별칙 규정 후 과태료 규정을 배치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주었습니다.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사학법인연합회입니다. 구조개선 이행계획 제출 여부는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부분은 삭제하고, 이행계획을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이행실적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97쪽, 조문대비표와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103쪽입니다.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특례조항을 참고자료로 넣었습니다.

105쪽부터는 수정의견을 전체적으로 보여 주는 종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정말 훌륭한 법안을 마련해 주셔서 저희 교육부가 각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그리고 전문위원실과 협력을 해 가지고 지금 수정의견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을 담아 놓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심의위원회 위치에 대해서는 이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행안부의 의견까지를 반영을……

○소위원장 문정복 잠깐만요. 저희하고 페이지가 다른 것 같은데, 혹시……

○교육부차관 오석환 조문대비표 17쪽 아닙니까?

○소위원장 문정복 조문대비표 17쪽?

○조정훈 위원 제4조?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17쪽 제4조 수정의견에 저희가 의원님 다섯 분의 의견하고 그

다음에 행안부의 의견을 포함한 다양한 것을 담아 가지고 여기 심의위원회 위치에 대해서 전담기관에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저희가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 19쪽입니다.

19쪽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입니다.

여기에서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국회와 교육부의 추천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천권의 행사 주체가 복수이므로 위원 수는 12인으로 고정하는 것으로 저희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22쪽의 3항입니다.

전담기관에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전담기관의 장이 위원의 위촉 권한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 내용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항 1호와 2호에서는 원활한 소관 사무 추진을 위해서 국회 여섯 분과 교육부 여섯 분으로 동등한 추천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내용의 문안을 수정의견으로 드렸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33쪽 재정진단의 대상입니다. 3항입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립대학의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그 밑의 3항에 ‘전담기관의 장은’ 이렇게 해서 재정진단의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진단 대상은 원칙적으로 사립대학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을 포함하여 재정진단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68쪽 제17조(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입니다.

특례 규정 중에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제1항제4호에 구성원 보호를 위해 고용승계 조건으로 타 학교법인에 재산을 귀속하는 경우 해산장려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는 것으로 제안드렸습니다. 이것은 교직원들의 고용 보호와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71쪽입니다.

71쪽의 조세특례 조항을 문정복 의원님하고 김대식 의원님이 주셨는데요. 이 경우는 저희가 다른 법안 심의하실 때도 많이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기재부의 기본 입장이 조세 특례법의 특례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법안에 담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드렸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다시요. 몇 페이지라고요?

○조정훈 위원 그게 몇 페이지라고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70쪽입니다.

70쪽의 문정복 의원님 제4항에 들어가 있는 내용 그리고 김대식 의원님 4항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이 부분은 조세특례법의 특례 규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별 법령에서 조세특례의 특례를 규정하는 것에서는 기재부가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이고 우리가 다른 법률안 심의하실 때도 그 사항을 고려하여 삭제를 해 주셨습니다.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편의상 이 토론만 마치고 오찬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의 목적과 정의부터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고민정 위원** 12시 반에 끝날까 모르겠는데요.

○**소위원장 문정복** 좀 천천히 하지요.

○**고민정 위원** 저는 이러한 법안이 나온 이유가 결국은 학령인구가 위낙 많이 줄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에 나왔다는 생각은 드는데 방향과 순서가 맞나 하는 의문은 여전히 해소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몇 년 후가 되면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다 문을 닫아야 될 위기까지도 와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계속 예산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폐교정리금입니까, 해산정리금을 얼마큼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그 예산이 상당한 규모가 될 것 같은데 그 예산을 학교를 폐교하는 쪽에 다 쏟아붓는 것이 우리 대학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의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인 것인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여기 안에도 여러 가지 제안 사항들에 다 들어가 있긴 하던데 평생교육기관으로 대학을 전환시킨다든지 아니면 오늘 우리가 복합시설 설치할 수 있는 법안도 하나 만들기도 했지만 그 지역 안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도시형캠퍼스 학교를 만들었던 것처럼 조금 더 작은 특성화대학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나 차라리 이런 쪽에 예산을 편성하게 한다면 그 지역 안에서 그 대학이, 그 공간이 더 좋게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논의들은 없이 이것이 먼저 가야만 하는가 하는 의문이 여전히 풀리지를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제가 진선미 위원님 법안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국감 때 문제 지적을 하시던데 저도 몰랐던 사안인데 이사 가운데 비리 이사가 있는 경우, 원래 시행령에서는 비리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후보자 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이 됐다, 왜 시행령을 이런 걸 개정했느냐 그래서 비리 이사들의 문을 열어 준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걸 지금 법으로 옮겨서 법안 발의를 하셨거든요, 진선미 의원님이.

그러니까 이 문제 안에도 비리 이사들은 결국은 이 해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먹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저도 그냥 즉각적으로 들거든요. 그러면 이 진선미 의원님 법안이 먼저 통과가 되어야 최소한 그런 비리 이사들이 먹튀할 수 있는 것은 막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텐데 그런데 이 법안은 아직 순서가 안 됐는지 어쨌는지 논의가 아직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도 궁금하고 이건 그냥 통과가 되는 것인지 그걸 담보해 주신다면 또 말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의견도 궁금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하는 데 있어서 나는 경영위기대학이 아닌데 그렇게 지정이 됐다 그러니 다시 살려 달라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고 그런 수정의견들

도 주셨는데 거꾸로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편법을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해산장려금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갑작스럽게 교원을 몇 년 사이에 확 줄였다든지 시설 투자를 갑자기 안 한다든지 뭔가 다른 의도성이 보이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구구절절 얘기하긴 했지만 초반부에 했던 이야기들은 전반적인 대학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지금 상황에서 같은 예산으로 이것을 먼저 선결하는 것이 급선무인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진선미 위원님 법안에 대해서 이게 먼저 통과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질문,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만약에 정말 이 법안을 해야 되는 것이라면 문제 지적드렸던 것처럼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 대학들을 어떻게 걸러 낼 것인가, 그 장치가 충분하게 있는가 그겁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문정복 위원장님의 답변 주셔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발의를 해 주셔서.

제가 정책 영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제가 답변할까요?

답변하시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해산장려금 이것은 국가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학교가 정말로 살아가기 어려운 학교인데 그대로 폐교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질서 있는 퇴장을 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 주는데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게 그러면 퇴장을 하는 과정에서 해산장려금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청산을 진행하는 절차에서 남은 재원들 중에서 그중의 아주 일부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산장려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귀속의 방향이 조금 달라지는 거지요, 그전에는 다 국고 귀속이었는데.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국고 투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와 관련되어서 그러면 어떤 게 적정할 것인지는 지금 현재의 법률안 체계에서 수정의견까지 나온 방식으로는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위에 위임을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은 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종전 같았으면 그냥 폐교가 된 상태에서, 거의 좀비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 기능을 못 하는 대학이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문을 닫아 놓고 위험성에 놓여 있는 것이 질서 있는 퇴장을 할 때, 퇴장하는 방식이 복지법인이나 그다음에 공익법인이나 이런 걸로도 일부 활용할 수 있고 일부는 또 다른 학교법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로 마련되어서 질서 있는 퇴장을 하면서 동시에 활용성을 높이고 아까 정확하게 말씀 주신 대로 학교복합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효용성을 높임으로써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재원의 효용성을 높이는 다른 제도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머지 모럴해저드와 관련돼 있는 문제들은 제도 곳곳에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당연히 먹튀하지 못하는 모럴해저드 방지법들은, 그런 제도들은 추가적으로 논의하실 때 말씀 주시는 걸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립대학 법인 이사 구성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 그것은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냥 없애는 게 아니고 원래 강행규정으로 돼 있던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독립적 기구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 자체 규정으로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삭제가 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아까 고민정 위원님이 사실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들을 잘 지적해 주셔서 그것에 대한 답을 주셨지만 그걸로 저는 충족이 되지가 않는데요. 이제 제가 명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사실 이 법의 중요한 핵심은 해산장려금입니다. 아까 고민정 위원님이 그걸 지적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말하자면 그것이 사립대학 재산의 일부를 설립 운영자에게 돌려주는 것인데요. 이를테면 교육의 공공성 훼손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은 아주 명확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학교법인은 출연에 따라서 자본금을 조성하는 비영리법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출연이라고 하는 것은 기부나 증여와 같은 뜻으로 무상으로 재산권을 이전하는 행위인 거예요. 따라서 출연은 반대급부가 없고 그 출연에 대한 배당이나 잔여재산 청구권도 없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적인 해석이라고 분명히 보여지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외의 자산전입금도 사립대학 전체 재정 수입에서 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의 재정기여도가 굉장히 낮은 측면도 있고 재산 환원의 의미를 지닌 이런 해산장려금의 지급은 저는 원칙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바인데 사실 그것은 이 다음에 논의하려고 했었던 거고 여기서는 목적과 정의인데 그것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법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전에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은 뭐냐 하면 사학을 청산하기 위한 굉장히 기술적인 법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육부가 어떤 대학이 구조를 개혁을 하고 전체적인 청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구의 급변하는 구조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것도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하지를 않고 어떤 위원회에 이렇게 전담기관에다가 두는 것도 굉장히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국회법 64조에 의하면 소위원회도 공청회를 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집단의, 외부 교수 단체라든지 교육 시민단체 되게 의견이 많거든요, 다양한 안들이.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하기는 했지만 하여튼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의미에서 공청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위원장님께 일단은 드리고요. 핵심적인 안들이 사실 굉장히 논쟁되는 지점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법률을 발의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좀 당황스럽고요.

○**강경숙 위원** 다른 위원들하고……

○**소위원장 문정복** 이렇게 하시지요.

저희가 1번 목적 및 정의부터 시작을 했는데 쭉 발언을 듣다 보니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때는 몇 페이지의 무슨 문제로 질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다음,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92쪽,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문정복·김대식 의원안 제22조, 강경숙·서지영·정성국 의원안 제21조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해산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이고, 하나가 바로 대학이 해산했을 때 그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보완하는 내용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해산하는 것은 거의 상상을 못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해산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강진의 성화대학 같은 경우는 해산이 됐는데 거기는 나름 강진군하고 모범적인,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나마 모범적인 형태로 해산 과정들이 진행이 됐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해산되게 될 경우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들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지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어떤 지역 같은 경우 이게 해산되면 원룸부터 시작해서 다 망가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 보면 재정과 관련해서 문정복·서지영 의원안은 어쨌든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 등을 매수할 때 재정 안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걸 재량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강경숙·김대식 의원안은 의무를 규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교육부 안을 제가 보니까 교육부 안 같은 경우 폐교 재산에 대한 지자체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익사업을 추진할 경우 토지 등 매수·임차시 폐교 재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걸 의무화하는 안으로 정리가 되고 있어요. 맞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저희는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준혁 위원** 그러면 이 안에서 재량과 의무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물론 큰 틀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먼저 고려하되 만약에 지자체가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됐을 때 그건 차선의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아니면 지자체가,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내용인데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이 법안에 추가로 넣어서 교육부가 이 예산 지원과 관련된 방안을 찾아서 교육부가 임시로 빌려주든가 아니면 기재부하고 상의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응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주 장기저리로 대여해서 그 대학이 해산할 수 있게 도움을 주게 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좀 추가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정성국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크게 다른 것은 저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차관님, 69쪽의 제 안을 좀 보시면요, 아시겠지만 이게 해산장려금입니다. 그렇지요? ‘잔여재산이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된 경우 귀속재산의 100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111쪽의 교육부 수정의견을

보면 결국은 해산장려금의 범위나 한도,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자 이게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법률로 적시하는 것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물론 당연히 법률이 좋기는 하지만 사학이 바라봤을 때, 해산하고 싶어도 해산 못 하는 곳이 사실 많아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해산을 해야 되는데 해산을 할 수가 없는 일들이, 해산 처리가 안 되니까 그런 일이 많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해산장려금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필요한데 법률로 이렇게 적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것보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쪽으로 하는지 교육부가 그 정확한 이유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의원님들과 사실 이것에 관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의원님 실하고 논의를 했을 때 법률에 올리는 게 지금까지 아니었고요. 선행 입법례에서도 30%로 정해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에 지원한 초·중등교육의 폐교 촉진에 관한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논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30%의 범위 등등에 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서 그런 방식으로 논의해 가지고 논쟁을 촉발하기보다는 어차피 모든 의견들을 수렴을 하는 거니까 대통령령을 가지고 논의할 때 법률이 아닌 대령에서 좀 더 신축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일단 그렇게 저희가 제안드렸습니다.

○**정성국 위원** 그러면 이게 해산장려금을 주는 자체를 문제 삼는 것보다는 이걸 법률에 100분의 30이라고 딱 명시를 해 버리면 또 논쟁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대통령령으로 정하자 이렇게 해 놨다 이 뜻이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러니까 현재 발의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 중에서 강경숙 의원님만 해산장려금에 대해서 부정적이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나머지 네 분 의원님께서는 해산장려금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유용하다고 주신 결론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정을호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정을호 위원** 제가 이해가 부족한 부분만 질문을 하겠는데요.

우선 위원장님, 사립대학 위기 대응과 구조조정 필요성 공감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러 이해관계자도 많은데 오늘 이걸 통과시키려고……

○**소위원장 문정복** 오늘 통과 안 시킵니다. 오늘은 일독하고, 오늘 통과 못 시킵니다, 이거.

○**정을호 위원** 그것 때문에 깜짝 놀라 가지고……

그래서 20페이지 보시면 위원회 구성에 다 좋은데 법무관이 들어있더라고요. 군법무관이 들어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문성도 부족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들어간 부분 하나하고, 이럴 바에는 아예 입법경력자라는 부분을, 다른 사안에도 입법경력자라는 부분을 넣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입법경력자요? 예.

○**정을호 위원** 법무관은 전문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 부분 넣은 부분에 대한 의아함이 좀 있고요, 하나가.

두 번째, 사학진흥재단 있지 않습니까? 이분 지정이 적절한지, 전담 기관으로.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 논의는 계속 많이 이루어져서 지금 전담기관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런데 지금 해산 후 보면 이 사학진흥재단이 사학과의 관계가 그동안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담당 국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지역인재정책관 윤소영 사학진흥재단은 지금 기재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학진흥재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오히려 관리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담당하는 곳이지 사학 자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사립대학과 관련한 많은 다수의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 사학법인을 하나 해산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회계적인 거 그다음에 법률적인 그런 어떤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전문성을 축적한 직원들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을호 위원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된다?

○교육부지역인재정책관 윤소영 예, 공공기관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저도 그냥 한 가지 질의라기보다 제안을 드리면 정을호 위원님이 오늘이 법안을 통과시킬 마음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참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위낙 광범위하고 100페이지가 넘는 법안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슈를 좁혀 가지 않으면 토론이 끝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인데 공청회도 어차피 이게 제정법이니까 기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갈 수 없는 거라는 생각도 들지만……

○소위원장 문정복 공청회 안 해도 됩니다.

○조정훈 위원 안 해도 되니까요. 생략하기 위해서 저희 여당 위원님들은 다수가 발의했지만 정부하고 조율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위원장 문정복 여당만 그렇게 하나요?

○조정훈 위원 아니요, 정부 법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기 때문에……

○교육부차관 오석환 같이 했습니다. 다섯 분의 의원님하고 같이 긴밀하게 상의했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왜 저는 기억이 안 나지요?

○조정훈 위원 외국에 계셨기 때문에. 야당 위원님들도 그러니까 야당의 하나의 단일안으로 좀 만들어 주시면 이 두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하면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안이 6개라……

○소위원장 문정복 일단 충분히 말씀하신 거지요?

○조정훈 위원 예,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열몇 개 항인데 이 항목별로, 다음에 모일 때는 목적부터 시작해서 부칙까지 항목별로 정리를 해 나가면 어떨까. 큰 틀에서는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 공감이 되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저도 의문점이 있어서…… 해산장려금 부분인데요. 이 법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자발적으로 해산할 대학들에 대한 수요조사가 좀 됐는지 궁금하고.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 이미 폐교했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좋지 않은 곳들에 대학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매각이 안 되고 있는 학교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고민정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어떤 부정 또 부실 운영을 해서 학교가 문제가 된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 재단이. 그럴 경우에도 만약에 본인들이 나서서 먼저 ‘나 자발적으로 해산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그럴 때도 해산장려금을 주고 잔여재산 특례 적용받는 거에 대한 보완 대책은 없는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를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무사항으로 바꿔서 부정부폐 대학의 해산에 대해서는 좀 교육부에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본안 토의로 들어가는데 제가 크게 말씀드릴 거 두 가지 말씀드리고 그거는 담당 국장이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강경숙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출연과 관련돼 있는 일반적인 원칙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이런 방식으로 해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례를 마련해서 법률로 제정 하자는 취지기 때문에 그 취지가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선행 사례가 초·중등교육법을 통해서 했던 과거의 초중등 학교에 대한 해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법률안 마련하는 과정에서 5개의 법률안을 마련해 주셨는데 사실 오랫동안 많은 의원님들의 고심 속에서 만들어진 법안이고요. 맨 마지막까지, 지금 현재는 문정복 의원님 안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김대식 의원님이 추가적으로 고등교육 쪽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같이 보완을 해 가지고 5개 법안들을 같이 보고 저희가 나름 수정의견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건 중요한 말씀이라 윤소영 국장께서 그 보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지역인재정책관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 윤소영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문, 몇 가지 해산장려금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해산장려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주자, 주지 말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사립대학이 질서 있는 퇴장을 위해서는 필요 시, 이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법률적으로 담아 놓고 이거를 대통령령에 위임을 한 다음에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우리가 해산장려금을 지급을 할 때도 사립대학별로 설립자의 재정 기여도라든지 발전 공헌도 그리고 구성원 보호 대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본 이후에야 해산장려금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그러니까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법률에 담아 놓기보다는 우리가 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규정된 요소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자발적인 해산도 여기에 있기는 있지만 본인들이 해산을 하고 싶다라고 해 가지고 그냥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정복 의원님 발의 법안에도 지금 나와 있지만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게 될 때에는 구성원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적 학생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법률 제17조 1항 등에 이런 폐교·해산의

절차를 염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 자체가 지금 순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랫동안 지난 회기 때도 있으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충분히 좀 고민을 해서 이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이 법안과 관련해서 결국은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재 계신 분들 중에서 21대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분은 위원장님 빼고 저밖에 없어서 이 법안을 제가 사실은 걸며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저출생 국면에서 지금 우후죽순 설립되어 있는 이 사립대학교와 관련해서 출구를 터 주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큰 사회문제가 될 거라는 대명제가 있었고요. 이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의 첫 번째는 국고를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원칙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립대학교 법인이 출자한 거에서 일정 정도 해산정리금으로 사학진흥재단에다 귀속시킨 다음에 법적 절차를 다 거치고 교직원, 학생에 대한 절차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그 남아 있는 귀속재산을 감정하고 평가해서, 일정 부분 문제가 있는 학교법인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문제가 없을 시에 그것들을 감정·평가를 하고 실제 학교법인이 출연한 출연금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따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기관인 사학진흥재단이 맡아서 하는 게 그동안 업무를 죽 해왔고 사학진흥재단이 이 업무를 잘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전담기관으로 저희가 요청을 한 거고요.

이 문제가, 해산장려금이 굉장히 이슈가 된 이유 중의 하나가 21대에 정경희 의원님이 100분의 30을 규정하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100분의 30이라는 것은 대학교가 아닌 일반 중학교·고등학교의 사립학교를 해산할 시에 적용되었던 규정인데 이 100분의 30을 규정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사립대학교들 돈 잔치하는 것 아니냐라는 각계의 시선이 따가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안은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시행령으로 위임을 하면서 시행령인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기초적인 교직원과 학생들에 대한 구조 절차를 다 마친 사학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따져서 해산정리금을 주겠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이 법이 상당 부분 오해됐던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립대학교 중에서 실제로 구조적으로 여러 대학을 인수하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수정의견을 낼 건데 만약에 사립대학교에서 교직원의 2분의 1, 50%를 채용하는 학교에 대해서 구조개선에 적극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서지영 의원안에서 했는데 이게 정경희 의원안에 들어가 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면 돈 있는 사립대학이 일반 대학들을 좀 끌어 모을 수 있는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립대학교가 사립대학교를 인수하는 거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이렇게 좀 수정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립대학교 간의 M&A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치를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공청회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냐면 대체로론과 검토의견에 지난번 21대의 공청회에 들어가 있던 내용들이 대부분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이번에 공청회를 한들 이 얘기 이상 더 나올 것이 없다라는 게 저의 판단인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저희에게 얘기 들어오는데 지금 검토의견에 보시면 대교협이나 이런 데서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다 21대하고 똑같은 내용들을 적어 넣었습니다. 사학진홍재단이 전담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에 대한 부당함, 교육부장관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교육부장관이 훨씬 더 조정하기가 쉽거든요. 이런 것들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청회를 한들 이보다 더 진일보한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조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법안 간 비교표를 앞면에 이렇게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당 위원님들께는 다 회람을 시켰어요. 이거 보시면 각 의원 법률 간의 차이점 그리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별도로 있겠지만 다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일독을 하자고 한 것은 오늘 이 법안을 보시고, 이 법안 올 연말까지는 정리해야 되는 법이고 당과 당끼리 합의된 법안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 처리하는 법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월을 넘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아까 고민정 위원님 말씀하신 비리 이사에 대한 문제 있는데 비리 이사가 있으면, 학교에 비리가 있으면 사학진홍재단에서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그 근거 조항을 다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파견된 임시이사가 재산권 처분과 관련해서 다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일독을 했고 저희가 비교표를 다 드렸으니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전문위원실에 의견들을 주시면 정리된 의견을 가지고 다음 번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번 더 토론한 뒤에 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해 주십시오.

○고민정 위원 의견드리겠습니다.

21대 때 어떻게 했기 때문에 22대도 그게 같이 적용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소위원장 문정복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의가 어렵다고요.

그리고 제정법을 공청회를 하는 이유는 그것과 관련돼 있는 여러 사람의 의견들도 국민들이 알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여야 위원들 간에 공론화 절차를 통해서 서로 토론하게 하는 작용도 있고.

여당과 야당이 이미 협의된 법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당 간사님께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저기하기는 한데 그래도 다 열려 계시니……

○소위원장 문정복 원내에서 협의된 겁니다.

○고민정 위원 원내에서 협의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 인데 당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을 거쳐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그냥 수긍하겠다, 아니면 내가 접고 가겠다 이런 의견을 제가 들은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 당론 절차를 거쳤다든지.

그래서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이거는 도저히 다른 의견이 있어도 그걸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주신다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만약에 당론으로

가게 되면 그거는 저희 당 문제니까 차치하고서라도, 저 혼자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저만 반대할 수도 있고.

저는 사실은 사립학교를 액시트(exit)하는 법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정복 위원님에게도 늘상 이런 법안 꼭 필요하다고 얘기드렸고 김대식 위원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법안 심의를 하려고 이 내용들을 쭉 들춰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당과 야당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법안 심의 구체적으로 할 것 없이 다 따라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한 개정안이 아니고 제정법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한두 시간 안에 다 토론이 끝날 리도 만무하려니와 위낙 내용이 방대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법안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될 사회적 과급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고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정법은 공청회라는 걸 하는 것인데, 그것도 그렇게 정했으니 그냥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어쨌든 반대의견을 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이 법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다음 소위에 다시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건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문정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강대훈** 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 생활지도 권한 보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교육활동 보호와 생활지도 권한이 교원에 대하여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 신설은 이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는 현행 법률과의 체계,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2·3페이지 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생활지도 권한 보장 관련 조항들입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교육부는 일부 수정 의견이 있고 서울시교육청은 개정안이 타법과 중복되는 등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5페이지 조문대비표입니다.

6페이지 이하 참고자료입니다.

8페이지는 부칙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규정하고 있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더 두터운 보호를 위해서 교육기본법에 규정하여야 된다는 것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조문상으로 ‘법령과 학교의 규칙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의 규칙은 제외하고 ‘권한은 법령에 따라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다음 위원님들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 이 법률이 약간 선언적 의미……

저 발언 좀 해도 될까요?

○**소위원장 문정복** 예,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선언적 의미가 아닌가 제가 짐작을 하는데 서울시교육청 검토의견도 다른 법률과의 중복 여부 등을 지적하셨는데 만약에 이 법에 추가적으로 이걸 해서 기존에 보호 안 되던 권한이 보호된다면 검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혹시 교육부차관님, 발언하실 수 있을까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간사님께서 정확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은 선언적 규정이고요. 선언적 규정 중에서도 생활지도에 관한 선언적 규정인데 그래서 하위법령에는 유아교육법, 교원지위향상법, 초·중등교육법이 있습니다. 강경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으로 다만 선언적 규정이라는 의미에서, 교육기본법이 모든 것을 통괄한다는 의미에서 규정하는 것은 중복의 의미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님, 이 정도로 해서 의결해도 괜찮겠지요?

다른 위원님들 없으신 것 같아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은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1항과 12항, 조정훈 의원과 강득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강대훈** 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및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지만 개정 대상 조문, 지원주체, 시책 수행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여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여 자율적으로 급식, 교복,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이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조례 제정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별 지원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 대상 조문 관련해서 현행 강득구 의원안과 조정훈 의원안이 개정 대상 조문에 있어서 신설하는 조문 형식이 3조와 10조의2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3조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책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10조의2를 신설하여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주체 관련해서는 학교 운영과 관련한 재정 지원은 지방교육재정을 통해 추진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교육감 및 자치단체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쪽입니다.

교육부는 의견 없고 전남교육청은 신중검토, 전남도청 일부 수정, 대안교육기관연합회는 의견 없음, 대안교육연대는 일부 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조정훈 의원안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법 12조에 따르면 유치원, 초·중등학교, 평생교육시설 그리고 한국학교는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그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대신 청소년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데 현재 가입률이 63%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법 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다만 대안교육연대는 공체 이외의 민영 보험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검토 의견 있습니다.

7쪽입니다.

조정훈 의원안은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실태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 및 행정조사 권한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내 학생들의 명시적인 지도·감독 권리가 없어 대안교육기관 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여부, 안전 관리 실태, 재정 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정안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안전을 보장하고 지원되는 예산이 투명하고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관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도한 지도·감독으로 인해 대안교육기관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교육부는 해당 조항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들은 각 조항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4쪽입니다.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지원에 관한 필요한 경비 지원은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는 재정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차이가 있는데 다만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되 그 이후에 안전과 관련돼 있는 분야에서의 책무를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책무에 따라서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에 지도·감독권을 부여함으로써 재정 지원과 지도·감독에 따른 책무 그리고 안전의 보호가 동시에 균형을 맞추는 그러한 입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위원님들 토론 순서입니다.

고민정 위원님.

○**고민정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책무 등을 어딘가에다가 넣으셨다는 건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여기 지금 지도·감독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지도·감독?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지도·감독권에 따라서, 조항으로 보시면 4쪽에 있는 내용이 운영 지원에 대해서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다음에 5쪽에 보시면 책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돼 있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요. 그 책무에 따라서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도록 하면 거기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저희 판단 같으면 16개 교육청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임의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재원으로 봤을 때 약 3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저도 이 법률안의 취지에 대해서 동감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 대안교육기관이 굉장히 많은데 실상 보면 지원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 못했더라고요.

이 법이 중요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면에서 되게 동의가 되는데, 제 질문은 예산 지원 근거가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소요되는 예산의 지원 추계가 가능합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보니까 한 3억 정도……

○**강경숙 위원** 그리고 인가와 비인가 학교 같은 데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차근차근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장

님하고 간사님께서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기에 학교의 지위를 부여하기에는 적절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여서 그건 안 된다라고 해서 그거는 유보를 시켜 주셨고요.

그러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재정 지원은 제한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경숙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꼭 필요한 부분에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지만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놓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법률적으로 제도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우선은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길항관계가 있습니다.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관계가 있어서 재정 지원이 많이 들어갈 수록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교육기관에서 사실 적정한 수준의 지원과 지도·감독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규정하는 게 적정하다고 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에서 대안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 현황이 또 어떤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지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이 중앙정부 차원의, 교육부에서는 없습니다. 지방에서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등록이 이루어지고 등록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운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전체 지원 규모가 229억인 상황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특교에서 예산 지원 가능한 것은 아니냐는 거지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가 궁금했었는데 대안교육에 대해 특교 예산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다는 거지요, 그 항목에서.

○**교육부차관 오석환** 이제는 그렇게 재정 지원으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때 대안교육기관은 지도·감독권자가 교육감입니다. 여기에는 국립기관은 없고요. 그다음에 제도의 관할권자가 교육감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국가시책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은 없다고 봅니다. 조금 더 영역을 넓혀 가는 것은 추후에 저희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다음은 정을호 위원님.

○**정을호 위원**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 이번 법률안과 다음에 아마 상정될 예정인 학교안전사고 예방법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팬찮으면 같이 연계해서 논의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떨까요?

○**소위원장 문정복** 몇 번……

○**정을호 위원** 13번, 14번, 15번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학교안전사고 보상 공제에 관련해서 같이……

○**소위원장 문정복** 지금 대안교육기관 관련해서 하는 거예요, 대안교육기관.

○**고민정 위원** 그렇긴 한데 그다음 것도 대안교육기관의 보험과 관련된 거라……

○**조정훈 위원** 그런데 13번도 대안교육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그럴까요?

○**정을호 위원** 예.

○**소위원장 문정복** 시작했으니까 이것 두 개 처리하고 그렇게 할게요.

미안합니다.

김민전 위원님.

○**김민전 위원** 저는 큰 건 아니고 간단한 건데요. 전라남도교육청에서 대안교육기관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무관하므로 경비 지원 근거 조항은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논리인가요? 궁금해서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 취지가 그렇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은 학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육청의 일반적인 논리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듯이 임의규정으로, 그러니까 재량규정으로 규정해 놓으면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지원의 범위하고 지원 유무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보험이랑 공제사업 가입하는 거요, 그런데 이게 학교안전공제 가입이 지금 청소년활동안전공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가 조금 의문이 되고, 공제회 가입 허가하고 손해보험 가입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고 가입하라고 해야지 그냥 무조건 강제로 다 가입해라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단계별로 보시면 완전히 밖에 있는 지역에서 조금 더 넓혀 가지고 등록제로 들어와 있고 거기에서 지금 재정 지원까지 가는 상황인데 재정 지원 중에서도 특별히 안전과 관련돼 있는 것은 책무를 부여하면서 하라 그러고 거기에 따라 재정 지원하는 그런 구조로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청소년안전공제회에 들어가 있는데 학교안전공제회에 들어갈 때는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의 조건하고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요구하는 조건으로 대안교육기관이 여건을 완비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청소년공제회에 60% 이상이 가입되어 있고 이것을 재정 지원하는 쪽으로 하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되게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요. 지원을 하면서 안전 관련돼 있는 다른 정책들을 교육청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답변이 되셨습니까?

○**백승아 위원** 예.

○**조정훈 위원** 백승아 위원님께 조금 추가 설명드리면 지금 이 법안은, 제가 발의한 것은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고 학교안전공제와 청소년활동안전공제를 구분하지 않았고요. 그 차이는 둘 다 잘 아실 거라고 보고,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정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음 법안에서 어떤 공제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게 먼저 논의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순서가.

○**조정훈 위원**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공제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차원에서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법안에서는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이 어떤 문제에 들어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충돌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이고 다음이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게 맞나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지금……

○**조정훈 위원** 저희가 법안 검토 순위를 정할 때 아마 위원장님 방하고 그렇게 상의한 것 같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지금까지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음에 여기에서 어느 문제에 들어가거나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행정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행 과정에서 교육청이 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진행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니까 13·15번은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거고, 범위를 대안학교도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여기는 안내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13·15번은.

○**백승아 위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있던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것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 지난번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쪽으로 학교의 지위를 가지고 난 다음에 강제 가입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지원하고 하는 로직으로 지난번에 논의를 하셨는데 대안교육기관은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어렵고……

○**백승아 위원** 그러니까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 가입하는 게 아니라 책무성을 부여하는 것, 책무를 부여하도록 해 놓은 것이고요. 지금 조정훈 간사님의 법안은 안전과 관련돼 있는 책무를 부여하는 것이고 책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금 여기 조항에 나와 있는 책무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한 개의 문항에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하고 동시에 그거하고 관련돼 있는 안전조치의 내용으로서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제공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안교육 학생들이 안전하기 위해서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무조건 가입하라는 내용 아니에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지금 문항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제 가입은 아닙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니까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게 맞냐는 말씀입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강제 가입 아닙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면 그냥 가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 조치도 있을 수 있고요. 다른 조치도 있을 수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이번에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긍정적인 가입의 길을 터놓기 위해서 재정 지원을 시·도교육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백승아 위원님 되셨습니까?

○ 백승아 위원 예.

○ 소위원장 문정복 서지영 위원님.

○ 서지영 위원 몇 년 전에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 부분에 대한 논의가 교육위에서 있어 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지금 여기 계시는 교육위원회들도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우리가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지 저는 사실 조금 의문입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대안학교는 수업료를 자율로 정하고 대안교육기관은 운영위가 심의한다고 돼 있는데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의 평균적인 수업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차관님?

○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거는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지영 위원 과장님,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부학생맞춤통합지원과장 하진혜 학생맞춤통합지원과장입니다.

다만 수업료는 위낙에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평균으로 말씀드리는 게 큰……

○ 서지영 위원 상한선도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최대.

○ 교육부학생맞춤통합지원과장 하진혜 200만 원 이하로 지원을 하는 곳들도 있고 1000만 원이 넘는, 연간 수업료를 말씀드리면 1000만 원이 넘는 곳들도 있습니다.

○ 서지영 위원 지금 그러면 대안교육기관이라고 하면 초중고를 망라할 텐데 지금 공교육에서의 그것도 일반적인, 그러니까 지금은 다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일인당 수업료는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비교하면?

○ 교육부차관 오석환 고등학교의 경우에 160만 원 수준이지요.

○ 서지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대안학교나 대안교육기관이 제가 그냥 흘려듣는 경우만 하더라도 상당한, 중산층 이하 학생들은 사실은 갈 수도 없는 곳 아닙니까?

○ 교육부차관 오석환 정확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대안학교가 있고요. 각종학교로서의 대안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대안교육기관은 학교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완전히 제도권 밖에 있었다가 2021년에 대안교육기관 법률을 마련을 해 가지고 등록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재정과 관련돼 있거나 지도·감독과 관련되는 사항에서는 등록하더라도 지도·감독권한은 사실상 발휘하지 않고 있습니다.

○ 서지영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검토의견을 쭉 보면 이 개정안이 대안교육기관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또 지역별 지원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목적이?

○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큰 방향은 그렇습니다.

○ 서지영 위원 지금 대학교육보다도 더, 대학등록금보다도 더 비싼 대안학교를 다니는 개인들의 자율적 선택에 대해서 왜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를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 이상의 더 큰 목적이 있습니까? 지금 교육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 교육부차관 오석환 간사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하는 범위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 조정훈 위원 제가 존경하는 서지영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의 문제의식에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 법의 내용은, 저희가 발의하고 법안에 적힌 내용은 특정 대안교육기관의 학비가 500, 600, 1000만 원이 된다고 그 학비를 다 지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고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지원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가 교육부하고 논의해 본 결과 제가 짐작하건대 올해, 내년에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자세한 기준과 방식을 정할 텐데 그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 학생 일인당 지원받는 교육비가 평균 이백몇십만 원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학비를 지원받는 학생, 그러니까 헌법에 보장된 교육권은 이 학생이 공립을 다니든 사립을 다니든 홈스쿨링을 하든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을 다니든 똑같이 보장되어야 될 교육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은 공립, 사립에 다니는 학생들은 교육비 지원이 몇백만 원씩 여러 가지로 있지만 지금까지 대안교육기관에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거지 수업료가 얼마나 수업료의 100%를, 그러니까 무상교육을 만든다, 대안교육기관을 무상 교육기관으로 만든다 이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럴 의사도 없고.

○서지영 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력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제 얘기 도중에 말씀하셨으니까, 그 취지도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저는 이 대안교육기관에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 우리 교육재정이 투입되기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인포메이션이 공급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교육 주체들의 상당한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정부에서 또 지자체에서 공적 교육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는데 여러 이유에서 이것을 거부하고 자신에게 맞는 것들을 개인적으로 선택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안교육기관도 그러한 각각의 국가가 정하는 교육의 방향이라든지 우리 사회가 정하는 그런 방향에 더해서, 물론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그런 교육기관을 만들어 운영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선택되는 학교인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런 기관입니다.

○서지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대를 얻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도 않고 이해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고 그다음에 여러 학부모들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보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 아까 조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기회, 일인당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재정 수요, 재정 공급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형평성과 그런 것에 맞춰서 가야 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과연 우리가 지금 이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가 동의한다고 해서 이것을 법안을 만들어서 토대를 만들어 놓는 것은 저는 조금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한 상태에서 굉장히 빠르게 제도화를 먼저 만들어 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안전 문제에 대해서 안전공제회에 가입하고 여러 가지 이런 제도적 보완 조치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저도 아이를 키웠고 큰 아이가 대학을 갔고 지금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저도 대안학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안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떤 취지를 갖고 어떤 목적을 가진 학교들이 있는지,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어떤 설립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정부의 재정 지원을 먼저……

○**소위원장 문정복** 정리 부탁드립니다.

○**서지영 위원** 우선적으로 확립하는 제도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속도가 훨씬 더 빠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성국 위원** 간단하게……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면 정성국 위원님, 고민정 위원님까지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국 위원** 저도 사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대안학교 까지는 저도 아는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이해가 저 스스로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심도 없었고요, 죄송하지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관심이 없었지요.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을 호칭부터 정확하게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훈 위원님 많이 알고 계시니까 설명 좀 있으면……

제가 아는 것은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대안교육기관인 것 같은데 거기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들었을 때 일반적인 건 아니지만 나름 학비도 좀 비싸고 어찌 보면 굉장히 시스템도 잘돼 있고 이런 거지만 사실은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런 곳을 다니는 학생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는 학생들이 어떻느냐면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인식은 경제적으로도 좀 팬찮고 자기 소신에 따라서 선택한 케이스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지영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 설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설명드리면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가 법안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시간을 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고민정 위원님.

○**고민정 위원**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의 차이는 조금 헷갈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안학교들에 대한 혹은 대안교육기관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나 특히 학부모 층에서 알고 있는 정도는 상당히 많이 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마 위원님들 간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요. 그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나 대안학교가 왜 이렇게 많아졌나 또 대안교육기관이 왜 이렇게 많아졌나 하는 것만 보더라도 제도교육이 아닌 다른 것으로라도 교육을 받고자 하는 수요층들이 그만큼 있다는 것을 사실은 이게 방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학비가 어떤 곳은 비싸기도 하고 또 아닌 곳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이라고 해서 다 비싸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학비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왜 학부모나 학생들이 제도교육을 선택하지 않고 이런 대안교육기관이나 대안학교를 선택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선택한 학생들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학생이기 때문에 교육받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받을 권리 또한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조금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도 될 상황에 왔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백승아 위원** 한 가지 사실 확인만.

○**소위원장 문정복**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보험 의무 가입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심사 자료에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지금 현재의 법문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기 때문에 꼭 안전조치를 취하는 방식이 보험이나 공제사업만으로 반드시 해야 되고 나머지는 예외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일차적인 안전조치 중의 하나가 학생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가깝긴 하지만 이 문항으로 봐서는 강제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백승아 위원** 아니, 이 서류 작성자가 볼 때도, 국회사무처에서도 의무 가입이라고 판단이 된 거잖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것은 전문위원님이 계시니까 바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의무 가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전문위원 강대훈** 저희가 제안 이유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법안의 제안 이유를 조정훈 위원님……

○**백승아 위원** 주요 내용에 의무 가입하라고 쓰여 있어요, 의무 가입하도록 한다고.

○**전문위원 강대훈** 법안 내용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돼 있어 가지고 이게 하나의 예시 조항이긴 하지만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의무 가입 용어를 쓰게 된 것……

○**백승아 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교육부에서는 아니라고 하시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안전조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에 있는 안전조치인데 그것을 선택적으로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게 공제조합 가입이 가장 일차적인 안전조치겠습니다. 그것만을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해 볼게요.

○**소위원장 문정복**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저는 사실 고민정 위원님 아이디어에 공감이 되는 편이긴 하면서 확인차 말씀드리는 건데 인가형이 259개고 미인가형이 300개더라고요, 대안교육기관에서. 그러면 인가, 미인가를 다 함께 지원하는 건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이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안학교와 관련돼 있는 유형을 대안학교는 지금 일반 학교하고 다른 방식으로의 각종학교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학비나 이런 것에 있어서, 과목 교육과정이나 교사의 자격이나 아니면 시설 여건에 있어서 일반 학교하고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 학교는 대안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서 52개교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지위를 가지지 아니하는 기관이 대안교육기관입니다. 대안교육기관은……

○**강경숙 위원** 그건 다 아는데요. 그냥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인가형 259개, 미인가형이

300개인 데요. 학교로 인정하지 않는 대안교육기관도 구분이 되거든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259개가 등록돼 있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강경숙 위원** 미인가도 같이 함께 지원한다는 것인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것은 지원 과정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차적으로는 등록되어 있어서 지도감독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교육청하고 지도감독할 때 그렇게 할 겁니다.

○**강경숙 위원** 지도감독이 되는 경우에, 이를테면 팔길이 원칙 같은 거군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지요.

○**강경숙 위원** 이 안에서는 하는 걸로 한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소위원장 문정복** 되셨습니까?

○**강경숙 위원** 예.

○**소위원장 문정복** 의결을 할 건데요. 지금 위원님들에게서 소수의견이 좀 있으셨어요. 그런데 교육의 기본원칙은 정규 학교에 다니든 대안학교에 다니든 모두 대한민국의 아이들이고 가능한 한 동등한 혜택을 받고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교육의 대전제로 해서 서지영 위원님과 정성국 위원님은 발언 기록에 소수의견으로 남겨 드리고 의결을 해도 되겠지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1항과 12항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3항부터 15항까지 정을호 의원, 문정복 의원, 조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심사 자료 1쪽입니다.

8월 28일 법안심사소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헌법에 따라 국가는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법체계상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법안의 취지에 찬성하며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안전법에서만 학교로 정의할 경우 법체계상 검토가 필요하다, 학생들 안전 고려 법안 개정 필요성이 있으며 가입률 제고를 위한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쪽입니다.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가입 대상에 대안교육기관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시면 문정복 의원안은 학교안전법 전체를 적용하는 걸로 돼 있고 조

정훈 의원안과 정을호 의원안은 학교안전공제 관련 규정만 적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4쪽입니다.

교육부 및 관계기관들의 의견입니다.

교육부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현행법상 학교는 각종 법률에서 안전을 위한 시설·환경 기준 등 책무와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대안교육기관에도 학생 안전을 위해 일반학교에 준하는 법적 의무 적용이 필요함, 또한 학원의 경우 학원법에서 안전조치 관련 운영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대안교육기관도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안교육기관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시·도교육청입니다. 대구·세종의 경우 법체계상 타 법에서 정의하는 학교의 범위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소년활동안전공제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경기·부산입니다. 대안교육기관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책임과 의무 규정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고 외국인학교와 같이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이 부재하여 실태 파악의 어려움, 타 기관과의 형평 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5쪽부터는 조문대비표입니다.

6쪽입니다.

2.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사업의 안내입니다.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가입자가 피공제자에게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육부의 의견입니다. 신속한 피해보상과 회복 지원을 위해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7쪽입니다.

시·도교육청은 부산·충북의 경우 안내의무 법제화 시 학교의 부담과 책임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입니다.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대전·서울·충북의 경우 일선 학교에 업무부담과 함께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고 현재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공제사업을 안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과 5쪽에 걸쳐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원님들 논의하셨듯이 이건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를 배제한 상태에서, 즉 학교가 아닌 상태에서 일반적인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의 공제사업 안내에 관한 추가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도교육청이나 아니면 공제회에서 기존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빨리 알려 줌으로써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위원님들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아 위원** 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정훈 위원** 제가 토론하기 전에, 먼저 하시지요.

○**소위원장 문정복**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좀 모순 같아요. 아까 제가 11번 항, 조정훈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법률안에서 의무로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하는 거는 좀 강제적인 건 반대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등’ 하나가 들어가서 강제는 아니다 이러셨는데 어쨌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런데 여기는 대안학교 학생들은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가입 대상에 대안교육기관 포함하는 건 신중검토라는 게 너무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여기 대안교육기관도 학교안전사고공제 가입 대상에 들어가야지요. 그래야 이런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 할 수가 있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른 사안입니다.

○**백승아 위원**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없지요, 차관님.

○**교육부차관 오석환** 지금 이건 학교에 관한 사항이고요.

○**백승아 위원** 공제에도 가입할 수 있고, 아까 조정훈 의원님 안은 일반 민간 보험도 가입할 수 있고 그렇기는 하지요. 그런데 어쨌든 취지가 그렇잖아요, 방향이.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가입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이 포함되는 거는 신중검토인데 안전조치는 하라 이 방향이 맞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내 말은.

○**소위원장 문정복**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백승아 위원** 그럼요?

○**소위원장 문정복** 신중검토하는 것은 적용받는 범위에 학교안전법 전체에 적용하는 건 아니고 학교안전공제회 관련 규정에만 적용하라, 그래서 학교안전법에 전체 하는 거는 신중검토다 이 얘기지요.

○**백승아 위원** 제가 지금 좀 이해를 잘못했나 보네요.

○**김준혁 위원** 두 안이니까, 조정훈 의원안하고 정을호 의원안하고 지금 학교안전법하고 학교안전공제회하고의 차이가 있어서……

○**백승아 위원** 좀 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 넣고 거기에 따라서 강제 가입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은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혁 위원님.

○**김준혁 위원** 조금 전에 논의했던 내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정복 의원님 안은 학교안전법과 관련된 내용이고 정을호 의원님 안은 학교안전공제와 관련된 내용인데 학교안전법을 적용하려면 대안학교가 기존 학교처럼 이행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습니다.

○**김준혁 위원** 그거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법안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입니다. 제가 예전에 졸업한 모교 학교운영위원장을 할 때 갑작스럽게 운동부에서 사고가 나서 학생이 어쨌든 사고로 훈련 도중에 사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제조합에서 비용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모금을 해서 부모님한테 드리기로 했는데 동문들이 모금을 해서 준 돈 때문에 공제회는 그걸 삭감해서 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공제회가 애초에 이만큼 주게 돼 있는데 우리가 모금했다고 해서 돈을 다 안 주고, 우리는 모금을 순수하게 해 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 법안에 이런 세부 내용과 관련해서 이걸 부칙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해서 모금 그러니까 공제회가 줘야 될 비용은 비용대로, 추가로 관련돼서 모금한 금액을 제외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법안에 넣을 수는 없을까요? 그건 제가 제안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되게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규정하는 것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김준혁 위원** 공제회법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여기서는 그렇지요, 공제회법에서?

○**교육부차관 오석환** 공제의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김준혁 위원** 그러면 공제회법은 제가 나중에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법률상의 지위가 필요할지 아니면 저희가 운영 과정에서의 규약으로 할지는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을호 위원** 학교안전법 보면 12조에 학교안전공제회 가입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보면 ‘제2조 1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은……’ 죽 나오고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학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요 여기에 외국인학교 뒤에 대안학교를 더 추가하는 것은 안 되는 건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대안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 그게 지금 똑같은 규정입니다. 앞에 지금 위원님께서 초기에 제안해 주셨던 것처럼 학교의 범위에 그걸 넣는 거랑 효력은 똑같은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로서의 여건하고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종학교기는 합니다만 외국인학교는 학교로서의 안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제회에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지도감독을 받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을호 위원** 각종학교에, 대안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러면?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러니까 대안교육기관은 지금은 학교로서의 교사, 교육과정 그다음에 그 시설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는 일이지요. 그러면 각종학교로 넘어갔다가 사립학교 인가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걸 여러 가지 영역에서 안 하려는 것이지요. 자율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안 가는 것, 지위를 유지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게 아까서지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잘 설명을 해 주신 거라는,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대안교육기관은 여하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가 분명히 아니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학교안전법에서는 학교로 정의하는 것이 법체계상 혼란을 분명하게 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부장관이랑 교육감은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지원이 포함되다 보니까 책임과 역할이 조금 모호해지는 지점이 분명히 도출이 돼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정을호 위원님도 외국인학교의 장 같은 경우에 승인을 얻어서 하는데 대안기관 역시 추가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질문도 한 건데 그 역할과 책임 이런 모호한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다시 한번 죽 논의 과정에서 보시면 기존에 있던 학교들은 이미 이런 안전체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대안교육기관은 완전히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조정훈 간사님의 법안을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체계니까 명료하게 얘기해서 재정 지원을 얼마나 할 것이냐, 지도감독을 얼마나 할 것이냐가 아직 안 잡혀 있는 부분이라 강경숙 위원님 의문을 가지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제도를 운영하면서 그냥 들어가 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60% 이상이 공제회에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정 지원도 일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보면 더 체계적으로 제도화된다고 보고 있고 그거는 저희가 대부분은 다 법제화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 실행 과정에서의 지침이나 아니면 협력을 통해서 해 나가는 단계가,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 단계가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는 단계라고 봅니다.

○**강경숙 위원** 조금 덧붙여서 그러니까 이렇게 대안교육기관이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하여튼 받지 않는 자율적 운영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각종 의무들을 자꾸 적용하게 되면 분쟁이 발생하거나 그런 소지들이 있지 않을까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 강제가 아닌 상태에서 선별적 강제에 가깝게 이루어지는 건데 어쨌든 거기에 재정 지원을 받게 되면 지도감독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책무를 다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안전 책무는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안전에 대한 책무성을 요청하시는 거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이.

○**소위원장 문정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영 위원님.

○**서지영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교육부의 검토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지금 혼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안교육기관 같은 경우에 우리 교육행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본 요건에 대해서는 갖추려는 의지는 없고 자율적으로 하고 싶고 그것은 이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전에 대해서도 예방적 조치를 교육 당국에서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할 의향이 없는데 사후적으로 보상 기준에 대해서는 똑같이 동등하게 요구하는 것과 저는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뒤가 사실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교육기관이 학교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는 교육부의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정성국 위원님.

○**정성국 위원** 차관님, 4페이지에 교육부 신중검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두 번째 줄 한번 읽어 볼게요. ‘대안교육기관에도 학생 안전을 위해 일반 학교에 준하는 법적 의무 적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정성국 위원** 지금 이게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는 이거를 신중검토하자는 뜻이지요. 그렇지요? 법적 의무 적용이 필요하지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래서 그 법적 의무를 대안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가지는 정도 수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대안교육기관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각지대라고 문제 인식을 하신 게 저는 조정훈 간사님이라고 보고요. 거기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법제화하는 영역 그러니까 법적 의무를 더 요구하는 영역이 안전에 대한 책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에 대한 책임을 그냥 요구하다 보니 재정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안전에 대한 책임을 하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판단을 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메커니즘으로 짜여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은 안 돼 있는 외곽, 밖으로 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정성국 위원** 그러면 이게 법적 의무 적용을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이 뜻은 학교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아까 계속 말씀 주셨던 교육과정, 교사 그다음에 시설 기준 등에 대한 요건을 먼저 충족하고 학교로서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현재 상태로는 어렵다 이겁니다.

○**정성국 위원** 순서가 그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습니다.

○**정성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가입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는 것은 조정훈 의원안과 정을호 의원안으로 정리를 하고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사업 안내는 정을호 의원안의 41조2의 신설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저희가 의견을 낸 거에 대해서는 반영이, 저희 이 법안에 대해서……

○**소위원장 문정복** 소수 의견이 있다고……

○**서지영 위원** 소수 의견으로 묶으시고 그냥 의결을 하시는 형태로 하시는 건가요?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시지요. 이 법안에 대해서 서지영 위원님과 정성국 위원님도 소수 의견이 있으신 거지요? 아닙니까?

○**서지영 위원** 저희는 학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니까 소수 의견이 있으시니……

○**서지영 위원** 반대의견으로 적어 주십시오.

○**소위원장 문정복** 반대의견으로? 반대의견이 있으시니 그것은 그것대로 명시를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부차관 오석환**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13~15항에 들어가 있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의 지위에 들어가는 것에 저희가 신중검토 의견 낸 것을 수용해 주시는 것이지요?

○ **소위원장 문정복** 예, 그럼요.

○ **정성국 위원** 그걸 받아들였다면 소수 의견입니다.

○ **소위원장 문정복** 예, 받아들이는 거예요.

○ **정성국 위원** 그 부분 확실히 말씀해 주시면……

○ **소위원장 문정복** 그래서 제가 문정복 안을 뺐잖아요.

의사일정 13항부터 15항까지 3건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17항부터 19항까지 서일준 의원, 정성국 의원, 백승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강대훈**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지난 9월 25일 법안소위에서 이 4건의 제정안을 축조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부 측 의견도 듣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하셨는데 의결을 못 하고 오늘 다시 의결을하게 된 것입니다.

4건의 제정안을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하는 것과 학생맞춤통합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4건의 제정안이 큰 틀에서는 유사한 측면, 유사한 부분이 많고 몇 가지 조문에 있어서 좀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는 것과 그 학생에 대해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그리고 중앙,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 그리고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3쪽입니다.

3쪽은 4건 제정안의 구성체계를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4쪽은 지난번 소위 때 소위 심사자료가 123페이지인데 제가 조문별로 심사를 드렸고 그중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표로 정리한 것이 4쪽입니다.

법안 제명에서부터 지원 대상, 학교에 유치원이 포함될 건가 말 건가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을 책무 규정으로 포함을 시키고 별도조항을 두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지역위원회를

둘 것인가, 전담기구를 둘 것인가, 또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것인가의 여부 그리고 지원 대상 학생을 누가 선정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서 전담기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인가 그리고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그리고 개인정보 관련돼서 처리정지 예외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행일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할 것인가 아니면 1년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학년도부터 할 것인가 이게 대체적인 차이점입니다.

또 5페이지에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소위 위원님들 지난 소위 때 심사했던 주요 내용을 전부 발의 의원실 그리고 소위 위원님들하고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그 통합조정안이 다음 페이지부터 조문별로 조문대비표에 통합조정안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합의가 된 부분들이.

그런데 지난 소위 때 논의가 안 됐던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소위 논의 과정에서 위기학생에 긴급지원을 할 것인가 여부, 위기학생 지원을 함에 있어 보호자나 학생의 동의 문제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와 발의 의원들 간의 협의 결과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 관련돼서 개인정보 처리정지 예외 규정도 같이 정리한 그 두 조항입니다.

그 두 조항, 두 사항이 소위심사자료 조문대비표로 69~70페이지 그리고 111~112페이지, 120쪽이 지난번 소위자료에서 빠졌던 논의 내용입니다. 그 두 가지가 바뀐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대체적으로 통합 조정이 된 게 소위자료의 수정 조문대비표에 통합조정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대로 각 조항별에 대한 의원님들의 발의안 그리고 저희 교육부와 전문위원실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최종 통합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았던 그 긴급지원 건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셔서 그 부분들을 제외한 방식으로 통합조정안에 대해서 정부도 동의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토론을 할 건데요, 정성국 위원님 손 드신 거지요?

○**정성국 위원** 예,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발언하면 되지요?

○**소위원장 문정복** 예, 말씀하세요.

○**정성국 위원** 지난번에 이 법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 부모 동의 없는 긴급지원 조항 삭제가 동의가 됐다면 웬만큼은 거의 다 됐다고 저는 판단되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고민정 위원님.

○**고민정 위원** 위기학생 보호자 등의 여부 부분을 삭제한 걸 각 의원님들에게도 동의를 받았고 그렇게 조정을 했다고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거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고민정 위원** 워낙 이 법이 크고 통과시켜야 될 필요성 때문에 거기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위기학생들이 통상적으로는 보호자들이 동의를 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위기학생에 들어가 있지요. 부모가 없는 경우도 있고 부모의 학대로 인해서 위기 학생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것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은 제가 일단 기록으로 남기고 추후에 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이 법의 취지는 상당히 하여튼 긍정적이기는 하지요. 학교밖청소년들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여가부 담당이었거든요. 이를테면 학교밖청소년의 학교 복귀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타 부처나 지자체와의 연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가 사실 굉장히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교육부 안에서의 일이 이제 아니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대안학교랑 관련해서 논의했었지만 일반 학생이 지원받는 거에 비해서 학교밖청소년은, 이게 통계 수치에 따라 굉장히 다르기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25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연구가. 그러면 그런 학생들까지 지원할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선언적인 법이기도 한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렇게 지원 방식 그리고 타 부처나 지자체와의 연계 이것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듣고 싶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혁 위원** 제가 연장해서 같이, 일단 취지에 같이……

○**소위원장 문정복**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준혁 위원** 김준혁입니다.

조금 전에 강경숙 위원님께서 이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 학교밖청소년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똑같은 내용이면서 조금 더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학교밖청소년 관련해서는 지금 여가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여가부가 담당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솔직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여가부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학교밖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업무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법률적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학교밖청소년 문제를 교육부가 이관받아야만 이와 관련된 법안에서 체계적으로 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개정안에 학교밖청소년과 관련된 그런 학업 복귀 지원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실제 88쪽·89쪽 보게 되면 개정안의 학교 복귀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나 또 현행 법안 내용이나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발의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육부 쪽에서 이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에서, 학교밖청소년의 학교 복귀 지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더 적극적인 안으로 수정을 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선 두 가지, 위원님들 말씀 주신 내용을 가지고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걸 왜 하느냐라고 할 때 수없이 많은 재정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이는

하나인데 각기 다른 곳에서 아이를 괴롭히는 현상도 있고 사각지대도 있고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안 되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아이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기 달리 우리 아이들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선의로 안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의 꼭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해 가지고 안전장치를 하면서 공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통합, 같이 연계를 시켜 가지고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하고 그러한 정보 체계 내에서 사업 관리를 해 나가는데 그때 정확히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체계에서도 협업이 안 되는 구조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실 겁니다. Wee센터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더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마련해 나가는데 그중의, 큰 사각지대 중의 하나가 학교밖청소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법안 마련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 중의 하나도 여가부가 여가부의 역할을 잘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협업하는 것에 대해 다소 어려움을 가지셨는데 이제 저희하고 협력해 가지고 진행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고 지금 저희가 한 1년 동안 준비를 해 나가게 될 겁니다.

○**김준혁 위원** 저희 김준혁 의원실 1호 법안입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백승아 위원님.

○**교육부차관 오석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면 저희가 1년 동안 사실, 지금 말씀 주시는 내용들을 통해서 시스템 구축하고 그리고 제도적 시스템 구축해야 되고요. 사업에 관한 다양한 오거나이징(organizing)시스템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새로 다 만들어 가는 작업을 1년 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통과시켜 주면 가장 빠른 시간으로는 후년 3월 달에 작동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법안 통과를 위해서 진짜 어쩔 수 없이 부모 동의 없이 제공되는 서비스 그 내용 수정안을 받았는데요. 사실 보호자랑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방임하는 경우도 있고, 이번 전북 학생 같은 경우는 결국 부모님이 아이를 서울로 유기하기까지 했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고 아동학대 신고에서 판정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굉장히 긴데 그때 그 사이에 학생들을 보호하는 방법도 사실은 필요하잖아요.

적극적으로 아동학대 신고한…… 저도 교사일 때 부모님 몰래 아동학대라고 신고하고 들킬까 봐 조마조마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 중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지원한 경우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학교에서 발견된 위기학생이 보호자의 방임·거부·동의하지 않는 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사실 수정안 받기 싫었지만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서 현장에 적용시키고 싶어서 동의한 것이고 제가 교육부가 실행하는 이 정책이 학교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부모 동의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보일 때는 다시 개정안을 바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확인차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아까 차관님 말씀대로 한 학생의 문제가 예를 들어서 학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행동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회성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날 건데 학교는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그래서 예산도 되게 중복적으로 활용이 되고 난맥상을 이룰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위원회가 재조정이 되기는 하는 건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회 조직으로 보시면 우선은 전담기구가 있고 그다음에 시·도하고 지역지원센터가 있고 학교에는 종전처럼 학교위원회를 따로 만드는 것은 지금 말씀 주시는 것처럼 별도의 업무 부담과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한다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교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안 중에서 백승아 의원님하고 김문수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드려 가지고 저희가 조정했던 안이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 중에서는 종전에는 실제로 많은 위원회들이 있어서 많이 지원하고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그게 아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행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이렇게 통합을 하면서 그렇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해 나가는……

매우 잘 아시는 것처럼 교복우 사업 진행할 때 보시면 그런 특정 목적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통합지원하려고 그러면 그게 가능한 것처럼 지금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 모습을 저희가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강경숙 위원** 정말 이게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실제로 핀란드 같은 데서는 사회복지하고 교육적 서비스도 정보를 같이 교류합니다. 우리는 지금 개인정보 유출이니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묶여서 그렇게 통합하지 못하고 있는데 굉장히 효율적인 내용들을 많이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이런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거라는 순기능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건 인정을 하는데 이를테면 하여튼 지역과의 연계라든지 협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사회 기관하고의 지원도 많이 필요로 하는 것도 여기서 연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령 마을교육공동체 같은, 마을하고 협력하는 그런 부분까지를 하여튼 싹 넣어서, 말 그대로 통합지원이니까 그런 것이 실효성 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이걸 꼼꼼하게 살피다가 그렇지 않으면 개정안을 다시 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여러 가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는데, 저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못 해서……

그러니까 특정 흥길동이라는 학생이 학생맞춤지원 대상이 되었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 개선이 돼서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조정훈 위원 그러면 그 기록이 계속 남나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저희가 이것도 유념해야 될 부분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용처가 없어지면 바로 삭제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은 저희가 실행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야말로 막, 우리 옛날 말로 빨간 줄 긋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낙인효과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 것 우려는 안 해도 되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것 마땅히 저희가 준비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수고하셨습니다.

9월 25일 날 원체 아주 토론이 진지하게 있었고 지금 통합조정안 해 오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대부분 다 수용하시는 거지요, 그대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요.

아까 고민정 위원님과 백승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기학생의 긴급지원과 위기학생의 보호자, 학생의 동의와 관련해서는 법률안에서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한 그것을 꼭 회의 자료에 담아서 나중에라도 긴급하게라도 다시 이 법률이 성안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의원안과 다른 의원님들의 법안명이 여러 가지여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으로 명명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6항부터 19항까지 4건의 제정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정리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0항부터 22항까지 김용태 의원과 정성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대학 등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활동에 필요한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는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대학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3쪽입니다.

한편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교육국제화특구 안의 대학이 외국인 학생 유치 확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가 또는 특구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 안의 대학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21항입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기 전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은 고등교육의 발전 등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회계연도 기준 17조 원이 고등교육 재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22년 기준 1176개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중 교육부의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중소기업 R&D산업인턴지원사업 등 다수의 사업이 단순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넘어 각 지역산업, 인재 육성 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을 보시면 이 사업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 대학원은 그 자체로 소재지역에 유무형의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적으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을 고용함으로써 일자리가 늘어나고 대학 학생들이 유입됨으로써 지역 내 소비가 늘어나는 등의 효과가 있으며, 최근 대학의 기능으로 강조되는 산학협력이나 평생교육 등도 지역 기업 및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및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여 지역과 지역대학 간 전략적 연계가 중요한 시점으로 교육부에서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추진체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22항입니다.

1쪽입니다.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에 대해 위촉일 이후 3년 동안 사교육과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영리행위 확인을 위해 국세청장에게 출제위원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1월 19일 대체토론입니다. 개정의 취지에 동의하며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의 기준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의 출제·검토위원 자격제외 요건을 참조하여 명확히 규정 할 필요가 있고 처벌 정도는 공직자윤리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과세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하나 개인정보 침해 소지 및 출제위

원 기피 우려가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쪽입니다.

1.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위촉 후 3년간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 금지입니다.

교육부는 일부 수정 의견입니다. 개정의 취지에 공감하며 사교육 관련 영리행위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사교육 영리행위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를 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아 단서 조항은 삭제가 필요하며 별칙 규정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단위 시험으로서 수능의 위상과, 공교육 중심 수능 신뢰 회복을 위한 수능-사교육 간 카르텔 근절 사안의 염중함을 고려할 때 3년으로 설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5쪽입니다.

2. 과세정보 제공 요청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일부 수정 의견입니다. 과세정보 확인은 출제위원으로 위촉되기 전 단계에서 필요한 절차이므로 과세정보 확인 대상자를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하고자 하는 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사교육 관련 영리행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제 11항에 따른 사교육 관련 영리행위'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6쪽에는 이에 따른 수정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3. 출제위원 위촉 절차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교육부의 경우에는 수능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으로 교육부 고유의 사무이며, 수능 출제위원의 지정·위촉은 행정위임위탁규정 제45조 3항에 따라 행정위탁을 받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처리하는 전문적·기술적 업무인 점을 고려하여 행정규칙인 훈령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8쪽에 조문대비표가 있으며, 9쪽에는 부칙이 있습니다.

부칙은 26년도 수능부터 적용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쪽에는 현행 수능 출제·검토위원 위촉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11쪽에는 수능 출제위원 확인·서약 및 동의서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0항에 대해서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이견 없습니다.

21항에 대해서도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이견 없습니다.

22항에 대해서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다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나머지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빠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에 있는 수정의견의 문언에 보시면 11항의 중간에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교재 및' 이렇게 돼 있는데 '배타적으로라는' 용어가 조금 적절하지 아니한 것 같아서 수석전문위원님과 저희가 상의를 해 가지고 해당 학원의 수강생에게만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렇게 문언 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20항부터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 하나씩 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문정복** 하나씩 하지요.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건, 대학은 사립대학도 포함되는 겁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전문대도 포함되고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정확히 RISE 체계를 진행을 하면서 이러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는 일들입니다.

○**조정훈 위원** 주로 뭘 지원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지금 RISE로 하면 컨설팅 지원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규제 완화 그다음에 재정은 RISE 체계에서 들어가는 1.7조 플러스 0.3조 하면, 2조의 재원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대상이 되는데 지금 특히 유학생 유치에 대한 컨설팅을 교육부에서도 직접 지원하고 자자체에서도 지금 협력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고민정 위원님, 다음 강경숙 위원님.

○**고민정 위원** 그러면 이 학교들은 선정 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곳들만 지원을 받는 건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사실 이것은 일종의 선언적 의미로서의 근거 규정으로 작동을하게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이런 지원이 가능하니까 개별 사업들이나 이것은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선정을 하거나 아니면 공모에 의해서 추진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선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대학이 신청을 해서 조건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교육부차관 오석환** 모든 유형이 다 포함될 겁니다.

○**고민정 위원** 다 포함이?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고민정 위원** 왜 그러냐면 그냥 언뜻 드는 생각이 이 법안 취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간에 커미션 문제로 사고가 나는 것들이 있고 지난 국감에서도 아마 한경대가 그런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어를 하실 건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좋은 지적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거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레드오션, 학교와도 싸우고 학교 간에 경쟁하고 밖에 나가서도 경쟁하고 데리고 들어오면 학교 내에서 서로 간에 협력도 안 하고 그런 체계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잉 경쟁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유학생들 간에는 서로 협력이 안 이루어지

는 그런 체계였는데 그거를 저희가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거하고 RISE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지역에서의 고등교육에 대한 역할 중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된 것을 지역하고 밀접하게 연계시켜서 협력하다라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고 했던 그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금 교육청마다 마련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고민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숫자를 몇 명으로 많이 늘리겠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서 소위 중간에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교육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조건하에는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나 등을 보고하게 한다든지 거기에 뭐가 적발됐을 경우에는 다 토해 내게 한다든지 등등의 그런 장치는 전혀 없어 보여서……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거는 이것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구체적인 모습이 생기면 재정 지원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시는 내용을 담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반적 제도로는 외국인 유학생 인증 제도 그것을 통해서, 사실 그런 것을 못 하게 하고 다양한 제도들 저희가 마련하고 있는데 일탈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탈하고 있는 것에는 저희가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담당 과장이, 신 과장입니다. 확실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 관련해서 추가 조금 하고 그다음에 답변 부탁드릴게요.

제가 동의 없이……

○**소위원장 문정복** 아니, 그냥 하세요.

○**강경숙 위원** 동의받았습니다.

이게 고민정 위원님 말씀과도 좀 상통하는 면이 있는데요. 저도 사실 대학에 있어 봤지만 외국인 학생들 유치하다 보면 도망가 버리는 경우도 많고 커미션 관계로 사기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질 관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되게 궁금합니다.

이거는 사실 의도는 되게 좋잖아요.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경쟁력 갖추기 위해서 유치를 하는 것이고 또 유학생들이 제대로 국내에 취업하고 정주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진짜 그게 실효성 있는 성과로 나타날 것인가는 사실 퀘스천인 거예요. 질 관리 부분을 좀 알고 싶어요.

○**교육부교육국제화담당관 신미경** 교육국제화담당관 신미경 과장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학생 질 관리와 관련해서는 사실 유학생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 대학의 유학생 관리나 유학생 교육의 질이 어느 정도인가가 유학생 유치하는 데도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유학생 질 관리체계를 유치체계와 함께 강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 국제화역량 인증제를 법무부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한경대나 또 몇몇 문제 대학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재가 좀 더 확실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조체계를 더 강화하고 있고,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그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더 정기화하고 횟수를 더 확대해서, 실태조사도 병행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대학 측 입장에서는 불법체류율이나 이런 것들, 대학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대학이 과다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도 제기해

주시기 때문에 대학의 부담을 합리화하면서 대학들이 충분한 시그널을 받을 수 있도록, 불법적인 소지에 연루됐을 경우에는 유학생 유치가 정말 힘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시그널을 정확히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백승아 위원님 그다음 고민정 위원님, 김민전 위원님 이렇게 가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제가 두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이 개정안이 전국에 다 적용이 되는 걸 텐데 사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의 격차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 유치에 있어서도 그 차이가 좀 벌어질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재정을 지방에 있는 대학에 더 분배하거나 이런 어떤 계획은 있으신지 궁금하고 또 유학생을 유치하는 건 좋은데 이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배워서 정착을 해서 우리나라의 질 높은 인력으로 안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사회나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걸 개선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있는지 그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고맙습니다. 중요한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직접적으로 대학생 유치와 관련돼 있는 재정 지원을 투입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예 없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게 RISE 체계를 운영을 하니까 이제 그런 제도들이 마련되는데 지금 말씀 주셨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지역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니까 유학생이 들어왔을 때 지역 내에서 어떻게 안착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그 지역에서 직업을 구하면서 같이 주거…… 필요한 인력이지요. 필요한 인재들이 안착할 수 있는 모습들을 만들어서 RISE 체계 내에 지금 프로그램으로 넣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중요한 사례들을 저희가 확산을 해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종전 같아서는 개별 대학이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에 그냥 맡겨 둔 체계였는데 이제 지역사회하고 대학 간에 협력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런 면에서 보면 유학생 유치를 위한 재정 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균형과 관련된 요소들은, 지역과의 밀접성은 기본적으로 고등교육 정책하고 유학생 유치 정책하고 맞물려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고민정 위원** 이 사업을 기왕 하는 것 좀 제대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겁니다. 반대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학생을 유치를 하면 숫자에 제한이 좀 있는가?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전체 대학 학생이 1000명인데 유학생을 1000명 받는다, 제가 좀 과장되긴 했지만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를 잡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스터디 코리아 300K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대학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밑의 고등학교들도 포함되는 건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우선은 대학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대학 인재……

○**고민정 위원** 100% 다 대학만이에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기본적으로는 대학 대상 사업입니다.

○**고민정 위원**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고등학생인 경우에도 외국인 유학생으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학은 학교에서 관리가 되지만 고등학교는 관리할 수 있는 선생님이나 부서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노출돼 있거든요.

이 스터디 코리아 300K의 취지에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유학생들은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에 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향후의 강화 계획들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 두 가지를 저희 방으로 보고서를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가서 상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민전 위원** 앞에서 과장님의 법무부와의 협조 문제를 말씀하셨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대학이나 아니면 앞으로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이게 확대된다라고 하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부모의 비자 문제 이게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이 비자를 법무부가 다, 당연히 법무부가 관리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법무부에서 전화가 오거나 그러면 마치 죄인처럼 느껴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적어도 대학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법무부와 직접 컨택트나 이런 건 조금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교육부교육국제화담당관 신미경** 질문 감사드립니다.

고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부 대학들에서 모집 정원보다 더 많은 유학생을 유치해서 유학생 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게 우려스러운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교육국제화 인증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유학생 수가 모집 정원보다 더 많이 모집된 경우에 별도의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서 저희가 더 면밀하게 대학이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개선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인증제를 추진하면서 법무부가 대학에 주는 비자 발급의 편의가 사실 긍정적인 역할은 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 유치에 있어서 법무부와 협조는 필수적인데요. 최근에 법무부가 대학의 입장을 충분히 많이 고려해 주고 그다음에 외국인 정책이 바뀌면서 보다 유치 입장에서의 정책을 많이 개선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대학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20항에 대한 질의는 이제 끝나셨지요?

○**백승아 위원** 아니요, 지금 답변이 잘 안 됐어요. 제가 순간 당황했는데 질문을 잘못 했나 다시 점검을 했는데 제가 여쭤본 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할 텐데 재정적 지원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답변은 ‘지금까지는 학생 유치 지원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약간 동문서답 아닌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아닙니다.

○**백승아 위원** 뭐가 맨날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는 거잖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질문하신 것은……

○**백승아 위원** 지금까지는 유치에 지원한 적이 없었고 이제 유치에 지원을 할 건데 수도권과 지방 비수도권 대학에 어떤 재정적인 차이가 있느냐 제가 여쭤봤는데 답변을 ‘지금까지는 지원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러니까 행·재정적 지원과 관련된 것 중에서 특별히 유학생 유치와 관련되는 직접 사업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저희는 제도를 마련하고 대학이 각자의 특성에 따라서 학생을 유치하고 교육을 하고 배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면 본질적으로 제 질문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한 어떤 정책 마련된 건 없는 거네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러니까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 진행을 할 때 실제로는 우위를 점하고 있는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의 여건을 좋게 하는 그런 노력들이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는 사항들인데 아까 생각하시듯이 재정 지원이나 아니면 행정적인 규제 완화, 또는 두텁게 더 보호하는 체계를 통해서 하는 게 있느냐 그 질문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 말씀이 맞으십니까?

○**백승아 위원** 예, 그러니까 지방대학에 어떤 지원을 생각하신 게 있느냐고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직접 지원은 앞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도 확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예산들이라 저희가 국고 예산을 확보해야 될 뿐만 아니라 효과성에 있어서도 실제로 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필요와 거기에 따른 교육 이런 걸 고려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가장 유익한 방식이 대학이 지역 산업과 연계시켜 가지고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학생을 유치하고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지역에 정주하는 여건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관한 노력들인데 지금까지는 RISE 체계나 이런 것처럼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큰 틀로는 그게 만들어질 거고요.

○**백승아 위원** 결론은 그거네요.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앞으로는 노력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습니다.

○**백승아 위원** 왜 그렇게 길게 답변을 하세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노력하는 게 제도로서 마련될 거고요. 또 하나 GKS 사업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코리아 스칼러십 프로젝트인데 그것은 일부 학생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백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 RISE라는 게 사실은 지방대학의 자율성을 키워 주기 위한 거잖아요. 지방자치단체랑 같이 잘해 봐라 이건데 이 법안은 교육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것들이 저는 약간 모순적으로 느껴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런 대책은 있는지 여쭤본 거예요. 앞으로는 신경 쓰겠다는 부분 기록에 남겼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다음으로 21항에 대해서……

김준혁 위원님.

○**김준혁 위원** 사실은 20항하고 21항하고 연동돼 있는 것인데 어쨌든 20항은 외국인 학생 유치와 관련된 내용이 중심이고 21항 같은 경우는 대학에 재원 지원하고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 즉 RISE와 관련된 내용이 보다 주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20항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제가 재직하고 있었던 대학에서도 외국인 학생도 유치하고 있고 RISE와 관련된 내용도 좀 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법안 다 좋아요. 저는 20항,

21항, 22항 다 아주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서 차별성이 존재한다.

뭐냐면 지금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RISE 사업이 되게 애매한 게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경기도 외곽에 있는 대학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 정말입니다. 수도권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수도권인지 지방대학인지 헷갈리는 대학들이 경기도 외곽에 많이 있어요, 경계에 있는 대학들. 그러면 이 대학들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원을 해야만이 RISE 사업에 해당될 수 있는데 교육부 자체가 수도권에 대한 은근한 지원 배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역차별성을 방지하는 보완적 내용은 없을까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제가 큰 것만 좀 말씀드리고 담당 과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지방대학 육성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게 제 기억에 2013년부터 논의를 진행을 해 가지고 정말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발전 전략을 한 10년 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되 수도권 지역 내에서도 지역과의 밀접성은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같이 있다라는 인식 하에서 저희가 내년부터 RISE 체계를 7개의 시범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 늘렸습니다. 그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수도권 지역에 있는, 그것도 지역이니까 지역에서의 차이에 따른 지원 방식이나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내년에 RISE 체계를 진행을 하는데 정확히 구축하고자 하는 게 지방은 일종의 지역 대학 중심 지원체계로 이루어졌던 큰 지역 중심의 체계고요. 수도권의 지역에는 예컨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별도의 사업체계 그게 서울시가 구상하고 있는 영역들입니다. 경기도 같으면 일반 대학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낙후되어 있는 접경지역이라든지 이 지역에 대한 수도권 내에서의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우리 실무팀들이 RISE 체계를 기획할 때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의 그 사례를 좀 말씀드려 주십시오. 담당 과장입니다.

○**교육부지역인재정책과장 박성하** 지역인재정책과장 박성하입니다.

차관님 말씀 주신 것에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지방대학 육성법은 제호에서도 보다시피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경기권에 있는 지역 중 특히 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접경지역에 있는 대학들에 대한 지원 부분이 사실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고등교육법 논의 주시고 RISE를 하게 되면, 저희가 17개 시도에서 모두 전국적으로 RISE를 할 때 지역 여건에 맞게 지역 혁신을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북부와 남부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경기 북부에 소재해 있는 대학들과 함께 그리고 남부에 있는 대학들도 경기 북부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들하고 함께 경기 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설계해 가지고 지금 열심히 논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RISE를 하게 되면 오히려 각 시도의 여건에 맞게,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북부와 남부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훨씬 더 맞춤형으로 기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준혁 위원** 이것은 나중에 교육부하고 따로…… 이 법률 자리에서는 논의하기가 좀 그런데 RISE 관련해서 교육부가 좀 큰 틀만 고민하고 있고 대학 현장에서의 이런 부분들은 좀 놓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기조실장님하고 저희들이 같이 한번 논의를 하시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자리 마련해 주시면 언제라도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21항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2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페이지 수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하기가 좋거든요, 토론하실 때.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조정훈입니다.

22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이게 두 가지인데 수학능력 출제위원에 대해서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겠다는 취지고 그런데 두 가지 방식으로 이걸 하셨는데 하나가 3년 동안 출제위원의 사교육과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해야 된다 그러면 그 배경에는 출제하는 과정에서 내가 일했던 사교육 학원에서 강의했던 내용이 출제될 수 있으니까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출제위원이 된 이후에 3년 동안 여러 가지 사교육 관련된 영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 전관예우 막자는 것 같은데 출제위원으로 일한다 그럴까 하는 것은 우리 교사들의 입장에서 이게 의무입니까 아니면 하나의 영광이고 영예입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본인의, 선생님들의 역량을 인정받고 그거를 정말 가장 중요한 시험 체계에 발휘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인식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 거의 30~40일 감금해서 핸드폰도 다 뺏고 굉장히 고생하면서 나오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사례비는 얼마나 줍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담당 과장님께서 이따가 따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별로 안 되지요, 큰 틀에서?

○**강경숙 위원** 하루 30만 원.

○**교육부차관 오석환** 고초에 비하면 적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동의가 되는데 3년 전 동안 과세해 가지고 특정 학원에 기피…… 왜냐하면 그 학원에 부당한 부적절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미 집필한 위원이 또 들어갑니까?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까, A라는 집필위원이?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사교육을 실시하면 첫 번째 조항에 의해서 자격이 상실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사교육으로 나온 사람은 다시 들어가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사교육기관에 계신 분들은 공교육기관의 핵심인 출제에는 참

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사교육기관에서의 좋은 역량을 특수한 아이들에게만 특별히 발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은 저는 공인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앞단은 알겠는데 후단 3년 동안 사교육 그걸 못 하게 한다. 그래서 보니까 영리 목적이라는 것은 학교교과학습학원에서 사용되는 교재 및 자료 집필·검토·자문·제작 등 하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학원은 차릴 수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없습니다. 이걸 하고 난 다음에는……

담당 과장이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인재선발제도과장 임소희**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장 임소희입니다.

지금 저희 출제·검토위원들은 거의 모든 수가 현직 교수님 아니면 현직 교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학원법상 과외교습학원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그 부분은 당연히 배제를……

○**조정훈 위원** 만약에 사직을 하면?

○**교육부인재선발제도과장 임소희** 그런데 저희가 위촉을 할 때 기본적으로 공교육기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촉을 하기 때문에……

○**조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제를 했는데 출제한 뒤에 내가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서 사표를 쓰고 학원을 차리겠다 그러면 우리 법률상 공무원들 이해관계 충돌 방지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관련 업무 못 한다 이런 게 교사에게도 있습니까? 제가 무식해서……

○**소위원장 문정복** 그럴 경우에 당연히 3년 금지해야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간사님, 여기 문언으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공교육에 임하고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출제위원으로 위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은 그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해야 될 나름대로 본인의 예측을 통해서 담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 이후에 만약에 영리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영리활동하는 행위 자체가 이 특수한 기회를 활용을 해 가지고 본인의 영리활동에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1년 하고 난 그다음에 학원을 차리면 직업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그런 걸로 보시는 건데 이건 특수한 기회를, 더더군다나 수능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득한 그런 경험이나 역량을 가지고 본인의 영리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조정훈 위원님 되셨습니까?

○**조정훈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출제위원은 요청 받았을 때 거부할 수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강경숙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원래 출제자들은 교수나 현직 교원이 갑니다. 학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부르지도 않아요. 그럴 수 있는 구조도 안 되고요. 평가원에서

출제위원, 검토위원들을 위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제위원이 있고 출제한 것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검토위원이 있거든요. 이 위원들을 선정할 때는 지역 안배도 합니다. 성별도 안배하는 거고요. 전공 영역들도 다 골고루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두 번째, 아까 조정훈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되는데 두 번째 보시면 국세청장에게 출제위원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한다고 한다면 이건 어떤 면에서는 출제자를 제대로 선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굉장히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3년 동안 다른 사교육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도 없는데 이거를 너무 좀 더 군더더기같이 붙이는 것인 데다가 과세정보까지를 제공한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 굉장히 자존심이 무척 상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출제자들을 섭외해 오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 가지 안배도 해야 되고 또 타당성 있고 실력 있는 분들을 요청을 해야만 제대로 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다가 가장 결정적으로 7쪽에 보시면, 교육부의 의견이기도 한데 이것을 행정규칙인 훈령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랬고요. 10쪽에도 보시면 이미 교육부 훈령에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또 한 번 더 여기 법률에다가 넣은 사안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14조를 보십시오. 여기 다 똑같이 내용이 있습니다. 14조에 3년 이내에 입시 학원이나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강의나 특강을 한 사람은 올 수가 없어요. 출제위원 자격 자체가 박탈당하는 겁니다. 기준에 이미 있어요. 그리고 모든 자격기준을 평가원장이 정하게끔 되어 있어서 굳이 이런 내용들이…… 그 전에 대통령께서 무슨 사교육 카르텔 그거를 꽉 띄우니까 그거에 대한 법률안이 나온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훈령에 이미 있기 때문에 이 법은 그렇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이건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소위원장 문정복** 차관님 먼저 답변 주시고 정을호 위원님.

○**교육부차관 오석환** 지금 사실 실효성의 문제입니다.

○**강경숙 위원** 실효성의 문제입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정확히 실효성의 문제인 게 훈령으로 돼 있거나 이럴 때 이렇게 아니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처벌을 하는 행위로 이루어지지 그런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거는 당연히 법률적 근거를 가져야지 과세정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되는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예방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사후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확인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한테 그렇게 과세정보를 다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요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도를 마련해 놓으면 나중에 정비가 되어 가지고 안전한 형태로서의 훌륭한 출제자들을 모실 수 있는데, 출제자 풀을 늘리고 있습니다.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

으셨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니까 국한돼 있어서 오히려 문제를 야기한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바꿔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정을호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정을호 위원** 제가 토론할 내용도 강경숙 위원님과 비슷한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사교육 관련해서 법률 개정 취지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데 과도한 과세정보 제공이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출제위원들의? 그러면 좀 출제위원 기피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토론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양형 기준도 너무 세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교육부인재선발제도과장 임소희** 출제위원 기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출제위원 모시는 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타 소득 정보에 대한 자료들을 다 제출을 받고 있고요. 다만 그런 과정들을 조금 더 편하게 하고 그다음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법에 근거를 두기 위한 것이라 지금 하고 있는 것과 현실적으로 실행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을호 위원** 양형 기준.

○**교육부인재선발제도과장 임소희** 양형 기준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수능이라는 시험의 공정성이나 위상을 생각을 했을 때 학부모님들이 이게 사교육과 유착이 있는 문제라는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조금 더 강하게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3년 기준에 저희는 동의를 하는 바고요.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논의해 주시면……

○**정을호 위원** 그 부분을 조금 줄여서 1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조금 효과가 떨어지는 건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전제로서의 3년이라고 보여지고요.

○**소위원장 문정복** 백승아 위원님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백승아 위원** 저는 교육부에 확인하고 싶은 게 수능 출제에 참여한 교사가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판매를 한 사건 확인하고 한 22건 수사 의뢰하셨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교육부인재선발제도과장 임소희**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니까 몇 건이 법적 처벌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건 지금 알 수가 없네요?

○**교육부인재선발제도과장 임소희** 아직 검찰에 송치돼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가 협직 교사랑 사교육 업체 간의 어떤 연계 이런 걸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게 카르텔이라고 볼 정도의 그런 광범위한 문제인가. 카르텔은 되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담합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이건 약간 개인의 도덕적 해이, 윤리성 결여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이게 사교육 카르텔로 몰아갈 정도의 일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영리행위에 활용하면 안 된다, 금지해야 된다 이 취지는 저도 너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봐도 유사입법례랑 비교했을 때도 좀 과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도 너무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고 이 처벌도 너무 비례성이 부족해요. 입학사정관 취업 제한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너무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거는 사족이기는 한데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데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오래 걸려서 출제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 학원에서 다 가져가고 족보닷컴 이런 데서 다운 받아서 몇 백억 원씩 돈을 벌고 이래요. 저작권 보호 하나도 안 돼요, 현장에서. 그런 거에 대한 조치는 하나도 없는데, 수능 출제위원들이 문제 판 거—잘못했지요, 잘 했다는 게 아니라—이런 거에 대한 대처는 되게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씁쓸한 마음도 드는 게 사실이고요. 좀 과도한 면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처벌 기준과 관련돼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과세정보는 필요 시에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정보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김민전 위원님.

○**김민전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이 법은 사실 교육부 훈령과 상당히 겹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훈령을 보니까 훈령은 사전적인 규제인 것 같습니다. 출제위원의 자격에 대한 것이라고요. 법은 사후적으로 출제위원이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 훈령과 이 법안이 동일한 것이다, 겹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저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인격에 침해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직업 선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등등의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지만 나갈 수 있는 구멍들은 다 마련해 놨어요. 교육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법안 자체가 너무 과잉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저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서지영 위원님.

○**서지영 위원** 김민전 위원님이 훈령과 지금 이 법안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 제가 질문이 있는데 이게 지금 수능 출제위원의 사후적인 영리행위를 막고자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능 출제 과정에서 지득한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하여, 경력을 활용하여 영리행위하는 것 다른 국가고시도 똑같습니까? 지금 다른 국가고시 출제자들의 사전적·사후적 제한조치들에 대해서도 같이 확인해 보셨습니까?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른 국가고시 같은 경우에도?

○**교육부차관 오석환** 다만 영향력의 차이 때문에 얼마나 저희가 훈령 내지는 지침으로 운영되어서 도덕적인 요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범주 내에서 처벌할 수…… 예컨대 다음 해 몇 년 동안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패널티를 주는 과정하고 그다음에 이것처럼 범국민적인 가장 하이 리스크의 테스트하고 좀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유사한 그런 제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저는 그거 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저희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서지영 위원** 수능을 1년에 한 52만 명 정도 치르기 때문에, 매해 있는 것이고 52만 명이 치르기 때문에 굉장히 전 국민적인 관심사도 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모두 다 지원해 주려는 그런 열망들이 우리 사회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국가고시 같은 경우에도, 국가시험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그분들이 그 경력을 활용하여 사후적으로 여러 가지 학원강사도 하시고 책도 쓰시고 책도 판매하시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법의 일관성이나 균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수능을 출제한다고 해서 다른 국가고시 출제자와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저는 그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시고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저는 이 부분에서는 좀 다른 관점으로…… 오히려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 다른 쪽에서, 물론 과목의 특성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느냐 그리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출제자의 특성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능에 있어서는 필요한 영역이라 우리의 이 모델들이 오히려 확산되거나 아니면 반영되는 쪽으로 가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미 시스템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을 법제화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서지영 위원님 되셨습니까?

○**서지영 위원** 예.

○**소위원장 문정복** 강경숙 위원님 다음에 조정훈 위원님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사후를 자꾸 구분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여기서 사안은 뭐냐 하면 출제자들이 기준에 자기가 기출문제를 냈던 것을 수능이라든지 임용고시에 가지고 와서 그 문항을 약간의 조정이라든지 유사하게 내는 것에 대한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미 그것을 많이 강의도 하고 여기저기서 막 자기의 내용들을 알렸던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시험에 내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는 것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아까 백승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내고 난 다음에는 이 문항들은 진짜 무슨 카피라이트 이런 것도 상관없이 다 같이 여기저기서 쓰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인데 이것을 낸 사람이 어떤 학원에 취업을 하거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이미 냈기 때문에 이것은 다 공개가 된 것이고요. 사실상 중요한 핵심은 사전적인 것이에요, 자기가 낸 것을 또 냈는가.

그런데 그것을 거짓말로 해서 냈는데도 안 냈다고 하고 들어와서 유사 문제를 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장치들도, 각서도 다 쓰고요 그 문항을 그대로 사용했다든지 그런 것 다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양형 기준도 그렇고 이게 좀 과도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훈 위원** 차관님, 제가 몇 가지 좀 질문할게요.

일단 이 법은 교원만 대상입니까? 교수는 대상이 아닙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대상입니다, 같이.

○조정훈 위원 교수도?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제자의 지위를 가진 자는 모두 대상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교수도 3년 동안 소위 학원에서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조정훈 위원 지금 기사들을 보니까 수능 과정에서 알게 된 교사들이 서로 문제를 만들어서, 일례로 수능 검토위원으로 여러 번 참가한 고교 교사 A씨는 출제 합숙 중에 알게 된 교사 8명을 포섭해서 문항 공급조직을 구성해서 6억 6000만 원을 받았다, 이 사람은 18억 원을 벌었다 이런 얘기들이 죽 나와요.

그래서 저는 사교육 카르텔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얘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진짜 나쁜 것은 이것을 꾸시는 사교육 학원들이잖아요. 자기보다 한 십 분의 일, 이삼십 분의 일도 못 버는 교사를한테 굉장히 큰돈 주고 문제 몇 개 똑같이 아니고 비슷하게 좀 만들어 달라고 꾸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까? 그렇게 출제위원들로부터 문제를 사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면 안 돼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저희가 작년, 금년 부적정한 방식으로 공교육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제도개선들을 이루었고요. 그것은 사실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 아닙니까? 사적 계약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문제는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사적 영역이라고 하면, 교사의 또는 교수의 사적인 활동을 방지하는 게 훨씬 더 큰 제약인데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제가 사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학원의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는 의미에서 사적 활동에 속한다고 보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보고요.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 법은 이 법대로 넘기기로 하고 추후로 사교육 학원들, 정말 성실하게 교원 활동을 하고 있고 문제 내는데 이런 정말 치명적인 유혹을 하는 사교육업체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한번 만드시면 어때요? 잡히면 진짜 폐쇄한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 부분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계속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는 저희가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담은 그러한 제도는 아직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정한 행위를 하면 간접적인 처벌이나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 그것은 동의하기 어렵고요. 지금 이게 불법으로 문제를 사고파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파는 사람은 처벌하는데 사는 사람은 사적 계약이다라고 보호하신다는 취지는 사교육 카르텔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입장하고는 좀 다르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제도를 만드는 과정을 어떤 식으로 짜는 게 사회적으로 수용성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오히려 아까 백승아 위원님 등등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한테 이런 검은 유혹의 손을 뻗친 그런 사교육 학원들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 출제의 출처원이 출제한 교사로 밝혀지면 그 학원 진짜 망할 정도로 국세청이 세무조사

를 하든지 정말 가장 중요한 영업을 6개월 동안 못 하게 한다든지 아래 버리면 이거 누가 사겠어요? 그렇게 해서 보호하는 게 낫지 이것을 교사의 3년 이렇게 잡아 버리는……

○소위원장 문정복 별칙은 좀 조정해 볼게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 말씀은 아까 제가 직접적 제도는 아직은 논의 안 됐다 그것은 형법상의 조치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간접적인 처벌 효과는 부적정한 행위를 한 것에 따른, 제가 뭐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수단들은 아마 연루돼 있으면 처벌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의결하기 전에 좀 정리를 할게요.

이 22항과 관련해서 지금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64조(별칙)과 관련해서 별칙이 좀 과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대략 징역 1년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정리를 하면 괜찮을까요, 위원님들? 많다고 얘기해 주신 위원님들?

○교육부차관 오석환 위원님 논의하시는 거고요. 논의해 주시면 저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6페이지에 보면 과세정보 제공요청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서 34조 13항에 ‘국세청장은 12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것이 강제조항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선생님들이 출제위원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위의 12항의 1호 ‘납세자 인적사항’과 ‘사용목적’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놔두고, 13항의 ‘국세청장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이 강제조항만 삭제를 하면 어떨까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위원장님, 사실 이것은 행정적으로 국세청장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니까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국세청장이 관계기관의 장들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지금까지 잘 협조를 안 해 주는데 법률적으로 협조를 해 줘 가지고 실효성 있게 사후적으로 보장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남겨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그래요? 이것을 남겨 두고?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면 전체 이것 삭제하자는 의견이신데……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러니까 좀 과잉이라고 보시는 건데 그것은 모든 면에서 모든 분들한테 모든 과세정보를 다 요청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시는 건데 제도적으로만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인재선발제도과장 임소희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12항에도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작정 다 개인정보 수집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알겠습니다.

그러면 64조의 별칙만 1년과 1000만 원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휴식을 요청합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휴식이요? 5시까지만 하고 휴식하시지요.

○조정훈 위원 5시에 끝내지요, 그러면.

○소위원장 문정복 잠깐만요.

의사일정 제20항부터 22항까지 3건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훈 위원 휴식에 대한 의사결정을 좀 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문정복 5시에 하시고요. 잠깐 하고 저녁 먹지 말고 한 7시 정도까지 하고 끝내는 걸로.

○조정훈 위원 원래 6시까지였습니다, 저희.

○소위원장 문정복 누가 그래?

○조정훈 위원 아니, 여야가 합의했다며.

○소위원장 문정복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조정훈 위원 저희 다 저녁 일정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그러시면 안 되고요, 위원장님. 진짜 6시까지 하기로 해서……

○소위원장 문정복 누가, 언제? 최소 6시.

○고민정 위원 그러면 10분 쉬고 6시까지 하는 걸로?

○조정훈 위원 10분 쉬고, 10분만 딱 쉬고.

○소위원장 문정복 지금 10분 쉬고 6시까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뭘 10분을 쉬어야, 20분을 쉬지 그러면.

그러면 잠깐 정회하고 5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지요.

(16시39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문정복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심사 들어가기 전에 의사일정 1항에 대해 수정한 부분 먼저 의결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는 동안에 23항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3항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3항 심사자료 제1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용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등 폐교재산의 무상대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2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최근 10년간 폐교현황은 368개교이며 시·도별 폐교재산 현황은 폐교 학교 수는 3955개교로 2609개교 매각 완료, 1346개교 보유 중, 979개교 대부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352개,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236개입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교육 취약계층의 원활한 교육 지원을 위해 폐교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3쪽에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4쪽에는 부칙이 있으며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으며 적용례에서 폐교 재산 대부에 관한 규정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례를 둘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이견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법안이라서 토론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정성국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없지요?

○**정성국 위원** 예.

○**소위원장 문정복** 알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 다 받으셨지요?

1항과 관련한 수정 의견, 아까 민주당 위원님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명시화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토론을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하는 것이 법률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전문위원님의 의견도 있으셔서 저희가 수정의견으로, 어찌 되었든 예산을 지원하는 게 주 목표라고 하니 경비의 지원으로 해서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조정훈 위원** 질문 있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말씀하시지요.

○**조정훈 위원** 지금 지방재정교부금을 삭제하신 것 같은데, 제가 받았던 안에서 지방재정

교부금법을 삭제하셨는데 그건 나중에 일반 조항으로 놓는다고 치고 여기 '(제2조제1호 다목의 학교에 설치하거나 설치된 학교복합시설은 제외한다)'……

○소위원장 문정복 이건 대학교.

○교육부차관 오석환 이건 대학입니다.

○조정훈 위원 대학에 설치된 학교복합시설은 제외한다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제외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게 교육부장관이 지원하는 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고 일반 재원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면 굳이 대학에 설치된 학교복합시설을 제외할 필요가 있습니까?

○소위원장 문정복 그런 논의를 할 수 있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이 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었기 때문에 대학을 배제했었는데요. 그렇지 않고라면……

○소위원장 문정복 그럼 괄호를 빼도 상관없겠네요?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예.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위원님들, 괄호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서지영 위원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법안의 취지는 학교복합시설 지원하는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하기로 했는데 주체를 교육부장관으로 유지함으로써 그 재원은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지원하는 게 되는 겁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국고, 지방비를 다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이 괄호가 삭제되면 사립대학에도 지원 가능해지는 거 아닌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교육부장관이……

○소위원장 문정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대학은 아예 못 지원하는 거고요.

○조정훈 위원 법적으로……

○소위원장 문정복 예, 일반경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정을호 위원님.

○정을호 위원 오전에 이야기했듯이 대통령령 마련 시 국회와 협의 거치는 건 확인되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거는 저희가 이거 관련된 사항에 어떻게 할 거고 어떤 기준으로 정할 건지는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훈 위원 괄호 제외지요?

○소위원장 문정복 예, 괄호 제외.

다음은 의사일정 24항부터 26항까지 고민정 의원, 문정복 의원, 서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강대훈** 심사자료 1쪽입니다.

3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먼저 고민정·문정복 의원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면서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가 아닌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서지영 의원안은 기존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입니다—에 있는 AI 디지털교과서의 정의가 포함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2건의 개정안입니다. 고민정·문정복 의원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이를 도서와 전자책에 한정하고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디지털교과서는 서책형 교과서를 전자적 매체의 형태로 제공하던 것을 전자책으로 명명하면서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포함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AI 디지털교과서, AIDT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정복 의원안은 고민정 의원안에 추가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이게 AIDT입니다—이것을 전자책으로 보지 않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AIDT는 교육자료로 명확히 하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한 게 차이점입니다.

검토의견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작년 10월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AIDT가 교과용 도서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의회유보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두 안에 따르면 AI 디지털교과서는 의무 챕터이 아니고 학교장이 판단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 교육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AI 디지털교과서 구입이나 구독에 드는 비용은 무상교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환경과 교육적 필요에 맞는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재정이나 인프라 여건에 따라 지역 및 학교별 AIDT 도입 여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교육 격차나 학습 격차가 우려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체계적인 측면에서 고민정·문정복 의원안에 ‘교과용 도서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자료 중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것을 말한다’고 해서 제29조의2의 교육자료와 구분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AI 디지털교과서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르면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 모두 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지영 의원안은 의회유보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관한 대통령령의 규정을 상향 입법해서 이 관련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AIDT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될 것입니다.

4쪽입니다.

교육부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교과용 도서와 학습 자료에 관해서 저작권과의 충돌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교과용 도서 그리고 AIDT, 교육감이 정한 자료 모두가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포함되기 때문에 각 정의 규정 간에 상호 배타적으로 규율될 수 있도록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29조 1항의 교육자료와 29조의2 1항의 교육자료가 용어가 같기 때문에 개념 간에 충돌이 되어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5쪽입니다.

시·도교육청 의견입니다. 부산 제주 충남 충북 대구 경기 서울 전북에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6쪽입니다.

한국교과서협회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7쪽·8쪽·9쪽은 그 세 개정안의 조문대비표입니다.

10쪽 2번, 부칙입니다.

고민정·문정복 의원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중 개정안에 따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것은 교과용 도서로 보지 아니한다고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자법 등 다른 법률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안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서지영 의원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부칙을 두고 있습니다.

고민정·문정복 의원안 부칙 제2조는 현재 검정 과정에 있는 AIDT에 한해 본칙의 규정만으로는 그 법적 지위에 논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개발 업체들은 2025년부터 AIDT 도입하겠다는 교육부의 구체적 발표를 토대로 개발을 시작해서 상당한 자본을 투입했기 때문에 개정안의 부칙 조항에 따라 신뢰 보호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육부나 한국교과서협회는 부칙에 관해, 경과조치에 관해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11쪽은 조문대비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9조에 대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는 고민정 의원님 안, 문정복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신중검토고요. 서지영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수용입니다.

현행 교과용 도서 규정상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범위를 상향 입법하는 취지에서 서지영 의원님 안은 동의하지만 고민정·문정복 의원님 안의 수용은 하기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니다.

먼저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97년 구 교육법 개정에 따라서 후속 개정된 교과용 도서 규정 개정 사유를 보면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인쇄물에 한하지 않고 학교교육에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개정안에 따라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종전의 서책형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간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확대해 온 취지와 부합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AI 디지털교과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지닌 가운데 개발, 검증, 교원연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많은 준비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변동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이 우려됩니다.

세 번째,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즉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할 시 교육 격차나 학습 격차 등이 우려됩니다.

국가는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민 누구에게나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맞춰 지역 간 학교 간 격차 없이 AI 디지털교과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과서의 형태로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할 경우에는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처럼 지역 간·학교 간 사용 편차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학생에게 부담이 증가되어 학생 간 교육격차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네 번째, 교육자료일 경우에 질 관리 곤란 및 비용 상승 우려가 예상됩니다.

교육자료는 교과서 검정 절차 등을 거치지 않으므로 적절한 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저작권법상 교과용 도서에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 다양한 저작물 활용이 제한되고 저작물 사용료가 대폭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교과서 이외의 참고서를 발행해서 활용하고 있을 때 생기는 참고서의 고비용화 그리고 사교육의 증가 문제로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 맞춤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AI 디지털교과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혁신 수요가 있는 가운데 공교육에서 이를 흡수하지 못하면 사교육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수의 교육감께서도 25년 적용 AIDT가 현재 진행 중이고 교육격차, 질 관리 등의 차원에서 법령 개정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난 10월 16일 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25년 AI 디지털교과서는 계획대로 도입하고 26년 이후의 적용 과정을 제안해 주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29조의2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조의2는 교육자료 규정과 관련돼 있는 신설 규정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과 동일하게 저희도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때 법률 내 조항 간의 적용 범위가 상이해서 혼란이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29조의2는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대상이지만, 현재 제32조제1항에서는 모든 교육자료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범위가 불명확합니다. 개정안 통과로 모든 교육자료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활용하도록 할 경우에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자료를 활용하고 있어 정상적인 수업

진행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다음은 부칙 경과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과 동일하게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현행 법령에 따라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에 따라 교과서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교육자료로 규정할 경우 검정심사를 통과한 개발사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금 현재 AIDT의 검정 절차를 마치고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 사용을 준비하고 있는 학교현장에서의 우려도 심각하게 걱정이 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위원님.

○**고민정 위원**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제가 차관님 것을 반박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많네요, 한두 개만 좀 지적할 만한 걸 주시면 좋은데.

일단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법적 지위를 변동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변칙적으로 변동시킨 거를 원복시키는 겁니다. 언제부터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였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시행령을 임의로 그렇게 해석하셔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AIDT에 교과서의 지위를 주신 거지요. 그런데 AIDT에 대한 교과서 지위를 주려면 그만큼 많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결과 도출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냥 다 귀 닫고 지금까지 연장을 해오셨지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법적 지위가 아닙니다. 없었던 지위를 만드셨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해도 해도 말로 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 법으로 규정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 간 편차가 생길 수 있다, 균등한 기회를 줘야 되는데 지역별로 격차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실증적 증거나 연구가 있습니까? 저희가 AIDT를 무작정 반대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시범지역을 선정하든 시범학교를 선정하든 해서 충분하게 실증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그것을 써야 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너무 많고 또 우리나라가 최초로 한다고 주장하시며 자랑하시지만 오히려 해외에서는 왜 아무도 이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가, 혹은 했다가 왜 다 취소하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물건을 하나 만들더라도 반드시 샘플을 만들어서 이게 유해한지 무해한지 효과성은 얼마나 되는지를 해 보고 나서 하는 건데 하물며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 그것도 학생들한테 쓰는 건데 이렇게 무대책으로 밀고 나가는 건 너무 폭력적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교육 시장의 선진 기술들을 이제는 공교육이 흡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건 교육부차관님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공교육이 잘 끌어가야지요. 사교육 시장을 다 흡수해 버릴 거면 그러면 뒷하더 공교육이 있습니까?

사실 어떤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이런 얘기 해요, 수학 문제 더 잘 풀어 주는 사람

은 학교 선생님보다 학원 선생님이 더 잘 풀어 준다고. 우리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 다 학원 선생님으로 교체해’ 이렇게 합니까? 아니지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을 때마다 공교육은 그러면 무엇이 되어야 하나, 거기에 부족한 것은 사교육이 되어야 될 텐데 이게 너무 과대하게 커지지 않게끔 모든 정부들이 노력을 해 왔던 건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사교육 시장의 것을 공교육에 흡수시키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에 저는 좀 충격을 받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재산권 침해를 말씀하셨어요. 이미 검정심사를 통과한 개발사들이 교과서인 줄 알고 다 개발했는데 이제 와서 교과서의 지위를 원복해 버리면 침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대법원 판례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2015년에 그 유사한 일이 있었어요. 출판사가 교과서 개발비 등을 손해 봤다고 하면서 판결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판결은 패소였습니다.

그리고 소급입법 금지 원칙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또한, 사실은 국회인 저희가 이런 얘기하는 게 조금 우습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허용되는 게 맞기는 하지만 현재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현재 판결로 제가 확인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런 판례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게 하려고 저희가 계속해서 속도 조절을 말씀드렸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하자라고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이거는 제2의 의료대란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차관님께서는 교과서의 지위를, AIDT에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반박하시면서 반대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차관님의 의견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다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다 하셨습니까?

정성국 위원님 그다음에 백승아 위원님 이렇게 토론하겠습니다.

○정성국 위원 대통령을 뽑고 정부가 구성되는 이유는 행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저는 차관님하고 고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논쟁에 끼어들 생각보다는…… 정부 여당이 있는 것, 행정부가 있는 것 그리고 교육부가 있다는 것은요 교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들이 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AI 디지털교과서가 우려가 된다는 부분이나 걱정하는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모든 정책은 늘봄학교 정책이든 유보통합이든 다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그 정책을 추진하고 평가를 받는 것은 정부의 권한 5년 안에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교육개혁을 천명하셨고 그 천명하신 교육 개혁 안에서 AI 디지털교과서가 들어 있는 것은 그 디지털교과서가 실패했을 때 그 책임은 정부가 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고 출발할 때 이런 우려점들을 수용, 받아들이면서 저희도 그랬잖아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직접 가서 보자고 저도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직접 가서 본 사람이 사실 거의 없어요,

위원님들 중에서도 저도 우리 여야 위원님들 같이 가서 보자고 제안을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우려하고 걱정하고 지적하는 건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정말로 우리 국회의원들, 여야가 다 같이 가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말 심각해서 도저히 이거는 여야 위원님들이 정말 교육부가 재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싶은 판단이 났을 때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사실 잘 모르는 상황, 우려가 있다는 건 알지만 정확하게 뭐가 문제고 교과서가 어떻게 개발됐고 정확하게 파악이 된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고 계획 세워 왔던 교과서에 관련된 추진 사항들을 지금 이거를 교과서로 인정하지 않고 교육자료 형태로 해 버리게 되면, 파생하는 이 부분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에 있어서 디지털교과서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민주당 맨날 그러시잖아요, 대통령 지지율 이십몇 프로밖에 안 나오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그래도 그 5년 안에는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께 준 거고요 정부에 준 것입니다. 그러면 시행되는 과정에서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국정감사도 있고 있지만 이 제도 자체가 출발하는 데 있어서 그 근본을 흔들어 버리면 정부가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 조차 없잖아요, 잘하든 잘못하든 그런 것도. 잘못하는 것은 나중에 평가를 받아야지요, 잘못했다고. 그런데 지금 이거는요 AI 디지털교과서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11월 말에 같이 가자고요, 저희하고 같이. 이제 다가오는데 준비되는 대로 우리가 한번…… 교육부장관께서 그때 여야 위원님들 한번 초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같이 가서 보고 우리가 정말 정쟁을 떠나서 교육이니까, 저도 정말 이 교과서가 문제가 있다면 신랄하게 비판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근간은 인정해 주고 ‘한번 해 봐라, 책임은 묻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야당의 역할이고 국회의 역할이지 이것을 출발부터 이렇게 근간을 흔들어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 말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백승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백승아 위원** 내년 3월에 도입되는데 아직 실체도 없는데 종교도 아니고 뭘 믿고 교과서로 등록을 해 줍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는 건 종교지요. 저희는 국회의원이지 신도가 아닙니다.

현재 AIDT 교과서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차관님?

○**교육부차관 오석환** 교과용도서 규정, 대통령령입니다.

○**백승아 위원** 그렇지요. 정확히 어떤 규정입니까?

○**교육부교육콘텐츠정책과장 고영훈**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보면 교과서의 정의가 있고 작년에 개정을 하면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저희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백승아 위원**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제5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과용도서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백승아 위원** 그래서 어디까지나 장관의 의지로, 장관 혼자만의 의지로 별다른 사회적 합의나 학생, 학부모들과 교사들과의 논의도 없이 진행됐습니다. 도입됐고요. 이것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에 매우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교과서를 이렇게 교육부장관 혼자의 의지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 합의도 전혀 없었고 아직 선행 연구도 없고 교육적 효과도 입증을 못 했어요. 내년 3월에 시작인데 지금 좀 있으면 12월이지요. 여태 AI 기능이 들어 있는, AI 구경도 못 했습니다. 제대로 검증도 못 했는데 어떻게 AIDT에 법적으로 교과서 지위를 줍니까? 교과서 지위를 주면 내년에 1+1로 서책이랑 AIDT 다 구입해야 되는데 무슨 예산 낭비입니까? 교육자료로 일단 해 보고 실물 보고 좋다, 써도 되겠다 입증이 되면 그때 얼마든지 개정안 발의해서 교과서로 지위를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보이지도 않는, 보지도 못한 교과서를 가지고 지금 벌써 몇 개월째 내내 이렇게 활가활 부해야 되는지 저는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AIDT, 막대한 교육재정 손실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라서 내년 교육부 국립학교 교과서 지원 예산 보니까 70.7%가 증액이 됐거든요. 17개 교육청도 비슷하게 예산 증가한다고 보았을 때 내년 한 해에만 교과서 구입에 3921억 원 들어 가요. 이거 국회입법조사처는 책당 평균 월 구독료 5000원으로 가정했을 때 4년 뒤에 AIDT 구독료만 매년 1조 7343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합니다. 아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지금 AIDT 구경도 못 했는데요. 이런 도입 및 교과서 지위 부여 지금이라도 재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기가 막힌 거는요 학교 한번 가 보셨습니까? 학교현장은요 아직 AIDT 도입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디바이스 보급 완료 안 됐고요 25.5%만 완료됐고요 인터넷망 개선 필요한 학교도 26.6%입니다. 학교 인프라 관리 위한 인력 배치도 안 됐고요 교원의 업무 경감 위해 교원의 추가 인력 학교에 배정되어 있는 경우는 53.1%에 불과합니다, 인프라 관리에 대해서. 내년 3월에 가르쳐야 되는 교과서가 아직도 안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현장 교사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청원까지 하셨지요, 이거 재고하라고. 매몰비용이 점점 커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AIDT 전면 금지해서 아예 그냥 다 멈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자료로도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정성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왕 정부에서 시작했고 이미 이만큼까지 왔으니 그러면 교과용 자료로, 교육자료로 지위를 부여하고 실물을 한번 보자, 그리고 학교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고 정말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교과서로 지정하면 됩니다. 뭐가 이렇게 급합니까? 목적이 있습니까? 왜 달리는 경주마처럼 이렇게 AIDT 하나만 보고 달려가는 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쌈짓돈도 아니고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지.

○**교육부차관 오석환** AIDT 하나만 보고 달려온 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AIDT 와 관련돼 있는 거는, 사실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은 2022 교육과정 개정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거를 교육과정에 반영을 해서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만들었고요. 교육과정을 만들고 난 다음에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으로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AIDT를 소프트웨어형 교과서의 활용 방법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던 거고요.

○**백승아 위원** 잠시만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것도 작년에 계획을 해 가지고 교과용도서에 반영했던 겁니다.

○**백승아 위원** 잠시만요. 기존에 다 했던 말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교육용 자료로 들어가면 안 되냐고요. 왜 꼭 교과서여야 되냐고요, 지금 실물도 안 나왔는데. 지금 실물이 나와서 보여 줬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안 해요. 안 보여 줬잖아요. 아직도 안 만들어졌잖아요, 내년 3월에 학교에서 써야 되는데.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거는 지금 현재 검정 과정에 있는 거는 알고 계시고요. 11월 29일 날 검정 발표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하기 이전 단계에서……

○**백승아 위원** 지금 이거 통과시키면 내년 3월에 무조건 교과서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1년 치는 구독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현장은요 잘 모르시겠지만요 한 번 들어오면 잘 안 나가요. 도입부터 신중해야 돼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아까 말씀 주셨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백승아 위원** 사회적 논의 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이 이렇게 많이 반대하고 청원소위까지 올렸는데 아무런 공청회도 없었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무슨 사회적 논의가 됐습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 과정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 이후에 AIDT를 개발하는 것은 작년에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를 하면서 교과용도서에 대한 내용을 했던 것이고 금년에 갑자기 만든 건 아닌 거고요.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면 교육과정이 먼저 발표가 되고 교육과정에 따라서 그거를 뒷받침하는 교과서에 대한 구분 고시가 작년에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라 서책형 교과서가 개발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AIDT도 지금 개발해 가지고 검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거는 지속적으로 그런 단계가 있었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거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거랑 저희랑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새로운 교과서가 현장에 들어가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활용될 것인지에 관한 논의인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실 수업의 변화를 위한 노력들은, 사실 디지털교과서만을 가지고 안 한다는 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여야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를 해 주셔서 금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연수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백승아 위원** 차관님, 저는 작년에 여기 없었고요. 자꾸 우리 정부에서 했다, 누가 해줬다고 말씀하시는군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아니, 그것은 여야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해 주셨던 일이고 그것은……

○**백승아 위원** 저는 충분히 우려점을 표현했고요. 사회적 합의·논의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교육용 자료기 때문에 질이 낮다면 그러면 지금 제공되고 있는 디지털교과서는 다 질 낮은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교육용 자료여도 얼마든지 정성이 있으면

질 높은 교과서, 교육용 자료 만들 수 있고요. 제 입장은 교육용 자료로 지위 부여해서 실물 보고 그때 가서 교과서로 등록해도, 지위 바꿔도 전혀 문제됨이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강경숙 위원님이 먼저예요.

○**강경숙 위원** 고맙습니다.

백승아 위원님이 제가 드리려는 말씀을 많이 하긴 했는데 거기다 조금만 저도 더……

사실 지난번에 5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유보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있었어요. 교육부의 입장과 후속조치가 별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 분명하고요. 해외에서 이렇게 도입된 사례가 실제로 없습니다. 세계 최초라는 거 굉장히 자랑하셨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정책처에서 나온 자료를 보더라도 아까 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독료가 사실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교육감님들도 그 구독료에 대한 것들이 예산이 어떻게 책정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제가 현장을 들여다 보니까, 제가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은 대시보드 같은 것들을, 그 보드를 가지고 학생들이 하는 것들을 컨트롤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디지털코드 같은 거 생성코드들도 이게 사설기관의 그런 업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비교육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다라는 걸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직접 보여 드렸거든요.

사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이런 대상이 된다라는 것도 그렇고 이게 서책보다는 굉장히 많은 교육 자원의 투입을 수반할 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전망이 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교과용 도서라는 것으로 이렇게 딱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이 저도 용인하기가 어렵고 교육자료로 규정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조정훈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조정훈입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반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 법안을 특히 제가 존경하는 고민정 의원님과 문정복 의원님이 내셔서 조금 거시기한데 그래도 해야 될 얘기는 해야 되니까……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입장이 다른 게 22대 국회 교육위 개원하고 계속 있었던 일이니까 오늘 나왔던 내용이 특별할 건 없습니다만 민주당 야당에서, 강경숙 위원님도 계시니까, 반대하는 이유의 그 목소리도 충분히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그 반대하는 방법으로서 이 법안, 특히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려는 이 방법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는 게 객관적인 제 분석입니다. 마치 발의하신 의원님 중에 한 분인 고민정 의원님께서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교육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으신다고 하셨고 그 과정에서 몇몇 위원들이 왜 이렇게 빨리 그리고 확신 없이 큰 돈을 투자해서 이런 일을 하냐라는 질문이셨지 교과서에 AI와 디지털 교육을 도입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전제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법안을 만드셨을까 저희가 고민했을 때 얼마 전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현재에서 교육의, 교과서 제도의 법률주의가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한다고 제시해서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저도 법률가가

아니라 깊이 공부는 못 했지만 그래도 이걸 한번 다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실은 정반대 더라고요. 그 얘기는 9명 중의 1명의 재판관이 한 소수의견이었고 다수 의견은 교과서 법률주의가 교육의 법률주의의 하부 개념으로서 당연히 수용이 됩니다.

지금 현재 교과서로 정한 건 아시는 대로 교육법 157조 ‘교과용도서의 저작·검정·발행·공급 및 가격 사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금 엄연히 존재하는 법을, 교육부가 특정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만드는 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위 자체가 불법이고 위법이다라고 주장할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교육법 157조를 따랐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했다고 얘기할 근거는 없고 말씀하신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얘기한 그 문제 제기도 실은 소수의 의견을 소개한 것뿐이지 소개하지 않은 8명의 현법재판관은 이것이 맞다, 합헌이다라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이게 만약에 현실이 되면,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로 규정할 경우 저는 엄청난 교육격차, 학습격차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왜 그렇게 생각하나? 이중에 어떤 학교는, 어떤 지역은 쓰고 안 쓰느냐가 아니라 가격 자체가 엄청나게 폭등할 것입니다.

이것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개발하는 사람들은, 제가 개발하는 사람들을 두둔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게 교과서가 되니까, 교과서로 인정이 되면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쓰겠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 매출이 예상이 됐을 텐데 그것이 깨지는 거고요.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건 저작권법입니다. 저작권법 제25조에 의하면 교과용도서, 즉 교과서는 저작비를 거의 내지 않고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과서기 때문에 좀 양보하라는 공공의 목적 때문에 인정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자료가 되면 저작권법 25조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몇몇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일단 교육자료로 해 놓고 시험해 보자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저작료를 내고 그러면 이게 구독료가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지금도 비싸다고 하시는데 10배, 100배가 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옵니다. 또는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은 자료만 쓰다 보면 정말 허접한 교육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AI 매체의 디지털교과서가, 여러분이 교과서를 싫어하니까, 이 자료가 교과서의 자격을 상실하면 비용이 폭등합니다. 비용이 폭등하면 당연히 정말 일부 내 돈 내고라도 이걸 쓰겠다는 분들만 이것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실험 자체가 안 되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부칙에 이걸 소급 적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고민정 위원님이 아니라 고도 말씀하셨지만 헌법상에 있는 신뢰 보호의 원칙과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오후지요, 상임위 들어오기 전에 한국교과서협회 사단법인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와서 저에게 익숙해진 교과서 업체 ‘해냄’, 역사교과서에서 나온 해냄 다 아시지요? 이거 그 해냄도 반대하세요. 해냄 교과서도 이리면 안 된다고 반대하십니다. 차라리 늦게 천천히 가더라도 교과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건 아니다. 교문사, 교학사, 지학사, 천재교육, 한 19개 단체가 이건 아니라고 하세요, 이분들은. 이게 여야가 없는 겁니다, 좌우가 없는 거고.

이렇게 교육부가 잘못했다라고 주장하시는 건 충분히 야당으로서 하실 수 있지만 지금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진행되어 온 상태를 다시 다 무력화하는, 이렇게 보면 피해는 교육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업체들 그리고 앞으로 교과서의 지위를 상실하면서 만들어 낼 엄청난 비용들 이게 너무나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면, 저는 국정감사 때 저희가 논의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위원장님과 함께 28일인가요 30일 날 교과서가 나오면 여야, 국민의힘 위원 아니라 여야 모두에게 한번 공개하자 그리고 이게 교과서로서 쓸 수 있는지 보자. 저 지금 이거 기다리고 있거든요, 일부러 저 먼저 안 본다고 해서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지금 교과 과목이 3개지 않습니까. 여기서 3개 중의 하나, 2개는 도저히 못 받겠다라고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저부터 천천히 가자라고 주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니까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논의한 방식이, 이미 합의가 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교과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저희는 동의하기 어려울 텐데 만약에 일방적으로 가시면 이게 또 본회의 가고 막 복잡해지는 상황이 벌어져서, 오히려 저희가 얘기했던 여야 합의로 정말 교육에 대한 입장만 생각해서 교과서를 전문가적 입장만 보고 검토하자는 그런 것까지도 지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상황이 되게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거를 급하게 통과시킬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소급을 넣으셨으니까 소급 법안까지 변경하실 생각은 없으시잖아요. 어차피 넣으셨으니까 한 주만 기다려서 교과서의 내용이 정말로 어떤지 한번 보시고 일부 수정 또는 수정해서 올해 아니면 25년에 교과서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게 아닌지 판단을 하는 게 맞지 교육자료로 먼저 해 보고 교과서로 올리든지 말든지 하자라는 건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실험 자체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김민전 위원님 그다음에 김준혁 위원님, 고민정 위원님 이렇게 가겠습니다.

○**김민전 위원** 김민전입니다.

사실 제가 교육위에 와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교육부가 어떤 사항을 설명할 때, 어떤 사업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 격차 해소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수정부 맞나 하는 생각이 가끔씩, 보수정부가 격차 해소를 이렇게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끔씩 했습니다. 그런데 또 굉장히 아이러니는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는 돈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이게 돈을 굉장히 아껴 쓰는 진보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할 때가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쓸 데 써야지요.

○**김민전 위원** 사실 제가 AIDT의 프로토타입을 한번 봤고요. 한번 보고 나서 조금 정리된 것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백승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교육의 기술을 공교육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백승아 위원** 저 그런 말 안 했어요.

○**김민전 위원** 이미 저희 아이들이 중학교 때 다닐 때도 좀 비싼 학원들은 다 이런 기술 특히 영어학원들의 경우에는 사용들을 하고 있었던 걸로, 그건 상당히 오래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가져오느냐

이 얘기가 저는 전혀 틀린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결국 사교육을 풍부하게 받을 수 있는 학생보다는 그렇지 못한 학생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사교육을 풍부히 받을 수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밖에 나가서도 온갖 기술에 의한 것들의 혜택을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학습수준이 낮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공부를 따라갈 수 없는 학생들 그래서 흥미를 느낄 수 없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제가 프로토타입을 보고 나서 느낀 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교과서로 하느냐 교육자료로 하느냐, 저는 사실 프로토타입을 봤을 때 일종의 엑서사이즈 북(exercise book)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육자료라고 하는 게 프로토타입 그 자체로만 보면 더 맞을 수 있다.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의 효과를 본다라고 하면 교과서로 했을 경우, 교육자료로 규정했을 경우, 결국 교육자료로 규정한다라고 하면 역시 돈 있는 학교 또 부자 지역의 학교는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의 그렇지 못한 학교는 사용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형식 자체는 조금 더 솔직하게 교육자료라는 거에 가까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효능을 본다라고 하면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이용 가능하게 한다, 특히 지역의 빈부 격차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교과서로 규정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조정훈 간사님이 주관을 하시는 인문사회 융합인재교육에 대한 포럼에 갔었는데요. 거기서도 인문사회라고 하는 게 결국 어떻게 디지털과 잘 융합하느냐 이것이 인문사회의 나갈 방향 중의 하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문해력이라고 하는 게, 특히 요즘 디지털 시대의 문해력이라고 하는 게 그냥 디지털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책만 본다라고 해서 문해력이 높아지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젊은, 어린 세대들은 태어나면 스마트폰 그냥 가지고 놀고 할 줄 알아요. 그러나 저희가 스마트폰이 처음에 등장할 때는 백화점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대가 이미 달라진 세대인데 과거의 책만 교과서고 이것만을 봐야 문해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옳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인 이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교육의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동시에 했고요.

그래서 어느 하나가 맞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제가 계속 주장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조정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한 주만 기다려서 전체 작품을 한번 보시고 같이 결정을 좀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다음 김준혁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혁 위원 우리 위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진정성 있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똑같이 교육위원이니까. 이것이 교과서로 채택되느냐 교육자료로 채택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AI 디지털 교육을 통해서 과연 올바른 교육이 될 것이냐 혹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저도 지금 굉장히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되고 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처음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제가 법안을 준비해 놨었어요. 서지영 의원님 법안과 거의 동일합니다, 내가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서지영 위원 공동발의하겠습니다.

○김준혁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왜 그것을 철회를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인데 AI 디지털교과서의 실체를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난번에 역사교과서 논쟁이 좀 있었는데 그런데 하여튼 그 논쟁을 떠나서 교과서가 나왔던 시점이 8월이었잖아요. 왜 8월에 교과서가 나오느냐? 최소한 학기는 선생님들이 그다음에 도입될 교과서를 익숙하게 공부하고 해야 될 어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과서가 그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AI 디지털교과서를 내년 초에 쓴다고 하는데 11월 29일 날 나온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 이게 되게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교육적 측면으로만 보자면 이게 지금 늦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계속 했던 이야기가 ‘좋아. 11월 29일에 나올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더 큰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정도 유보를 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지금 많은 연수를 받기는 했지만 이 연수가 실제 교과서를 갖고 연수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가령 어떤 A라는 교과서를 서책형으로 썼어. 그러면 이 서책형 A 출판사 교과서를 썼는데 이 서책형 교과서를 낸 출판사가 AI 디지털교과서 업체에 안 됐어요. 안 돼서 어차피 그러면 B 출판사에서 나온 디지털교과서를 써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선생님 입장에서는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혼동이 생긴다는 거지요. A 서책형 출판사가 디지털교과서를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안 될 가능성도 매우 많다는 거지요. 왜냐? 아직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법안 발의를 서지영 의원님하고 진짜 거의 95% 같은 내용으로 만들었다가 접은 이유는 이것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1년 유보해서 우리가 교육자료를 통해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야 이것을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리고 자꾸 돈 문제 말씀하시는데 원래 이 AI 디지털교과서 교육부가 다 무상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학교가 다, 학부모들이 돈 내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습니다.

○김준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부모들이 돈 주고 사는 문제는 아닌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어쨌든 이것을 제안한 출판사들의 타격이 클 거라고 하는 거지요. 그건 인정할 수 있지요. 그건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교육을 위해서 개발을 했는데 그 부분이 채택되면…… 물론 채택되지 않은 출판사는 망하는 거야. 그건 분명하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급입법인데 우리가 이 소급입법과 관련해서, 아까 고민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급입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공익이에요, 공익. 그러니까 공익이 우선하는 겁니다. 이 법이 적용됐지만 만약에 디지털교과서를 통해서 혹시 아이들이 교육적 측면에서 좀 불안하고 학부모님들도 다 불안해 하고 이 불안한 과정에서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얻는 이 문제가 오히려 소급입법을 통해서 그 디지털교과서를 무조건 교과서로 책정해서 업체가 살아나게 하는 이것보다 우선한다는 것이 사실 법의 원래 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을 떠나서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정성국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 관련해서 진짜 만약 1년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6개월, 최소 한 학기 정도는 이것을 정말 제대로 교육되고 있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하는 것은 정말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적 측면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죄악은 아니지만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그런 교육위원이 되고 싶지는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고민정 위원님 토론하시고 정을호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왜 이런 법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저도 착잡합니다. 지금까지 진보 정부도 보수 정부도 교과서를 법적 수준으로까지 올리지 않았지요. 왜 그랬을까요? 시행령을 고쳐서 이런 무리수를 둔 정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꼭 진보 정권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세상의 상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을 시행령으로 바꿔 버리셨어요. 그런데 그 시행령을 바꾼 것 또한……

제가 차관님께 여쭤볼게요.

교육부가 디지털교과서 검정 실시 공고했던 게 언제입니까? 23년 8월이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고민정 위원** 그런데 시행령 고친 거 언제예요? 23년 10월이에요. 공고 당시에는 교과서라는 지위를 갖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고도 하셨어요.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느냐는 겁니다. 시행령을 고친 것도 납득되지 않는데 심지어는 시행령이 고쳐지기 이전에 이미 교육부에서는 이것을 교과서로 해야 되겠다 마음먹고 공고를 두어 달 전에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하느냐? 왜 그러냐면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뭐에 대한? 의료대란에 대한. 저희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했고 많은 국민들이 대다수가 다 동의했습니다. 다만 숫자에 대한 차이가 있었지요. 그런데 초기부터 25년도 입학 정원의 숫자를 어느 만큼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했으면 지금의 이런 의료대란 파국은 없었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봤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부에서 그냥 하는 대로 이대로 둬 버린다? 지금 출판사들에서는 이미 개발을 많이 했지요. 그 돈은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개발한 곳들 가운데 채택된 곳은 몇 개 없어요. 나머지들은 어떡할 겁니까? 현장에서는 영어·수학 교과서 이미 다 채택했어요. 그런데 AI로 채택된 출판사하고 일치하지 않는 곳이 거의 상당수일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교육부차관 오석환** 혹시 그 부분 잠깐 말씀……

죄송합니다.

○고민정 위원 일단 얘기를 할게요.

○소위원장 문정복 아니, 질문 다 끝나고 답변하세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것 사실관계가 위낙……

○고민정 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AI,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선진 교육을 시킨다 하는 것에 반대하는 학부모도 학생도 위원도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검증이 되었는가, 우려되는 부분들은 얼마큼 불식시킬 것인가,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갖고 준비할 건가. 교육부는 혼자서 작년부터 해 왔으니 1년 이상 준비했다고 하시지요. 그러나 교육부에 계신 분들은 책상머리에서 하시는 분들이고 직접 그것을 실제로 교육을 하셔야 되는 선생님들이나 혹은 학생들이나 그것을 비판해야 될 저희들은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계속 교육부가 하라는 대로 지금 여기까지 끌려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에서 넘어가게 되면 또 돈이 더 많이 들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판단할 거기 때문에, 마치 의료대란처럼. 의료대란 문제도 초기부터 우리 민주당이 더 강하게 '2000명 절대로 안 됩니다. 차라리 500으로 합시다. 1000으로 합시다' 이렇게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파국으로 몰아가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학습효과가 있다 보니 이 AIDT도 어떻게 해서든 초기부터 바로 잡지 않으면 나중에는 겉잡을 수 없겠다 이 생각이 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정을호 위원님……

○고민정 위원 차관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다니……

○교육부차관 오석환 나머지는 계속 말씀 나누시는 사항들이라 그냥 사실관계 중에서 몇 가지, AIDT하고 서책 교과서는 일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서책 교과서는 기본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AIDT는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애초에 계획할 때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고민정 위원 차관님, 저도 프로토타입 봤거든요, 아까 김민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면 1단원에 대해서 해당되는 문제들이 AI 형식으로 계속 생성이 돼서 문제가 제출이 되잖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고민정 위원 그런데 교과서가 달라 버리는데 그게 어떻게 일치합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사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구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마다 그 내용들이나 문제들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문가들이라 너무 잘 아시는 문제들이니까. 그것을 전제로 해서 AIDT는 소프트웨어형의 교과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관계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소급입법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업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당연히 업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교과서의 지위를

작년부터 부여하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해 온 다양한 교원연수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개발, 거기에 따른 다양한 준비들을 동시에 이루고 그게 현재의 시행령이라는 제도가 법률보다 하위 단계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제도가 더 일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좀 말씀드립니다.

○**고민정 위원** 차관님,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11월 말에 AIDT가 실물이 나오는데 왜 이것을 1년 동안 정도의 시간을 두고 볼 수 없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러니까 그건 정확하게 일정으로 보시면 저희가 2025 교육과정이 첫 도입되는 시기가 내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을 중심으로 해서 교과서 검정이 돼서 시행하니까……

○**고민정 위원** 그러면 AIDT 개발을 1년 더 당겨서 빨리하셨어야지요.

○**서지영 위원** 정리 좀 하시지요, 정리 좀.

○**조정훈 위원** 6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것은 좀 어렵…… 상황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육과정이 적용이 돼야지 교과서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을 앞당겨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하고 저희가 딱 맞물려서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위원님들, 제가요 진행 과정 중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도록 시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과하다 싶으면 제가 조정을 할 테니 저한테 맡겨 주시고요.

지금 정을호 위원님 토론하실 거고 그다음 서지영 위원님, 백승아 위원님 이렇게까지 토론하실 겁니다.

○**정을호 위원** 저도 AIDT 졸속 도입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이야기를 해 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협의할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이 안 보인 것에 유감을 표하고요. 우선적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속도전을 감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거라고 예측 가능합니다. 이 부분 명약관화하고요.

그리고 최종 검정교과서가 29일에 나온다고 하던데 그러면 교사들도 이 실물을 보지 못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다음에 준비 상황도 석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이 부분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교육위원회 입장에서는 잘못된 정책은 처음부터, 매몰비용이 나중에 투자비용보다 더 적게 들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까 김준혁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시범기간, 시행기간을 두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졸속 도입하는 것은 교육위원으로서 도저히 찬성 할 수 없다는 부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다음 서지영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서지영 위원** 우리가 이번 국회가 개원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AI 교과서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죽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말씀도 많이 들었고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교육위 전체회의와 소위에서 쭉 나왔던 얘기를 들어 보면 지금까지는 교과서로 도입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신 적이 그다지 없었어요. AI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야기할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 예닐곱 가지 늘 지적을 해 오셨는데 이번에 갑자기 법안이 나오면서 이제는 교과서 도입 자체를 반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자료냐 교과서냐라는 것에 대한 의미와 장단점은 분명히, 제가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교육자료로 지정을 하자라는 법안은 차라리 그 법안 자체를 시행을 하지 않거나 통과를 거론하지 않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자료가 될 경우에는 검인정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지요. 그냥 엄청난 돈을 들여서 어디 문제집 하나 사 보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행정이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투입해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애쓰고 노력하고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교과서의 실체가 실물이 나오기 직전인데 지금 와서 교과서로 하지 말고 교육자료로 해서 교육청이 알아서 선택하도록 하자, 학교운영위가 선택하도록 하자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수 많은 국가의 역량, 교육역량을 그냥 다 물거품으로 만들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말 걱정하시는 것을 이해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한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가 속도에서 굉장히 뒤쳐진다고 생각하고 그게 더 걱정이 많이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대선 때 AI 윤석열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AI 벤처회사들을 제가 죽 접촉을 했었고 기술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거에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좀 충격받았습니다, 이 기술의 속도에 대해서.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한 이를 정도 저희가 작업을 했고 딥러닝 기간을 한 달을 거쳐 가지고 한 달 뒤에 발표를, 오픈을 했는데요. 지금은 그게 하루면 다 충분합니다. 한 달 동안 딥러닝했던 속도가 지금은 제가 AI 관계자들을 만나 보면 하루 이틀이면 그거 다 구현해 냅니다.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교육계를 이끌어 왔던 수많은 교육행정 그다음에 교육자들의 노력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 깔아 놓았던 우리의 IT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진짜 치열한 세계 경쟁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넉넉한 교육적 자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빨리빨리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저는 너무나 속도가 늦다고 생각하고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지금 상황을, 기술의 발전과 상황을 너무나 모르는 상태에서 토론하고 있다는 생각에 저는 굉장히 답답한 생각마저 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야당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은 굉장히 존중하고 공감하는 점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AIDT 자체를 반대하고자 하는 목적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 지난번에 우리가 국정감사할 때 참고인 두 분을 모셔 왔지요. 박명재 씨인가 한국콘진원 에듀테크 심사위원인가 평가위원이라고 했는데 그거 허위였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 장시간에 걸쳐서 AIDT 사업에 대해서 총체적인 무언가 음모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지요, 국감장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정치하는엄마들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또 장시간 동안 AIDT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펼쳤습니다. 그분 과거에, 제가 알기로 아마 정치하는엄마들은 과거에 진보당과 투표 연대를 맺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아마 그분인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반대하는 시위도 했었습니다. 정치적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분이 와서, AIDT에 대해서 어머니로서 물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격은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자격으로 우리 회의석에 참고인의 이력으로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예결위의 검토보고서 얘기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때 김진표 의장님의 하셔 가지고 AI 예산 투입해서, 물론 다른 위원님 결로 최종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 투입할 때 예결위 검토보고서에 AIDT 사업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예결위 보고서에 들어 있었습니다. 찬성의견은 국가미래연구원의 검토자료를 가져왔고 반대의견은 뭐였나? 야당 의원님의 토론회 자료 그다음에 AIDT 반대 청원에 대한 교육위의 검토보고 그다음에 입법조사처 자료를, 세 가지를 인용했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와 교육의 다양성 이런 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좀 열린 마음으로, 교육행정 당국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 왔었고 많은 인력들이 투입됐고 많은 국가의 에너지가 투입된 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가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교육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이미 이런 인프라는 훨씬 사적으로 더 많이 깔려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도 많고 저희 아이들 자라면서도 본 것 많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전국의 각지에서 어떤 아이들도 소외받지 않고 이런 새로운 교육의 형태를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히려 교육행정 당국과 교육자들에 의해서 관리가 되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도전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바로잡고 가면요 김진표 의장님 계실 때 마지막 예산에 예산부수법안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저희 21대 교육위원들은 전원 반대했습니다.

백승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제가 먼저 손 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문정복 아니요, 백승아 위원님이 먼저시고 강경숙 위원님.

○백승아 위원 교육 용어에 지식의 구조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의미를 만들어 내는 거지 AIDT를 일이 년 늦게 접한다고 우리나라 AI 기술이 크게 뒤떨어지게 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챗GPT나 AI를 활용해서 뭔가 창조적으로 만들어 낼 줄 아는 것 그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지 AI 교과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교육자 출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무책임한 건 정부입니다. 왜 이 지경까지 끌고 왔는지 모르겠고요. 내년 3월에 시작인데 왜 지금까지도 실물이 안 나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이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아까 차관님 말씀 중에 제가 궁금했던 게, 지금 교과서랑 AIDT가 세트가 아니란 말을 하셨잖아요. 서책형이랑 AIDT랑 따로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출판사가 동일하지 않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백승아 위원** 출판사가 동일하지 않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면 그 내용 구성은, 교육과정 내용 구성도 단원별로 내용이 다 다를 수가 있는 건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것은 전문가시니까요……

○**백승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세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제일 중요한 것은 서책형 교과서도 각자 우리 교육과정에 근간을 두고, 서책형 교과서를 개발할 때 서책형 교과서와 한 학기 차의 그러한 구조에 따라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백승아 위원** 순서나 배열이나 이런 체계가 어떤 출판사여도 다 이게 접목이 되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지요.

○**백승아 위원** 서책형과 AIDT가?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서책형 교과서가 각기 다른 출판사에서 개발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운영이 되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체계로……

○**백승아 위원** 접목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플렉서블한 운영체계 아니겠습니까.

○**백승아 위원** 제가 국회에 와 보니 그전까지는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딱 그 얘기 듣고 드는 생각이 사실 교육과정의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가르칠 양이 엄청 방대해서 이걸 줄여야 된다라는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출판사도 다르다? 그러면 초등학교 40분 수업하면 서책형은 몇 분 하고 그러면 그 부담이 AIDT로 그만큼 수업해야 되니까 교과서가 되면 또 그만큼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그런 생각이 얼핏 처음으로 들었고.

이게 수업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를 그냥 있는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사들이 수업 연구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 테마를 정해서 재구성해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기유발, 도입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교과서가 없잖아요. 그것을 그 작업을 학년별로 다 다르게 과목별로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얼핏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떠올랐어요. 교육의 양이 너무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그다음에 수업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우려 이런 것들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연구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 학교에서 그 수업의 질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작은 학교에 가면 행정업무가 너무 많아서 솔직히 수업이 재미가 없어요, 연구를 덜 하게 못하게 되니까. 그런데 제가 큰 학교에 근무할 때는 행정업무가 줄어드니까

수업 연구를 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이들도 재미있어 하고. 그러니까 이 수업 연구 할 시간을 좀 확보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또 드립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서책형 교과서가 8월 달에 검정됐고요. 11 월 달에 검정되고 나면…… 통상 다음 학년도에 가서 교육하실 내용들은, 지금도 학생들의 지도에 바쁘시니까요 통상 1월이나 2월 달에 수업 연구를 준비하셔 가지고 그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도 다 바뀌는 거고요. 교육과정 바뀌는 것에 따른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가 이루 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준비를 저희가 연수해 드린 거지요.

○**백승아 위원** 그러면 1, 2월에 교과서 나온 다음에 연수 다시 하나요? 교과서 연수 또 다시 하나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지금 연수가 1만 2000명에 대한 선도교사 연수들은 전체 52시간 연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15만 명에 대한 연수는 한 8시간 전후해서 연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활용하는 연수는 방학 중에 집중해서……

○**백승아 위원** 또 하겠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교육청에서 활용 연수는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기술 연수 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디지털 역량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되게 촘촘하게 지금 현장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소통하고 계세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럼요. 제가 참 많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믿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하고 고민정 위원님 차례인데요 짧게 토론해 주시고.

○**강경숙 위원** 1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기회 가지려고 안 했는데 서지영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아주 심심한 유감을 표하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말씀은 거두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정말 굉장히 많은 위원들이 고민하면서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봐 가면서 우려돼서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그렇게 펼훼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실상 이것은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2022 교육과정 중에서 여섯 가지인가 역량 중 하나에 디지털 역량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갖춰질 거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반대한 것이에요. 이거 생성형 AI도 아니고요. 사실은 단순 문제풀이형이라는 얘기가 과다하게 도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참고인으로 말씀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너무 펼훼하시는데 사실상 수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정치하는 엄마들, 지난번에 참고인으로 나왔던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펼훼하시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고, 많은 애들이 사실상 VDT 증후군도 굉장히 토로하고 있고요. 눈에 관한 것, 어깨 아픈 것들,

집중하지 못하는 것, 리터러시 떨어지는 것 다 AI가 아닌 DT로만, 디지털 자료에만 너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역기능에 대한 것은 수도 없이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축적되어 있는 연구물들입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고민정 위원님 마지막으로 토론해 주십시오.

○**고민정 위원** 저도 짧게……

조정훈 위원님 가지 마세요.

존경하는 조정훈 위원님과 서지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건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가려고 말씀드리는 데, 그동안 교과서는 찬성해 왔는데 AIDT 출시 앞두고 갑작스럽게 그러는 거 아니냐는 문제 지적하셨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 교육위가 9월 3일 날 첫 전체회의를 했고요. 제 법안이 발의된 날짜를 보세요. 9월 27일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초반기에 이 문제 지적을 계속 주구장창 했는데 우리 야당, 특히 고민정 위원은 완전히 여당한테는 유령이었구나, 내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셨나 하는 부분 때문에 바로 잡고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세 번에 걸쳐서 토론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첨예하게 내용이 좀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요. 위원님들끼리 조금 정리를 한 다음에 이 문제를 다시 속개해서 진행하도록 할 건데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32분 회의 중지)

(18시44분 계속 개의)

○**소위원장 문정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문정복** 예, 말씀하세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교과서 건은 아니고 제가 수석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하다가 보니까 아까 마지막에 논의하셨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마지막에 서지영 위원님하고 저도 확인해서 한 걸로 기억을 해 보면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에 포함하는 것은 신중검토로 우리 위원회 대안에서 제외하고 그다음에 포함하는 내용은 맨 마지막에 정을호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안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행정실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 좀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제가 문제 제기해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마지막에 정리를 해 주셔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뭔가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면 정을호 의원님 안과 조정훈 의원안에 대해서……

○**조정훈 위원** 그대로 받으면 안 되고……

○**소위원장 문정복** 못 받으신다는 거예요?

○**조정훈 위원** 아니요, 받되 대안학교를 학교로 정의하는 그 정의 규정을 빼고 받자는 거지요.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면 조문을 다시 수정해야 돼요?

○조정훈 위원 아닙니다. 그것만 삭제하면 됩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삭제하면 됩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의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해 주셔서 되지 않는 걸로 정해 주셨으니까, 맨 마지막에 그러나 기관이 대상자에게 안내하는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수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이해하셨어요? 제가 문구를 못 봐서.

○교육부차관 오석환 바쁘셔 가지고 아마…… 실무팀에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저희가 상의하겠습니다.

○행정실장 김정규 그러면 차관님 말씀대로라면 조정훈 의원님이랑 문정복 의원님 법안이 일부라도 살아 남는 부분이 있는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남아 있는 새로운 제안이 들어가는 겁니다.

○행정실장 김정규 그러면 당초에 대안을 의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을호 의원님 법안에 대해서만 수정 또는 원안 가결하시거나……

○소위원장 문정복 아니, 이미 의결을 했으니까 이것 나중에 개정안 내세요.

○서지영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문제 제기한 데 대해서 간사님께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행정실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조문 정리하시는 과정에서 이해를 각기 달리 하시는 거라 이것은 아직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조문 정리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실장 김정규 위원님들 말씀에도 불구하고 조정훈 의원님, 문정복 의원님 법안의 내용이 일부라도 살아 남으면 아까 했던 대안 의결이 유효하고 내용은 합의하신 대로 반영하면 되고요.

다만 두 분 의원님 법안이 지금 말씀에서 분리돼 있다 그러면 정을호 의원님 법안을 수정 또는 원안 가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조정훈 위원 그 안을 빼면 제 법안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정을호 의원님 법안으로 가시는 건……

○소위원장 문정복 정을호 의원님 법안은 그러면 41조의2 신설만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니까 안 제2조 1호 마목 신설은 아예 없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정확하게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면 이것은 조정훈·문정복 의원안은 없어지는 거고 정을호 의원안만 살아남는 거네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고맙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그렇게 정리해 주시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니까 정을호 의원님 법안은 일부 수정이 있는 거고 41조의2 신

설만 가는 겁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은 계속 심사로 결정을 하고요. 의사일정 제13항은 수정안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24항에서 26항까지가 첨예하게 의견이 갈립니다. 그래서 저희 당 위원님들의 의견도 제가 경청을 했고요. 마지막에 차관님까지 오셔서 의견 조율을 해 봤는데 잘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을 계속 심사로 놔둘 수 없는 이유는 곧바로 내년 3월부터 디지털교과서가 학교에 보급이 될 것이고 어찌 되었든 법률적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반대와 찬성의 의견으로 나뉘어서 저희가 의결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서지영 의원안에 대해서는 반대고요. 고민정 의원과 문정복 안으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조정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조정훈 위원** 하시겠다고 하는 걸 저희가 막을 힘은 없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법안이 진짜로 현실이 되면 닥칠 그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송 주체는 정부와 교육 교과서 당사자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불러올 수 있는 혼란, 지금 디지털교과서 얘기가 나온 지가 거의 2년 가까이 됐는데 거의 다 와서, 9부 능선을 넘었는데 교과서 자격을 박탈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고요.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는 강력 비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고민정 위원님.

○**고민정 위원** 검정심사를 통과하던 그 당시 초기부터 돌아가면 검정을 실시하던 공고 당시에도 이미 교과서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뒤늦게서야 시행령을 개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으로 이 출판사들이 문제 제기를 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일은 다 저질러 놓고 이제 와 가지고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예, 말씀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오석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데 종전의 교과서 규정에 의하더라도 저희가 구 DT라고 얘기하는,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달에 개정한 이유는 명료하게 AI 디지털교과서의 모습을 소프트웨어 교과서로 바꾼 것 그러니까 더 구체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진행 과정에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충분히 다 의견 개진이 된 것 같고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대훈 전문위원입니다.

의결을 하려면 어떤 안으로 의결되는지……

○소위원장 문정복 진작 말씀드렸지요. 고민정과 문정복 안으로……

○전문위원 강대훈 그러면 그 안으로 하고, 아까 소위 때 논의됐던 문체부 그 의견은 그냥, 그러니까 문정복·고민정 의원님 안…… 문정복 의원님 안이 단서를 신설하는 안이니까 그 2개를……

○소위원장 문정복 예.

○전문위원 강대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의사일정 24항과 25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항, 서지영 의원안은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이로써 오늘 법안소위를 마치고요.

함께해 주신 차관님 감사드리고 위원님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강경숙 고민정 김민전 김준혁 문정복 백승아 서지영 정성국 정을호 조정훈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 강대훈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차관 오석환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지역인재정책관 윤소영